

발간등록번호
11-1271518-000611-01

이민정보원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연구

2019.1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이민정보원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연구’
연구용역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10. 20.

- ▶ 연구책임자: 김동욱(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 공동연구원: 홍길표(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엄석진(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황성수(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성욱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김준형(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원)
김구민(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원)
- ▶ 연구보조원: 조영민(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최한별(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이아라(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함동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제 1 장 이민정보원 설립의 타당성 분석	1
제 1 절 국/내외 환경 분석	3
제 2 절 법령 분석	18
제 3 절 국외사례조사	32
제 4 절 설립의 타당성 분석	71
제 2 장 이민정보서비스원 기능 및 구성	91
제 1 절 개요	93
제 2 절 이민정책의 의의와 정책지향	94
제 3 절 한국의 이민정책 추진현황과 문제점	97
제 4 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현황	102
제 5 절 이민정책 관련 기능 수행 기관	108
제 6 절 이민서비스 제공사례	113
제 7 절 유사기관 현황	119
제 8 절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	127
제 9 절 소결	129
제 3 장 출입국·외국인 관련 정보 DB /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143
제 1 절 정보 DB의 구축	145
제 2 절 법령 등 서식(기록물)에 포함된 정보 분류	146
제 3 절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후 정보 DB의 변화	155
제 4 절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후 정보시스템의 변화	160
제 5 절 이민정보서비스원의 DB /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168
제 6 절 소결 - DB 활용서비스 개선 방안	173
제 4 장 이민정보서비스원 연구/활동 확산 방안	181
제 1 절 이민정책연구 현황 - 국내 논문 및 보고서 현황	183
제 2 절 이민정책연구 현황 - 국외 논문 및 보고서 현황	189
제 3 절 소결 및 시사점 - 이민정책 및 정책 연구 관련	195
제 5 장 이민정보서비스원 설립 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199
제 1 절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협력방안	201
제 2 절 기능 연계를 통한 협력방안	204
제 3 절 국제 이민 네트워크 강화	209
참고문헌	211

표 차례

[표 1]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증감 추이	9
[표 2] 국가융합망 추진계획(안)	31
[표 3] 중앙정부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성하는 제도단위	73
[표 4] 주요 중앙행정기관별 주요 이민정책	98
[표 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직별 인력현황	103
[표 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급별 인력현황	103
[표 7] 직제상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민행정 기능	104
[표 8] 한국재정정보원 주요사업	120
[표 9] 한국재정정보원 임직원 수	121
[표 10] 사회보장정보원 주요사업	123
[표 11] 사회보장정보원 임직원 수	124
[표 12] 한국고용정보원 주요사업	126
[표 13] 한국고용정보원 임직원 수	127
[표 1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민행정 기능 중 이민정보서비스원 소관이 가능한 기능과 인원	131
[표 15]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조직도	137
[표 16]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정원	138
[표 17]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업무분장	139
[표 18]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정원 및 예산(1년차)	140
[표 19]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정원 및 예산(1-3년차)	141
[표 2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주요업무 및 보유정보	146
[표 21] 사증 발급 신청서	148
[표 22] 입국신청서	149
[표 23] 등록외국인기록표	149
[표 24] 등록 신청서	150
[표 25]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151
[표 26] 사건부	152
[표 27] 난민인정신청서	153
[표 28]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전후 데이터베이스 구성	157
[표 29]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전후 데이터 아키텍처	159
[표 30] 주요 기능별 시스템 현황	160

[표 31] 시스템 현황	162
[표 32] 응용프로그램 구성 현황	162
[표 33] 외부기관과 연계 서비스 방식	163
[표 34] 표준연계체계	165
[표 35] 출판된 국내논문들의 유형화	184
[표 36] 출판된 국내보고서들의 유형화	186
[표 37] 출판된 국내 논문 및 보고서들의 유형화	187
[표 38] 출판된 국외논문들의 유형화	190
[표 39] 출판된 국외보고서들의 유형화	191
[표 40] 출판된 국외 논문 및 보고서들의 유형화	193
[표 41] 주요 외국들의 상이한 이민/외국인정책 동향	195
[표 42] 주요국의 유사한 이민/외국인정책 동향	196
[표 43]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별 소관부처	206

그림 차례

[그림 1] ‘이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최종 합의안 일부	4
[그림 2] 미국 이민자 수 및 비중	5
[그림 3] 국내 외국인 입국자 증감 추이	7
[그림 4]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8
[그림 5] 생산가능인구 수 및 연령구조 추계	11
[그림 6] 한국 정부의 하이코리아(Hi-Korea) 홈페이지	14
[그림 7] 싱가포르 정부의 GuideMeSingapore 홈페이지	15
[그림 8]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조직도	32
[그림 9] 호주 이민 서비스 부서 조직도	42
[그림 10] 단기 비자 온라인 처리 비율: 2015~2019	46
[그림 11] 미국 MPI 조직도	48
[그림 12] IOM 조직도	57
[그림 13] IOM GMDAC 조직도	59
[그림 14] 독일 The Information Centre on Asylum and Migration 조직도	65
[그림 15] 독일연방이 이민자들을 위해 사용한 금액(2016~2017)	67
[그림 16]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	87
[그림 17] 이민정책지향의 변화	95
[그림 18] 이민행정의 정책수요, 정책목표, 정책대상	96
[그림 19]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조	100
[그림 20] 다문화·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101
[그림 2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직	103
[그림 22] (재)한국이민재단 조직현황	109
[그림 23] IOM이민정책연구원 설립목적 및 기능	110
[그림 24] IOM이민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110
[그림 25] IOM이민정책연구원 조직	112
[그림 26] Jobs	113
[그림 27] Study & Training	113
[그림 28] Visa	114
[그림 29] Living in Germany	114
[그림 30] 캐나다 IRCC 업무계획	116

[그림 31] 하이코리아: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118
[그림 32] 한국재정정보원 조직	120
[그림 33] 사회보장정보원 조직	123
[그림 34] 한국고용정보원 조직	125
[그림 35]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	128
[그림 36] 이민정보서비스원 설립 후 예상되는 인력과 업무의 변화	142
[그림 37] 업무처리과정별 외국인 관련 정보	147
[그림 38] 주제별 출입국·외국인 데이터베이스	156
[그림 39]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전후 DB 현황	158
[그림 40]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구성도	161
[그림 41] 서버 위치별 내·외부 연계도	161
[그림 42] 정보시스템의 외부연계 구성도	163
[그림 43] 이민정보서비스원 기능과 시스템/DB 연계	169
[그림 44]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연계	174
[그림 45] 인감시스템 연계	175
[그림 46] 본인서명확인시스템	175
[그림 47]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	176
[그림 48] 제3차외국인기본계획 정책과제별 정책참여기관 네트워크	207

I

이민정보원 설립의 타당성 분석

1. 국내/외 환경 분석
2. 법령 분석
3. 국외사례조사
4. 설립의 타당성 분석

1. 국내/외 환경 분석

1) 국외 환경 분석

- 이민은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요한 현상으로서, 각 국가는 국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7명 중에서 1명이 이민자이거나 그의 후손에 해당하고, 2017년 기준으로 태어난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사는 사람의 수가 2억5천8백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3.7%가 이민 길에 나섰음(VOA 뉴스, 2019.12.19.)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자기 주도형 미디어의 확산, 사람과 물자의 국가 간 이동의 용이성, 이주비용의 감소, 사회주의 국가권의 붕괴로 인한 정치적 선택의 자율공간의 확대는 전 세계적으로 이민을 추동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음(박재창, 「한국의 이민정책과 학문 공동체의 책무」, 2019)
- 일부 국가에서의 기후변화에 따른 기근 및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 극심한 빈곤의 확산, 정치적 불안정의 심화는 자발적인 이민이 아닌 강제적인 이민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박재창, 「한국의 이민정책과 학문 공동체의 책무」, 2019)

- 이민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상으로 확산되면서, UN은 ‘이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로 불리는 국가 간 비구속적 국제규범을 마련하여 이민에 관한 국제공조의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림 1] ‘이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 최종 합의안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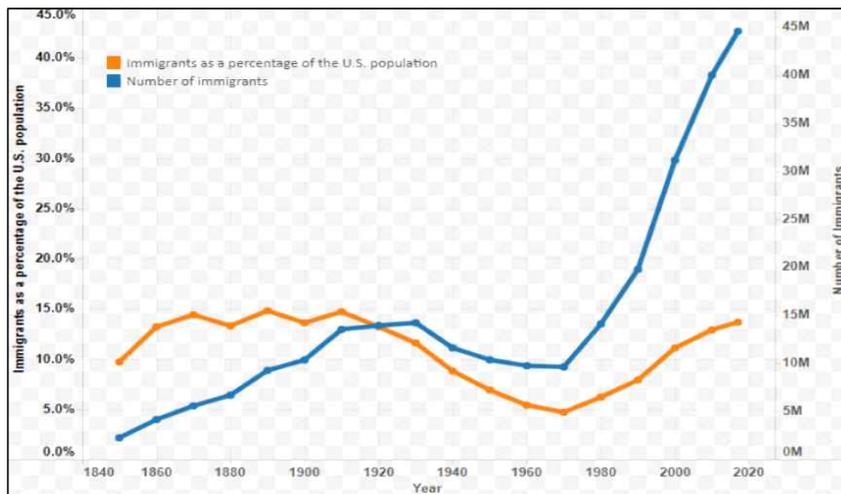


출처: <http://cdb-tonatierra.blogspot.com>, 2019.07.15

- 한국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국제이주기구(IO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난민기구(UNHCR) 등 다자협약체 및 각 국가의 이민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전통적인 이민국가, 이민에 개방적인 많은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과 중국도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생산과 소비를 아우르는 경제활동의 주체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민에 대한 문호의 개방을 모색하고 있음

- 세계 각 국가는 비자정책 등을 통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나 기술을 보유한 인재의 취업을 촉진·유도하고 있고 이들의 장기 거주를 장려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 정보기술 전문기술자들을 흡수하고 있고,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전문기술직 종사자들이 한시 취업 후 (고용주 추천이나 지방정부 추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두고 있음(이창원, 「이민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과제」, 2017)

[그림 2] 미국 이민자 수 및 비중



출처: <http://m.moneys.mt.co.kr>, 2019.07.15

- 호주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이나 IT 분야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점수제를 통해 영주이민 신청을 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이들 유학생은 학업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업 후에는 취업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적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음(이창원, 「이민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과제」, 2017)

- 중국의 경우 해외 우수인재 1000명 유치계획을 만인계획으로 확대하고 주변국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하고 있고, 일본은 2020년까지 고급 외국인 인재 1만 명 확보를 목표로 외국인 연구경영자 등에 대한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있음(뉴시스, 2017.4.19.)
- 이민자 증가로 인한 사회 갈등, 국민 일자리 침해 논쟁, 반이민 정서 확산으로 미국(보수적 이민정책), 영국(브렉시트) 등에서 국가안보와 국민 일자리를 강조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음
- [영국 BBC 방송, 브렉시트-트럼프 현상 공통점 분석] 유럽 난민 사태로 골머리를 앓는 영국과 이민개혁에 실패한 미국에서 브렉시트 찬성 진영과 트럼프 지지파 모두 반이민 주장을 펴 지지를 얻었다는 점도 비슷함(연합뉴스, 2016.6.20.)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선 출정식에서 국경장벽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반이민 정책을 공언하였고, 마테오 실바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이민에 대한 대중적 반감을 이용하여 지지세를 넓혀가고 있음(연합뉴스, 2019.6.22.)
- 스웨덴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각종 선거에서 이민에 반대하거나 국경 폐쇄를 주장하는 정치인들과 정당들이 당선되면서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조선일보, 2018.9.10.)

2) 국내 환경 분석

- 최근 국내 외국인 출입국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서 국내에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2018년 12월호)

- 2018년 외국인 출입국자는 총 3,105만 명이고, 이들 중에서 입국자와 출국자는 각각 1,563만 명과 1,542만 명임; 이러한 국내 외국인 입국자 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30%에 해당함
- 이러한 외국인 입국자 수는 1995년 357만 명에서 2018년 1,563만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의 급격한 변동을 제외한다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그림 3] 국내 외국인 입국자 증감 추이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8년 12월호

-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8년 12월 기준 237만 명이고, 이러한 인구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6%에 해당함;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8년 116만 명에서 2018년 237만 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4]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8년 12월호

- 현재의 외국인 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비중 역시 상당하지만 향후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내 방문·체류 외국인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또한, 2017년 기준 다문화 혼인은 20,835건으로 전체 혼인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다문화 출생은 19,431명으로 전체 출생의 4.8%를 차지하고 있어 체류 외국인으로 인한 국내 영향은 단순히 체류 외국인 비중 변화에만 영향받지 않음 (여성가족부: 연도별 다문화가족통계, 2018)
-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더욱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음; 한국은행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정책의 일환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 사례를 통해 외국 인력을 통한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서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한국은행, 2017)
- 국내 방문·체류 외국인 증가로 긍정적 효과가 존재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 인구 구성 변화로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회 문제들 역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

- 저임금 이민자 증가 등에 따른 치안·환경 악화 및 일자리 침해 우려, 일부 이민자에 대한 시혜적 지원으로 인한 국민 역차별 논란,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요구 등이 발생하고 있음
- 국내 불법 체류자는 2018년 기준 35.5만 명으로 전체 체류자의 15%에 해당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법무부의 ‘강제퇴거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법체류, 취업, 형사범 등 범법행위가 확인되어 추방당한 외국인은 한 해 평균 2만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2015년 21,919명, 2016년 28,784명, 2017년 26,694명, 2018년 8월 현재 21,171명)

[표 1]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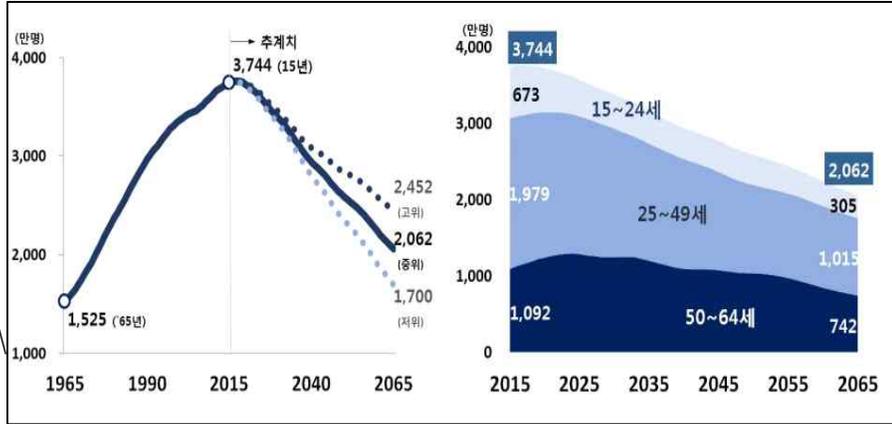
(단위: 명)

연 도	총체류자	불법체류자				불 법 체류율
		소계	등 록	거 소	단 기	
2007년	1,066,273	223,464	107,278	1,891	114,295	21.0%
2008년	1,158,866	200,489	93,461	542	106,486	17.3%
2009년	1,168,477	177,955	83,729	613	93,613	15.2%
2010년	1,261,415	168,515	78,545	732	89,238	13.4%
2011년	1,395,077	167,780	82,848	578	84,354	12.0%
2012년	1,445,103	177,854	92,562	1,579	83,713	12.3%
2013년	1,576,034	183,106	95,637	1,533	85,936	11.6%
2014년	1,797,618	208,778	93,924	2,066	112,788	11.6%
2015년	1,899,519	214,168	84,969	1,114	128,085	11.3%
2016년	2,049,441	208,971	75,241	941	132,789	10.2%
2017년	2,180,498	251,041	82,837	1,064	167,140	11.5%
2017년 12월	2,180,498	251,041	82,837	1,064	167,140	11.5%
2018년 12월	2,367,607	355,126	90,067	1,015	264,044	15.0%
전년대비 증감율	8.6%	41.5%	8.7%	-4.6%	58.0%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8년 12월호

- 생활양식 차이 및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체류 외국인과 원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며 외국인에 대한 이유 없는 혐오가 존재하기도 함
- 2017년 외국인 범죄는 33,905건으로 전체 범죄의 2% 수준으로 높지 않으나 방문·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7년에 소폭 감소한 상황임(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
- 위와 같은 부정적인 사회문제 뿐만 아니라 약 200만 명의 국내 이민자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교육, 노동 환경 구축 등 국내 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래 한국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부양비 증가, 학령인구 감소, 체류외국인 정주화에 따른 비용 증가, 반이민정서 증가 우려, 한·중·일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부양비 증가: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부양비가 증가하며 이에 따라 성장동력 및 내수시장 축소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가 제기되고 있음

[그림 5] 생산가능인구 수 및 연령구조 추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2065'

- 학령인구 감소: 학령인구(6~21세)는 2015년 892만 명에서 2065년 45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교육과 관련된 인적·물적 인프라 과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체류외국인 정주화에 따른 비용 증가: 체류외국인 증가와 이들의 정주화·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원, 갈등관리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반이민정서 증가 우려: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해 이민자를 취업 경쟁자로 인식하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반이민정서가 증가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 한·중·일 저출산·고령화: 동북아 3국이 저출산·고령화 심화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간 외국인재 유치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내 방문·체류 외국인 증가 및 국가 간 외국인재 유치경쟁 심화 등에 따른 이민·외국인 정책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민·외국인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를 통한 이민·외국인 정보 분석 및 서비스 지원은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데이터 수집 및 관리의 문제] 방대한 이민·외국인 데이터의 수집 및 디지털화가 부족하고, 이민·외국인 데이터가 개별적이고 일상적인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고, 기관 내 및 기관 간 데이터, DB, 시스템의 연계 및 공유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사증발급신청서, 체류신청서 등에 입력되는 데이터 중에서 인적사항, 여권사항 등 일부 정보에 대해서만 전산으로 입력되고, 여타의 중요한 정보(예: 가족사항, 학력, 직업, 동반가족, 초청인)는 전산으로 입력되지 않은 채 다른 첨부서류와 함께 스캔되어 보관됨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제규정에 따르면, 대기능(출입국·외국인정책)에서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능은 세 가지(①외국의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사례의 수집·교환·관리, ②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및 국적통합관리시스템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개선, ③외국인정책 추진 관련 부처 간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가 전부인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새로운 이민 관련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혹은 기존 이민 관련 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이민·외국인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개선된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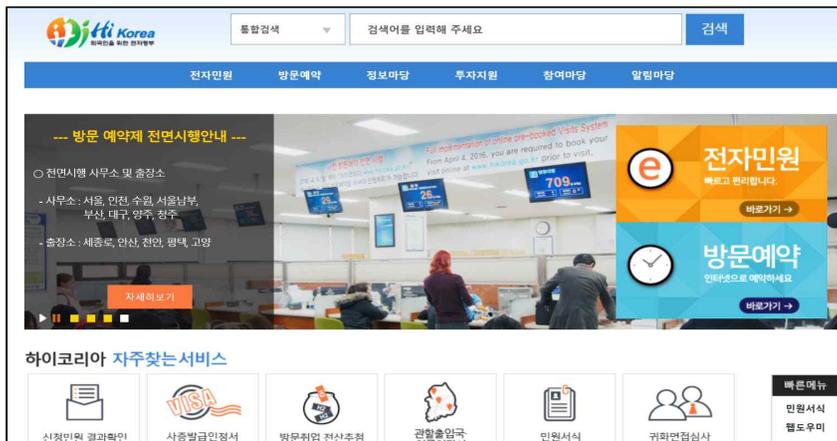
기능(과 이에 따른 인력)으로 인해 이민·외국인 데이터가 개별적이고 일상적인 관리 문제와 기관 내 및 기관 간 데이터, DB, 시스템의 연계 및 공유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정보 분석의 문제] 개별적이고 일상적인 차원에서 관리되는 데이터 기반의 사실관계 확인 수준의 정보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사회 이슈의 진단·분석·예측에 필요한 동향 조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제규정에 따르면, 대기능(출입국·외국인정책)에서 정보 분석과 관련되는 기능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음(예: 외국인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출입국·조사·보호 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분석, 외국인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 분석,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 조사)
 - 하지만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요구되고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이 사회 이슈에 대한 진단, 분석, 그리고 예측을 토대로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것은 특정 정책 지지로 인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 위반, 소속 부서 혹은 기관의 이익 대변 등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수반됨
 - 그러므로 이민·외국인 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 분석은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민·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 이슈의 진단·분석·예측과 이를 통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동향 조사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서비스 지원의 문제] 빠른 업데이트와 정확한 데이터를 기

반으로 한 적시성 있는 대민 서비스 지원이 부족하고, 수요자 맞춤형 대민 서비스보다는 일반 이민자 및 외국인 대상 대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일부 이민자·외국인 데이터 기반의 대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예를 들어, 한국 정부(법무부)가 운영 중인 이민자 및 외국인 대상 대민 서비스인 ‘하이코리아(Hi Korea)’는 업데이트의 신속성, 데이터의 정확성, 수요 맞춤형 서비스(예: 잠재적인 이민자에 대한 선제적인 대민 서비스), 포괄적인 데이터 기반의 대민 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제기됨

[그림 6] 한국 정부의 하이코리아(Hi-Korea) 홈페이지



- 반면, 싱가포르 정부가 운영 중인 이민자 및 외국인 대상 대민 서비스인 ‘GuideMeSingapore’은 다양하고 풍부한 이민자·외국인 관련 데이터 및 정보(예: 이민자·외국인의 투자 및 사업을 위한 정보,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영주권 취득 전략, 투자이민 전략, 사증발급 전략, 시민권 취득 전략, 거주·근무 전략에 대한 안내 등 잠재적인 이민자에 대한 선제적인 대민 서비스를 비롯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그림 7] 싱가포르 정부의 GuideMeSingapore 홈페이지



3) 시사점

- 세계 각 국가는 이민정책 전담 지원 기구로 하여금 이민 문제들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법무부, 「해외 각 국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연구」, 2012)
- 세계 각 국가는 이민정책 전담 지원 기구로 하여금 이민정책(외국인의 입국·체류·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등)과 사회통합정책(언어·문화교육, 차별방지 등)의 종합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선진국들은 이민이라는 현상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영역에서 분절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통합적인 시

각에서 접근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가기관들 속에서 이민 문제에 대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민정책 전담 지원 기관을 설치하고 그 기능과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갖추어 왔음

- 독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민정책 전담 지원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부 또는 청 단위 기관을 설치하고 이민법 등을 통해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세계 각 국가는 이민정책 전담 지원 기관으로 하여금 이민 개방으로 인한 사회비용과 혼란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민자 규모와 질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한 선택적 이민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현재 한국에는 세계 각 국가가 이민 문제들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기는 이민정책 전담 지원 기구가 부재함

- 국내 방문·체류 외국인 증가 및 국가 간 외국인재 유치경쟁 심화 등에 따른 이민·외국인 정책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민·외국인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를 통한 이민·외국인 정보 분석 및 서비스 지원은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국내 외국인 출입국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기회(예: 우수 인재 유치)와 위협(예: 범죄 발생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함
- 현재 이민·외국인정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급증하는 이민정책 관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움

- 출입국관리·체류관리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종합과 연계 강화, 이민 현상에 대한 통합적 접근 강화, 이민 개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선택적 이민정책 강화 등으로 이해되는 세계 각 국가의 이민에 관한 공통된 조류와 흐름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 전담 지원 기구를 통한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긴요함
- 정부는 이민정책 전담 지원 기구를 통해 국내 이민자 및 국내 외국인 출입국자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민 문제들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문제 해결 과정에서 현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필수적,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현황 파악이 잘못된 경우 잘못된 문제를 설정하거나 잘못된 정책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이와 맞물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자료들이 새롭게 수집되고, 기존 자료들 역시 새롭게 재가공 되어 분석되고 있음
 - 또한, 자료 분석 역시 단순히 현상에 대한 기술통계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료의 다각적 분석과 시각화를 통해 그동안 확인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들이 확인되기도 함
-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이민 정보를 구축·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민과 관련한 국내 사회 문제들을 진단·예측할 수 있는 조직이 요구되며, 이러한 조직으로서 이민정보서비스원의 바람직한 구성/역할/활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이러한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설립의 목적과 취지는 출입국관리·체류관리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종합과 연계 강화, 이민 현상에 대한 통합적 접근 강화, 이민 개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선택적 이민정책 강화 등으로 이해되는 세계 각 국가의 이민에 관한 공통된 조류와 흐름에 부합함

2. 법령 분석

1) 한국재정정보원

(1) 설립의 필요성

-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이전에 국가재정정보는 예산 편성과 집행, 자금·국유재산 관리 등 국가 재정업무 전 과정을 다루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으로 운영되었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별도 전담 조직에 의해 운영·관리되지 않았었고, 삼성 SDS, LG CNS 등 대기업 컨소시엄에 의해 위탁 관리되고 있었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문제점은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위탁업체에 의해 국가의 재정정보가 사전에 입수되고 사익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 이에 더하여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2015년 1월부터 기존 사업자인 대기업의 사업 참여가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통합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개발하고 직접 관리하고자 하였음

(2) 문제 제기

-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정보시스템을 민간에 맡겨두면 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관리를 준정부기관에 맡기도록 하는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법안을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하였음
-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법안에 대한 논의는 2013년 8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후 3년이 지난 시점까지 다른 굵직한 현안들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파행적인 운영으로 인해 미루어졌음
- 2014년 2월 법안 첫 심사 당시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할 때 민간업자와의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재정정보원으로 이전시킨다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였음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이걸 설립해 기재부가 공무원 인력과 조직을 늘리려 한다는 건 오해”라며 “인력 자체도 지금보다 줄이고 예산도 일부 줄여서 운영하게 된다. 왜 공공기관을 줄인다면 새로 만드냐고 하는데 이 분야 일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부득이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간곡히 이해를 구했다.

당시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에겐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기재부에)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 내역을 요구했지만 끝내주지 않고 있다. 국정교과서 예비비 내역을 주면 디브레인이 제대로 작동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겠지만 그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국정운영을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디브레인도 잘 (운영)할 것이라 생각하고 한국재정정보원도 얼마든지 설립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것을 만드는 이유가 문제라는 것이다.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국재정정보원의) 또 다른 목표 아닌가”라며 거듭 기재부를 압박했다.

- 법안이 제출된 지 2년여 만인 2015년에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정치적 쟁점과 연결되어 연내 통과가 어렵게 되었음
- 이에 더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은 곧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개혁을 지향하는 주무부처가 관할 공공기관을 늘리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잘 운영되었던 정보시스템을 공공부문으로 가져오는 것은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견해도 있었음¹⁾

(3) 해결 과정

- 2015년 기획재정부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관리사업 및 사이버안전센터구축운영사업에 편성했던 예산은 211억 원이었고, 이는 한국재정정보원의 계속성 경비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 초기 설립비용 약 78억 원 외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설명을 통해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의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켰음²⁾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 [사설] 기재부의 끝없는 영토확장...재정정보원은 또 뭔가, 2016.01.29.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6012994001>

2) 野에 '미운털' 박힌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법 무산위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11618277637277>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안 등 계류법안을 논의하였고, 법안은 기획재정부의 조직 확장에 대한 우려 속에 2년 반 동안 국회에 계류된 후 2016년 1월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보안과 관련한 사고가 없었지만 입찰을 거쳐 2년 주기로 민간 운영업체가 바뀌어 정보 유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며 “한국재정정보원이 설립 되면 시스템 운영의 전문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함으로써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음³⁾

(4) 법적 근거

-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 목적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하는 것임
- (데이터의 관리 및 수집)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공공부문을 구성하는 각 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3) 나랏돈 씹씹이 총괄하는 한국재정정보원 설립된다, 2016.01.29.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6/01/82030/>

제5조(사업)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 및 관리

(후략)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정보 분석) 「한국재정정보원 직제규정」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는 관리 및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정정책 수립에 필요한 가공된 정보를 생산·분석함

1. 재정 통계분석 및 재정지표·분석모형 개발에 관한 사항
2. 재정분석 활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정보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3호와 관련된 시스템 운영, 국내·외 동향 조사, 연구용역 및 수탁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재정정보 분석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원장이 정하는 사항

- (서비스 지원) 「한국재정정보원 직제규정」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운영본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투명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함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금계좌의 통합관리 및 예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e나라도움 사업관리, 집행, 정산 시스템 등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고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 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우리원이 협의 하에 정하는 사항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설립의 필요성

- 설립 목적은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등의 제고를 통하여 심사의 효율성과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심사와 병행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있음
- 2000년 1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진료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 준비를 위한 설립위원회가 1999년 3월 9일 부로 설립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음
- 설립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관작성 및 설립등기 업무와 조직·인사 등 제 규정의 마련,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한 업무개발 및 업무지침의 개발, 기타 설립 준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⁴⁾

(2) 문제 제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에 대한 논쟁)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구 구성 및 기능을 논의할 때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와 일부 시민단체 관련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재정과 업무의 감독 기능을 확보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공단의 산하기관으로 두려 하였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설립위원회 마지막 시점까지 공동사육, 전산망통합, 지부축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 대한 공단의 재심사, 실사권 및 청구명세서 관리 등을 공단 측의 의도대로 통과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당시에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위해서는 보험자로부터 독립된 전문심사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는 곧 보험제도 발전 및 의학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칙이라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립되었음⁵⁾

(3) 해결 과정

- 먼저 심사기구의 독립을 찬성한 의견은 요양급여비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와 함께 의료의 질 평가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의료의 질 개선과 보험재정 보호, 보험자와 의료공급자의 상호견제 기능, 진료비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 심

4)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944&CONT_SEQ=18387, 2019.07.15

5)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51>, 2019.07.15

사기준 및 요양급여기준 개선, 4대 사회보험 통합과 모든 진료비 청구의 전반적인 심사·평가 기능 수행을 제시하였음

- 반대 의견은 새로운 조직 설립에 대한 행정비용 증가, 심사기구 독립에 의한 진료의 적정성과 보험재정 보호 효과 불확실, 보험자의 통제기능 한계와 의료공급자의 영향력 강화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음
- 최종적인 결정은 정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었음(김진현, 2012)

(4)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 목적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임
- (데이터의 관리 및 수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데이터를 입수하고 이를 심사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함

63조(업무 등)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후략)

- (정보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제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은 관리 및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용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가공된 정보를 생산·분석함

- 1. 빅데이터(통계)의 총괄 관리 및 기획에 관한 사항
- 2. 보건의료 통계의 생산 및 제공·공개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제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실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관련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

- 1. 심사재점검 기획, 심사조정 내역 분석 등 심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2.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에 대한 요양기관 및 공단 이의신청 심사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3.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에 대한 심판청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4. 이의신청위원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5. 행정기관(경찰, 검찰, 법원 등)의 입원일수 적정여부 심의 의뢰 및 수진자 진료정보 요청 등 업무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정보원: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목적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임
- (데이터의 관리 및 수집)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유지·기능개선·관리함

제29조(사회보장정보원) ③ 사회보장정보원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 분석) 「사회보장정보원 직제규정」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데이터연구소는 관리 및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보장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가공된 정보를 생산·분석함

- 1. 대·내외 통계추출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통계지표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3. 정보통계시스템(DW) 운영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4. 사회보장정보통계 개방 및 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
 - 5. 데이터마이닝 등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 (후략)

- (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정보원 직제규정」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분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을 비롯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

- 1.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육 관련 유관 기관시스템 정보화 기획에 관한 사항
 - 2.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육 관련 유관 기관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발주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3. 바우처 제도 관련 정책지원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 4. 바우처 예약금 관리에 관한 사항
 - 5. 바우처 생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후략)

4) 한국고용정보원: 법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목적은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임

- (데이터의 관리 및 수집)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무와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음

제40조(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 (후략)

- (정보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직제규정」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센터는 관리 및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용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가공된 정보를 생산·분석함

1. 고용정보 수집·분석 및 노동시장 동향에 관한 연구
 2. 연구용 행정DB 인프라 구축 및 분석
 3. 빅데이터의 고용서비스 활용 활성화 연구
 4. 인력수급 전망 및 인력수급 전망모형 개발
 5. 고용조사사업 수행 및 조사 결과의 분석
- (후략)

- (서비스 지원) 「한국고용정보원 직제규정」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는 시민들에게(특히 청년들에게) 고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1. 청년정책 총괄 분석 및 현장 모니터링
 2. 청년정책 및 공간정보 수집 및 제공
 3. 청년 및 청년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4. 대학일자리센터 평가, 컨설팅, 모니터링 총괄
 5. 온라인 청년센터 기획 및 운영
- (후략)

5) 시사점

- 한국재정정보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하여 앞서 제시된 공공기관들은 내부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부업무 서비스(정보 분석)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함
 - 한국재정정보원 정관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재정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연보의 생산·분석 및 제공과 이에 관한 연구사업, 재정정보 관련 대국민 인터넷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검사 등 전산관리 업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관리 등을 수행함
- 한국재정정보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중

양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탁에 관한 조항에 의거하여 정보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제시되어 있는)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자(한국재정정보원의 경우 기획재정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수탁자(한국재정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모든 정보의 실시간 수집·축적·활용·공유에는 제약이 있음
- 현재 법무부 이민정보과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특히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도 모든 정보의 실시간 수집·축적·활용·공유가 가능하도록 이민정책 전담 기구에 이관하여 관리하기 어려움
 - 2019년 이후 국가행정종합정보망(일명 국가융합망)으로 통합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법무부 이민행정시스템은 앞으로도 법무부에서 직접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높은 보안성과 긴급성이 요청되는 출입국정보시스템 등은 정부 외부조직으로 이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표 2] 국가융합망 추진계획(안)

단계		통합대상기관	회선통합률
구축 단계		망 구축	-
통합 단계	1단계('17년) 29개 기관	대통령경호실, 국회, 헌법재판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통일부,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인권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문화재청, 새만금개발청, 외교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비서실,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방위사업청	57%
	2단계('18년) 12개 기관	교육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청, 병무청, 농업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국민안전처, 감사원	80%
	3단계('19년) 10개 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대법원, 특허청, 기상청, 대검찰청,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100%

출처: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2960, 2019.07.15

○ 결과적으로 이민정책 전담 지원 기구로 이관될 정보시스템 및 기능 부문은 상대적으로 보안성과 긴급성은 덜 요구되지만 향후 가파른 속도로 증가할 이민자 대상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출입국 및 이민행정 DB 등을 바탕으로 한 통합 DB 구축 및 종합분석 기능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보안성이 낮고 공개성이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에 필요한) 가공된 정보를 생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민자·외국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민정보서비스원’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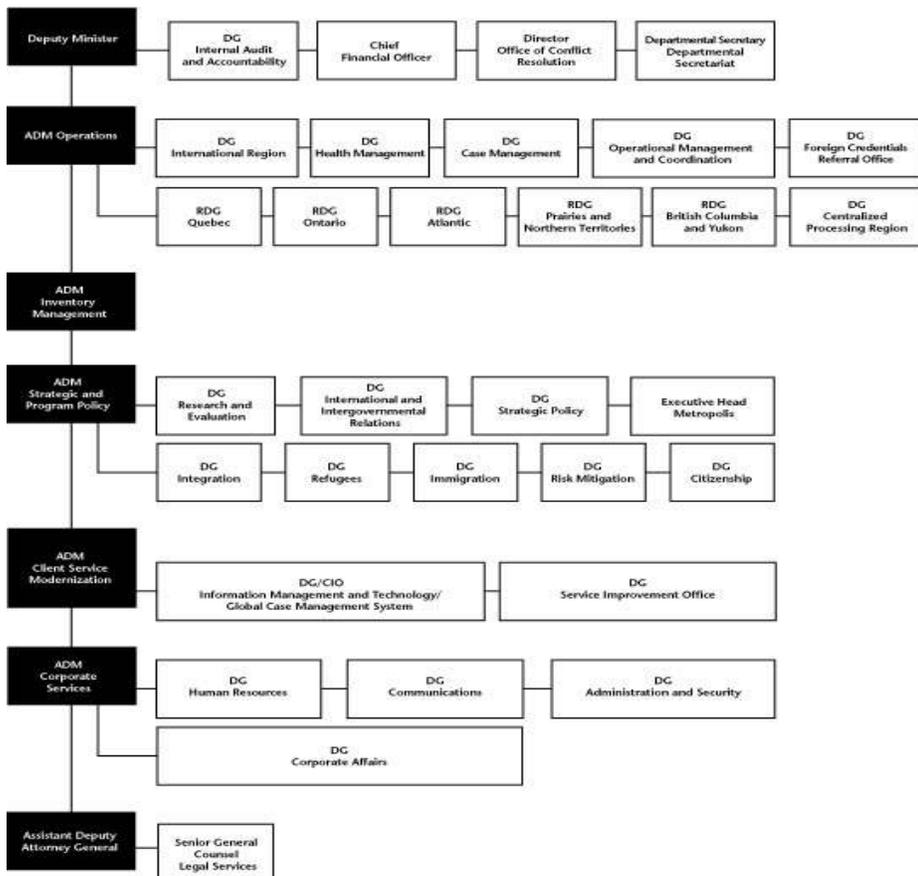
3. 국외사례조사

1)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1) 조직구성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조직도

[그림 8]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조직도



- 캐나다는 호주의 경우처럼 특정 부서에서 이민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독립적인 이민서비스기관으로서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IRCC)가 운영되고 있음
- 1994년도에 연방정부 부처로 설립되었으며, 기관의 최초 근간은 1873년도 설립으로 내정관리부처로서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민자로 이루어진 나라인 만큼 이민수요가 증가하면서 정착 프로그램의 수요가 발생하여 대응기관으로 발전하였음
- 현재 해당 기관의 장관(Minister)은 Ahmed D. Hussen MP가 맡고 있음; 소말리아 출신 정치인으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1993년 캐나다로 이민을 왔음; 캐나다에 거주 중인 소말리아인들의 권익증진에 힘써왔으며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한 경력으로 발탁됨; York University 역사학 학부 졸업, University of Ottawa 법대 졸업
- 부장관(Deputy Minister)으로 차관에 가까운 자리에는 Marta Morgan이 활동하였음; 외무부로 현재 차출되어 현재 공석이고, 산업부와 전략정책 부서에서 쌓은 경력을 인정받아 해당 위치에서 활약하였음; McGill University 경제학 학부 졸업, 하버드 케네디 스쿨 정책학 석사 졸업
- 제2부장관(Associate Deputy Minister)으로는 Lori MacDonald가 임명되어 교통과 치안 및 안보 분야에서 활약하였음; 35년 간 공직자로 재직했고 지방부터 연방정부에 이르는 수직적인 다양한 경험으로 임명되었음; Loyalist College in Belleville 법·안보 행정학 학부 졸업, Carleton University in Ottawa 범죄학(법) 석사 졸업

- IRCC 채용정보로 올라오는 목록은 다음과 같음⁶⁾: (1) Information Management Team Leader; (2) Case Processing Agent; (3) Client Support Centre Agent; (4) Support Services Agent/Program Assistant; (5) 다양한 행정직

(2) 역할과 임무

- “IRCC는 세계적이고 관대한 이민프로그램 운영으로 캐나다의 치안과 안보를 책임져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고 명시하고 있음.⁸⁾
- 난민을 보호하고 외국인의 단기 및 장기 체류 여부를 선정하며 캐나다의 허용(admissibility) 정책을 개발하여 캐나다에 입국 및 체류 조건(condition)을 맞추는데 기여함
- 2013년 7월 2일부로 캐나다 여권의 책임과 행정업무 또한 외무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에서 IRCC로 이관되었음
- IRCC와 파트너들은 캐나다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님: (1) 캐나다의 건강, 치안, 안보를 지키면서 사람들의 정착을 촉진시키고 캐나다로의 동화를 손쉽게 하여

6) <https://emploisfp-psjobs.cfp-psc.gc.ca/psrs-srfp/applicant/page2440?classificationInfos=&locationsFilter=&selectionProcessNumber=&officialLanguage=&title=&tab=1&search=Search%20jobs&department=66&departments=&log=false>, 2019.08.25

7)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mandate.html>, 2019.08.25

8)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mandate/acts-regulations.html>, 2019.08.25

국가에 기여하는 바를 최대화함; (2) 캐나다의 인도주의적인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난민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함; (3) 가치를 극대화하고 캐나다 시민들의 권리와 책임을 촉진시킴; (4) 모든 캐나다인에게 접근하여 문화 간 이해력을 돕고 통합된 사회를 인종, 민족성, 종교와 무관하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설립함; (5) 캐나다의 이민 및 인도적 목적달성을 위해 글로벌 이민정책 발전에 기여함

(3) 법령근거

- IRCC의 권한(mandate)은 Department of Citizenship & Immigration Act⁹⁾에서 비롯됨
- IRCC의 장관(Minister)은 Citizenship Act of 1977¹⁰⁾의 책임의무를 지며 공공치안 장관(Minister of Public Safety)와 함께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IRPA)¹¹⁾에 명시된 책임을 짐
- 이민에 대한 관할권 및 사법권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Constitution Act 1867(헌법) 제95조에 근거하여 나누어 가짐
- IRCC가 책임져야 할 캐나다 여권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음:
Canadian Passport Order¹²⁾, Order Respecting the Issuance of Diplomatic and Special Passports

(4) 운영재원

9)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29.4/page-1.html>, 2019.08.25
10)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29/page-1.html>, 2019.08.25
11)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i-2.5/page-1.html>, 2019.08.25
12) <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I-81-86/>, 2019.08.25

- IRCC는 현재 연방정부의 의회가 통과시킨 국가예산안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조달을 받고 있음
- 작년 2018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인 2018-2020 이민자 수준 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을 위해 747만 달러를 2018년 연방정부 예산안에서 배정받았음¹³⁾
- 이민자들이 많아 관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캐나다는 잘 이해하고 있으며 IRCC의 예산 중 다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받고 있음

(5) 보유 DB 및 정보시스템

- IRCC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캐나다 정부의 Open Government Portal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민자와 시민권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함
- 월별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하는 데이터와 분기별로 업데이트하는 데이터가 있으며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모든 데이터는 직접 수집하며 캐나다 정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데이터 수집 목록은 다음과 같음: (1) 영주권자 및 단기체류자 목적지 및 이동경로 통과 기록; (2) Express Entry 이용자 수; (3) 난민 관련 데이터; (4) 시민권, 입양, 여권, 방문자 등 관련 데이터; (5) 비자 및 영주권 등 관련 데이터

13) <https://www.cicnews.com/2018/03/ircc-to-receive-747-million-to-support-2018-2020-immigration-levels-plan-0310376.html#gs.zd76bg>, 2019.08.25

(6) 기존 정부 조직과의 관계¹⁴⁾

- 비즈니스 단체 (Start-up Visa): 사업을 위하여 창업을 하는 이민자들의 사업체 리스트이며 투자 혹은 지원을 실시함
- 공식승인 대표자(Citizenship and Immigration): 공식 승인된 대표자들은 고객을 대신하여 다양한 온라인 서류절차나 결제 등을 할 수 있음
- ECA 서비스 제공자(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 해외에서 받은 교육 수료증들을 검증하고 캐나다의 동급인 캐나다 교육등급을 책정하는 데 도움을 받음
- 교육기관(International Students): 국제학생 입학을 지원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음
- 고용자(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고용자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고용자와 연결되어 노동자들의 채용제안을 받으며 소통함
- 이민자 지원 단체(Community Resources): 이민지원단체와 협업하여 캐나다에 적응을 돕고 “Free Newcomer Service”¹⁵⁾ 등을 제공함
- 언어 시험 단체: 언어시험을 위임하여 test provider들을 운용하고 관리함

14)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departmental-plan-2017-2018/departmental-plan.html#sec06-1>,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artners-service-providers.html>, 2019.08.25

15) <http://www.cic.gc.ca/english/newcomers/services/index.asp>, 2019.08.25

- 패널 의사: 이민자들의 의료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캐나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협업함

(7) 서비스 내용 및 유형¹⁶⁾

- IRCC가 운영하는 서비스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구분됨
-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1) 캐나다의 발전을 위한 영주권자 선별(경제적); (2) 캐나다에서 일 혹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 체류자들의 선별; (3)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유재량(discretionary) 이민제도를 운영하여 인도주의적 고려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4) 난민 보호; (5) 캐나다로의 신입자 정착 및 동화 프로그램; (6) 신입자 및 모든 캐나다인의 시민권 관리; (7) 이민 관련 서비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캐나다의 건강 보호 서비스 제공; (8) 국제적으로 이주 및 통합 의제에 대한 캐나다의 영향력 증대; (9) 여권 관련 서비스
-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부서가 의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내부관리 서비스로 10가지 카테고리가 있음: (1) 관리 및 감시 서비스;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3) 법률 서비스; (4) 인적자원 관리 서비스; (5) 재무관리 서비스; (6) 정보관리 서비스; (7) IT 서비스; (8) 부동산 서비스; (9) 자원 서비스; (10) 취득 서비스
- 서비스라는 단어가 출현하는 대표적인 곳은 Services and Information 카테고리로 포함되는 부분이고, 이는 다음과

16)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mandate/service-declaration/service-standards.html>, 2019.08.25

같은: (1) My application à 계정 만들기 및 신청서 현황 및 진행 확인, 서류 찾기, 비용 지불, 의료 및 검문, 대표자 찾기, 사기 예방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료 제공; (2) Visit à 비자 필요 여부, 캐나다에서 사업 및 수송 진행, 방문자 체류기간 연장; (3) Immigrate à 어떤 이민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 가족 스폰서, 대표자 활용; (4) Work à 일자리 비자 지원 및 연장, 캐나다의 국제경험 돌보미 역할 확인, 자격증 인정, 외국인 고용 지원; (5) Study à 학생비자 및 학생근로비자 지원 및 연장; (6) Citizenship à 캐나다 시민권 지원 및 포기 관련; (7) New Immigrants à 영주권 획득, 지역 이민서비스 정보 찾기, 시민권 지원 및 캐나다 첫 세금 정보 제공; (8) Canadians à 여권 발급, 가족 및 난민 스폰서, 시민권 증명서, 해외 여행 및 출장, 해외입양 등 서비스 제공; (9) Refugees and asylum à 난민보호자격 요청, 난민 스폰서, 캐나다 내 난민 서비스 확인, 난민신분 요청; (10) Enforcement and violations à 캐나다 입국 가능 여부 확인, 이민 위법 요소, 구금 절차 및 이민 허용성 청문회

2) 호주 Department of Home Affairs - Immigration and Citizenship

(1) 조직구성

-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산하에서 이민국이 활동하도록 되어 있음; 이민 부서 또한 시민권과 이민자 두 개의 서비스로 비자와 다른 부분들을 나눠서 담당하고 있음
- 내무부 장관과 부장관들을 제외하고 Secretary라는 기관장의 공직자 직위가 따로 있으며 모든 부서를 총괄하고 각 부처

의 부기관장이 분야를 나누어 맡고 있음

- 내무부 장관(Minister for Home Affairs)는 Peter Dutton MP임 (정치인)
- 이민, 시민권 이주 서비스 외무장관(Outer Minister for Immigration, Citizenship, Migrant Services and Multicultural Affairs)은 David Coleman MP임(정치인)
- 내무부의 기관장(Secretary)으로는 Michael Pezzullo가 임명되어 있음; 국경관리국 CEO, 국방부 부장관, 외무부 공직자; Sydney University 역사학 학부 졸업
- 이민과 정착(Visa and Citizenship Services Group of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DIBP)을 담당하는 부기관장(Deputy Secretary)으로 Malisa Golightly가 임명되어 있음; CPA Australia 경영학 학사 졸업
- 시민권과 사회 통합을 담당 부기관장(Deputy Secretary)로 Linda Geddes가 임명되어 있음
- 내무부에서 이민 서비스 기관 담당은 Immigration and Settlement Services¹⁷⁾임
- 세부 부서는 총 5개로 구분되어 있음: (1) 이민 프로그램 부서(FAS Immigration Programs); (2) 난민, 인도, 정착 부서(FAS Refugee, Humanitarian and Settlement); (3) 이민 및

17) <https://immi.homeaffairs.gov.au>, 2019.08.25

커뮤니티 보호 정책 부서(FAS Immigration and Community Protection Policy); (4) 이민 윤리 및 커뮤니티 보호 부서(FAS immigration Integrity and Community Protection); (5) 비자 서비스 전환 부서(FAS Visa Delivery Transformation)

(2) 역할과 임무

- 호주 이민 당국인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은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약 700만 명의 인구 감소가 일어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민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시작되었음
- 설립 후 이민부처는 세계적으로 많은 이민자들을 약 700만 명 받아들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언어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다양한(diverse) 국가가 되었음
- 80만 명의 난민 또한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의 운용으로 받아들여졌으며 현재 호주의 절반 이상의 국민이 국외에 가족의 연을 갖는 배경이 되었음
- 이민당국의 상위기관인 내무부에선 Australian Multicultural Council 또한 운영하고 있음(자문 수준에서만 활동): (1) 호주 정체성(Australian Identity)에 대한 단일된 정체성에 대한 공공이해 정립; (2) 다양한(diverse) 인구로 인한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 활용; (3) 사회통합 정책 및 프로그램 촉진; (4) 커뮤니티 통합 및 참여 장벽 논의, 인종 및 차별을 포함한 문화 간 및 종교 간 소통과 이해 촉진

(3) 법령근거18)

[그림 9] 호주 이민 서비스 부서 조직도

<div style="text-align: center;"> Secretary Michael Pezzullo <small>Chief of Staff SAC Sophie Sharpe</small> </div> Effective 1 July 2021					
National Counter Foreign Interference Coordinator Chris Teat	Deputy Secretary Policy Marc-Anthony PSM	Deputy Secretary Corporate and Strategic Chief Operating Officer Chris Gurney	Deputy Secretary Citizenship & Social Cohesion Louis Gordon	Deputy Secretary Immigration and Settlement Services Nicola Colquhoun PSM	Deputy Secretary Security and Resilience Paul Dixon
Policy Development/National Counter Foreign Interference Cameron Adams AS CI Policy Neil Heath	AS Strategy and Capacity Chief Risk Officer Michael Rowland AS Capability Planning and Development Matthew Lee AS Strategic Guidance Brett Morrison AS Cyber Policy Stephen Jones AS Strategic Advice and Engagement Andrew Mackay	FAS Coordination and Public Affairs Kelly Stoddart AS Ministerial and Parliamentary Emma Stone AS Media and Engagement Jason Stoddart (ASMB) RO (SS) SD Media Engagement Operations TBA	FAS CI Coordination Centre Qing Qi Simon AS Counter-Terrorism Strategic Policy Derek Haggard AS Counter-Terrorism Operational Coordination and Evaluation Robert Jackson AS Counter-Terrorism Capability David Chak	FAS Immigration Programs Peter Daulton AS Temporary Visa Program Glen van der Laan AS Visa Business Optimization James Lee AS Skilled and Family Visa Program Peter de Marchi SD Employer Sponsored Program Management Sandra Jarner	FAS Mission and Monitor Executive Director Transport Security Vanessa Hillier AS Aviation Security Alex Tattersall AS Transport Security Operations Chris Longwell AS Air Cargo Security Monitor Matthew Peckler AS Rail and International Richard Turner AS Maritime, Training and Civil Security Lauren Leach
Commonwealth Transnational Crime and Organized Crime Coordinator Deputy Commissioner Paul Hill OIA	AS Strategic Advice and Engagement Andrew Mackay SD Priority Response Unit Carl Taylor Chief Economist Paul Hill AS Strategic Assessment and Risk Dale Farrer	FAS Project David Goff AS People Strategy Lauren Blackley AS People Management David Conroy AS People Services Alex Wright AS Payroll Services Robert Jones	FAS Citizenship and Social Cohesion Policy Paul C. Squire AS Strategic Partnerships Lauren Meehan AS Programs and Research Greg Cox AS Citizenship and Social Cohesion Policy Peter Long	SD Employer Sponsored Program Management Sandra Jarner FAS Refugee, Humanitarian and Settlement Julie Mitchell AS Humanitarian Program Operations Frances Connolly AS Humanitarian Program Capability Sally Pither AS Settlement & LAMP Programs Jan De Roo AS Settlement Program Operations Steven Bialla	Director General Emergency Management Australia Eric Cullen AS Crisis Management Joe Ruffolo AS Disaster Recovery John Gorman AS Disaster Preparedness Luke Brown
FAS Commonwealth Transnational Links and Organized Crime (CTLOC) Anthony Celic AS CTLOC Strategic and Capacity Stephen Smith AS CTLOC Operations and Equipment General Manager AJG	FAS National Security and Law Enforcement Norman Sheehan AS Law Enforcement Policy Cary Spencer AS Transnational Crime Policy Michael Taylor AS National Security Policy Andrew Warner FAS Cyber Security Policy Sophie Marney	FAS Finance Chief Finance Officer Andrew Carter AS Management Accounting Mark Davidson AIG AS Financial Operations Sam McInerney AS Procurement and Contracts Len Wilson AS External Budgets and Revenue Savannah Magillie SD Budgetary Controls Mark May	FAS Citizenship and Social Cohesion Policy Paul C. Squire AS Citizenship and ITS Steven Ross SD Multicultural Affairs and Social Cohesion TBA RO NMI/ACT Lachie Saffron RO North Steve Hilde RO SA Travis Daniels RO WA Samantha Parker AIG	FAS Refugee, Humanitarian and Settlement Julie Mitchell AS Humanitarian Program Operations Frances Connolly AS Humanitarian Program Capability Sally Pither AS Settlement & LAMP Programs Jan De Roo AS Settlement Program Operations Steven Bialla	Director General Emergency Management Australia Eric Cullen AS Crisis Management Joe Ruffolo AS Disaster Recovery John Gorman AS Disaster Preparedness Luke Brown
AS Executive Director of the Secretary (EOD) David Smith AS Performance and Evaluation Andrew Wainwright SD Executive Governance and Support Mark Spigel	FAS Information Policy David Smith AS Risk Steve Hilde AS America,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Chad Hodgson AS Pacific and Transnational Issues Andrew Ross	FAS Legal General Counsel David Smith AS Civil, Commercial and Employment Law Deputy General Counsel David Smith AS Legal Strategy and Services Alex Wright AS Legislation Thomas Pragg AS Migration and Citizenship Law Anne Richardson AS National Security and Law Enforcement Legal Steve Wright AS Migration and Citizenship Litigation Gabe Smith Special Counsel Sam French AS Counsel Warren Judd	FAS Citizenship and Social Cohesion Policy Paul C. Squire AS Citizenship and ITS Steven Ross SD Multicultural Affairs and Social Cohesion TBA RO NMI/ACT Lachie Saffron RO North Steve Hilde RO SA Travis Daniels RO WA Samantha Parker AIG	FAS Immigration and Community Protection Policy Michael Peckler AIG AS Compliance and Community Protection Michelle Halliday AS Migration Planning & Visa Policy Michael Willard Long Michael Peckler AIG AS Investigation Policy Framework Sam Washington FAS Immigration Integrity and Community Protection North Division AS Status Resolution Greg Taylor AS Character Assessment and Cases Review Judith Jones AS Immigration Integrity and Assurance Rebecca Neillson SD Status Resolution Network Sam Williams	FAS Critical Infrastructure Security Sam Westcott AIG AS Tele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Senior Director OIA Greg Butler AIG AS Assurance Risk and Engagement Andrew Gray AS Identity and Biometrics Grant Smith AIG AS Identity and Biometrics Specialist Michael and AS AusCheck and AS Identity Security Andrew Rice FAS National Resilience Taskforce Hugh Conroy OIA
Group Manager Technology and Digital Capability Richard McArthur AIG AS Cyber Risk Services Sam Ross Deputy Chief Information Officer Paul Duggan AS Intelligence, Identity and Biometrics Systems Tom Ryan AS Visa, Citizenship and Digital Systems Richard Collier AS Travel, Cargo and Trade Systems Anthony Bentley AS Corporate and Case Systems Lachlan James AIG AS Technology Operations and Support IAN BORG AS Architecture and Innovation Matt Jones AS MDS Tealibre Greg Smith AS Major Capability Michael Jammitson AS Business Engagement and PMO Stephen Dryden AS Sourcing and Vendor Management Duane Steaks AS Operational Capability Benita Turley	AS Risk Steve Hilde AS America,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Chad Hodgson AS Pacific and Transnational Issues Andrew Ross AS Intelligence MC Givens MC Givens AS North Asia Tanya Corbett AS Middle East and Africa Chris Weston AS South East Asia Chris Weston AS South Asia Tanya Corbett AS Europe Adam Mackay AS Americas Stephen O'Connell AS Pacific James Williams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David Ross AS Strategic and Policy David Smith AS Regional David Smith AS Asia David Smith AS Africa David Smith AS Europe David Smith AS Americas David Smith AS Pacific David Smith AS Mining				

- 내무부의 법령근거 중 이민 관련된 법안은 다음과 같음: (1) Immigration (Guardianship of Children) Act 1946; (2)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3)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pplication Charge Act 1997; (4) Migration (Health Services) Charge Act 1991; (5) Migration (Sponsorship Fees) Act 2007; (6) Migration (Visa Application) Charge Act 1997; (7) Migration Act 1958
- 해당 법령 중 이민에 가장 깊게 관련된 법안은 Migration Act 1958이며 호주에 입국, 거주 관리와 외국인의 출국, 송환, 구금 권한 등을 다룬 법안임

(4) 운영재원

- 이민 및 국경보호 부처의 비용의 핵심 고려사항은 이주와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에 있음; 두 개의 프로그램의 규모에 따라 호주 의회에서 예산책정을 하여 배정함
- 이주민(Permanent Residency)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와 비자 발급 여부로 비용을 책정하고 이주 프로그램 운용을 하고 있으며 2018-19년도에는 총 19만 개의 영주권이 발급되었음; 뉴질랜드인을 위한 새로운 비자 분류는 19만 개 중 1만 개를 차지하였고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은 18,750개를 차지하게 되었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자 유형들을 모두 고려하여 이민당국의 예산을 책정하고 의회에서 배정하도록 되어 있음

(5) 보유 DB 및 정보시스템

- 호주는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로 정부의 데이터 및 자료를 수집 및 보관하고 있음
- Digital Continuity 2020 사업으로 정보 거버넌스를 기관에 도입하여 증거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에 기여함¹⁹⁾
- 기존의 기록들로 Fact Sheets를 만들어 주제에 따라 기록물들을 정리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
- 이민 및 이주 관련한 기록은 다음과 같음: (1) 외국인 등록 [alien (non-citizen) registration]; (2) 이주자 지원서 (Migration applications); (3) 사건 파일(Case Files); (4) 이주자 선별 서류(Migrant Selection Documents); (5) 이주자 거주지 기록(Migrant Accommodation Records); (6) 시민권 기록[Naturalization (citizenship) Records]; (7) 승객 기록 (Passenger Records); (8) 여권 기록(Passport Records); (9) 정책 파일(Policy Files); (10) 비자와 입국/출국 서류(Visas and entry/exit documents)

(6) 기존 조직과의 관계

- 호주는 한국과 같이 별도의 이민서비스 기관이 따로 있지 않지만 법무부나 외교부 소속이 아닌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에서 담당함
- 호주는 의회에서 각 기관을 담당하는 장관(Cabinet)과 특정

19)

<http://www.naa.gov.au/information-management/digital-transition-and-digital-continuity/>,
2019.08.25

이슈를 담당하는 외무장관(Outer Ministry)이 따로 있음; 외무장관은 부처의 장관에게 협력하며 상호작용하면서 일하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외무장관은 기관을 따로 갖거나 운영하지는 않음; 각 기관의 장은 장관은 맞으나 실무적 기관장은 Secretary로 따로 직책이 있음

(7) 서비스 내용 및 유형 (Department of Home Affairs – Immigration and Citizen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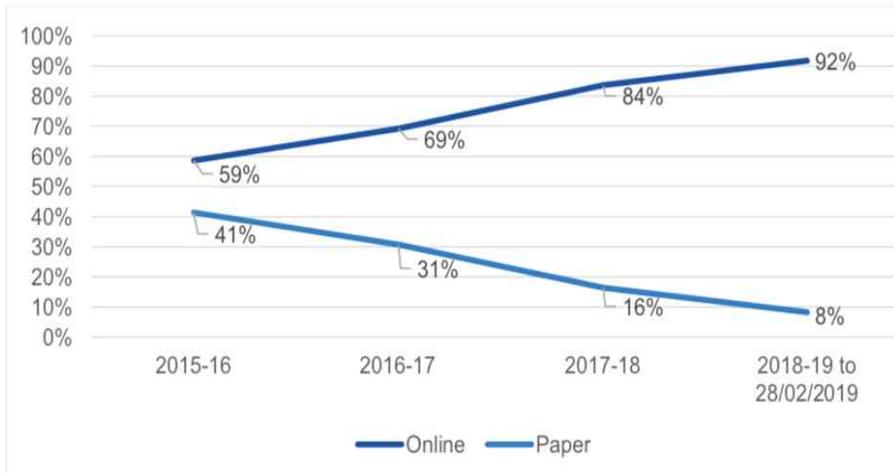
- 역할 프로그램: (1) 해외 유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Education Program); (2) 이민 프로그램 소개와 이주 프로그램(Immigration Program); (3) 호주 비자 시스템 개편(Immigration Reform); (4) 난민 및 인도주의적 지원(Refugee and Humanitarian); (5) 호주에서 필요로 하는 일 자리를 채우기 위한 비자 제공(Regional Migration); (6) 숙련자 이주 프로그램 운영(Skilled Migration Program); (7) 이민자 신분 솔루션 서비스(Status Resolution Services); (8)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운영(Working Holiday Maker Program)
- 전자화 관련 서비스²⁰⁾: (1) 1996년 호주 이민당국은 증가하는 출입국 건수로 인하여 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 시스템을 도입하였음; (2) 종이 지원서와 전자 권한으로 33개의 “low risk” 국적에 비자 발급을 자동화시킴; (3) 해당 시스템은 지원자의 최소한 정보만 수집하였고 해당 한 가지 watch-list people에 의존하여 Movement Alert List를 운용하였음; (4) 이때부터 지속적인 이민 관련 행정의 발전

20)

<https://immi.homeaffairs.gov.au/programs-subsite/files/administration-immigration-program.pdf>, 2019.08.25

이 있었음; (5) 2019년 2월 28일 부로 95%의 비자신청은 전자로 처리되었음

[그림 10] 단기 비자 온라인 처리 비율: 2015~2019



- Immigration/Migration/Visa 관련 서비스²¹⁾: (1) 온라인 비자 처리 시스템(Visa Finder); (2) 설문을 통한 적합 비자 검색 및 제안; (3) 관련 서류 및 비용의 손쉬운 제공(Applications, forms and booklets); (4) 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이민 관련 서비스들(위에 명시된 서비스들); (5) 외국인을 채용하고 싶은 채용자들에 대한 도움 서비스 (Employing and Sponsoring Workers); (6) 이민 대리인들을 위한 정보 제공 (Migration Agents); (7) 이민 대리인 등록,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기관 운용(Office of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

- 호주의 뉴질랜드인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 (New Zealanders in Australia)²²⁾: (1) 비자 정보 공유 -> 뉴질랜드인을 위한 별

21) <https://www.australia.gov.au/information-and-services/immigration-and-visas>, 2019.08.25

도의 비자 운영; (2) Special Category Visa(SCV): 방문 즉시 발급되어 호주입국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없음; 뉴질랜드 여권을 소지하고 Passenger Card 소지; 단기 비자이며 장기 비자는 별도 신청해야 함; 2001년 이전에는 뉴질랜드인을 위한 SCV만으로 사회보장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였으나 양국 간의 조율로 인해 폐기되었음; 하지만 Transitional Arrangements로 뉴질랜드인에게 꾸준히 영주권의 기회를 제공; (3) 뉴질랜드인을 위한 호주의 혜택과 시민권 관련 사안 업데이트: “Protected” SCV Holder로서 호주에 거주하게 되면 사회보장시스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non-protected SCV holder” 들의 경제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및 지불 시스템(Family Assistance Payments, Allowance Payments, Pensions and Carer Payment, Disaster Payments, Health Care Cards and the 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4) 뉴질랜드인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 호주에 거주 중인 뉴질랜드인은 Medicare에 가입할 수 있음; 장애 보험 제도 운영에도 참여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5) 뉴질랜드인의 교육 제도 접근(호주에 거주 중인 뉴질랜드인은 모두 국내 학생으로 취급되며 커먼웰스(영국령) 지원이 되는 대학들에 입학,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음, 학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Higher Education Loan Program); SCV 보유, 만 18세 이상, 10년 이상 거주 기록 및 18개월 간의 신청 전 호주 체류, 다른 HELP 기준 통과 시 지원; (6) 관련 통계 및 데이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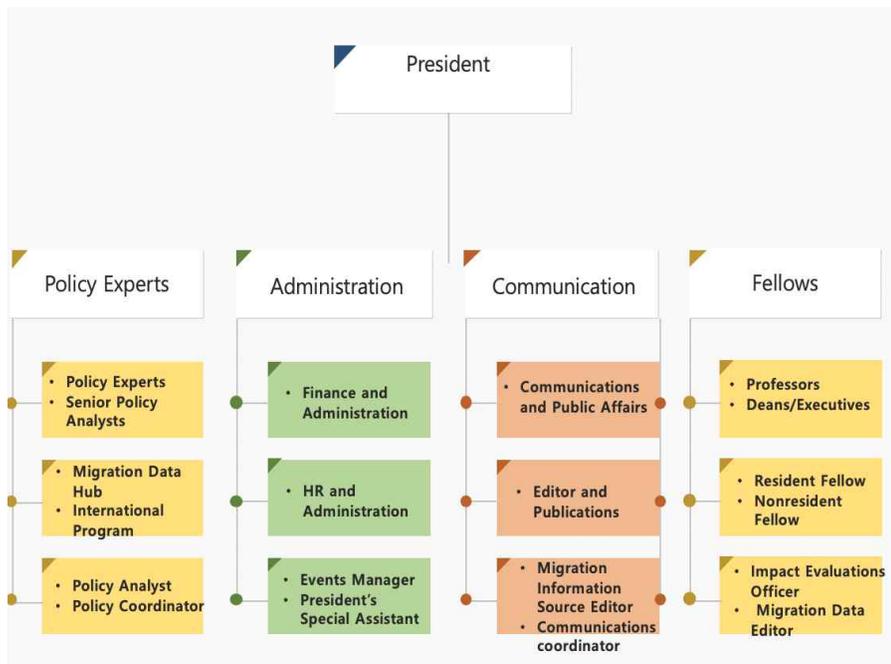
22)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rp/rp1617/Quick_Guides/NZAust, 2019.08.25

3) 미국 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

(1) 조직구성²³⁾

□ MPI 조직도

[그림 11] 미국 MPI 조직도



□ 인원구성

- MPI Analyst들 중에서 데이터를 핵심으로 다루는 인력은 많지 않고, Acting Director와 같은 정책 실행과 정책 연구에 더 큰 방점을 찍고 있음

23) <https://www.migrationpolicy.org/about/staff>, 2019.08.30

- MPI에서 핵심적인 인력구성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이민관련 최소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5년 이상 정책분석, 질적 조사, 양적 조사 등을 NGO, 법, 혹은 정부 부처 등에서의 경험이 있는 자
 - 미국 이민정책, 보건 및 민원 서비스 등 두 가지 관련 정책 경험이 있는 자
 - 복잡한 정책 조항을 이해하고 융합할 능력이 있는 자
 - 검증된 조사, 체계화, 그리고 프로젝트 경영 능력
 - 우수한 글쓰기와 편집 능력
 -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
 - 보여지는 전문성과 판단력
 - 팀으로 일할 수 있는 자
 - 공식에서 말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자

(2) 역할과 임무

- 미국의 MPI는 이민정책을 중점으로 펴는 곳이며 이민과 통합 정책이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임무가 있음
- 핵심 임무는 다음과 같음
 - 접근 가능한 때에 맞는 이민·통합 이슈에 대한 데이터, 정보, 그리고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결정자와 대중이 요구하는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갖춤
 - 이민의 흐름이나 이민·통합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충족시키는 연구를 진행함
 - 현재 이민·통합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노동시장, 교육결과, 사회통합 등에 대한 영향을 살펴봄
 - 대화를 위한 신뢰의 촉진과 이민·통합 이슈에 대해 다양하게

-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정책결정자와 실행자 그리고 NGO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
어 이민·통합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줌
- 이민·통합 문제가 효과적으로 대응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진행함
- MPI는 3가지 큰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미국 이민정책 프로그램(The US Immigration Policy Program)
 - 이민통합정책 국가센터(The National Center on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 국제 프로그램(The International Program)

(3) 법령근거

- MPI는 다양한 기구, 미국 혹은 다른 국가기관, 기업,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재원을 조달받는 기관으로서, 웹사이트를 통
해서는 설립 근거 등을 규정하는 법령이 제공되지 않음

(4) 운영재원

- MPI의 주된 재원은 재단 등을 통한 Research Grant이고, 다
양한 기구, 미국 혹은 다른 국가기관, 기업, 그리고 개인으
로부터 재원조달을 함
- 주요 후원기관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US Department
of State
 -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 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 U.S. Census Bureau
- World Bank
-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5) 보유 DB 및 정보시스템

- 가용 중인 데이터는 그 범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 데이터의 직접 수집보다는 국제기구 및 국가기관들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활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미국 이민자 관련 정보는 US Census 데이터 중 US immigrants and the native born based on demographics, language and education, workforce and income을 활용하고 있음²⁴⁾
- Data Hub를 통해 가장 최신의 국가 수준의 이민자의 인구, 사회 그리고 경제 관련 정보를 보여줌
- 국제 데이터는 The UN Population Division²⁵⁾을 주로 활용하며 유럽의 경우 EU 국가 각각의 자료와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에 해당되는 국가까지 포함하고 있는 Eurostat을 활용함²⁶⁾

24) <https://www.migrationpolicy.org/programs/data-hub/state-immigration-data-profiles>, 2019.08.30

25) <https://www.migrationpolicy.org/programs/data-hub/charts/immigrant-and-emigrant-populations-country-origin-and-destination?width=1000&height=850&iframe=true>, 2019.08.30

26) <https://www.migrationpolicy.org/programs/data-hub/charts/asylum-recognition-rates-eu-fta-country-2008-2017>, 2019.08.30

- Asylum 관련 자료는 주로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의 Refugee and Asylum Seeker Populations by Country of Origin and Destination을 2000년 것부터 2017년 것까지 활용 중임²⁷⁾
- 그 외 데이터는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ECOSOC)의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Stock: Migrants by Destination and Origin 등을 활용하고 있음²⁸⁾

(6) 기존 정부 조직과의 관계

- 기존 국제기구, 정부기관 등과 데이터 자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나 공식적으로 개방된 데이터 혹은 보고서 자료 등을 활용하는 형태임;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US Census, UN, Eurostat 등이 있음
- 캐나다,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몰도바,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등 다양한 국가의 외무부에서 펀드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정책적 자문을 받음
- 데이터 뿐만 아니라 자금 또한 국제기구인 UN과 다양한 재단에서 후원을 받으며 관계를 맺고 있음

27) <https://www.migrationpolicy.org/programs/data-hub/charts/refugee-and-asylum-seeker-populations-country-origin-and-destination?width=1000&height=850&iframe=true>, 2019.08.30

28) <https://www.migrationpolicy.org/programs/data-hub/international-migration-statistics>, 2019.08.30

(7) 서비스 내용 및 유형

- 국제 프로그램, 이민·이주·개발 프로그램, 이민 및 통합정책을 위한 국가센터 프로그램, 미국 이민정책 프로그램을 위한 정보제공, 분석(보고서 작성 및 공유), 자문, 정책개발 등을 제공함

4) 미국 PEW Research Center

(1) 조직구성²⁹⁾

□ 인원구성

- PEW Research Center는 초당적인 팩트탱크로서 공공부문 이슈에 대한 정보전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된 업무는 여론조사, 인구조사, 내용분석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사회과학 연구를 하고 있음; 정책 입장은 다루지 않고 있음
- 강조하는 전문성은 관찰, 스토리텔링, 분석 세 가지로 키워드로 가져가고 있음
- Michael Dimock³⁰⁾이 현재 연구책임자로 이끌어나가고 있으며 총 160명의 직원이 있음; Michael Dimock은 정치학을 전공하고 미국여론조사 전문가로 활동함; 랜드마크 연구보고서, 미국의 정치 및 사회적 가치 트렌드 조사,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 인식조사 및 캠페인 연구 등에 참여함

29) <https://www.migrationpolicy.org/about/staff>, 2019.10.01

30) <https://www.pewresearch.org/staff/michael-dimock/>, 2019.10.01

- 데이터 관련 부서로는 Data Labs가 전체적인 직접 수집 데이터를 관리하며 이민 관련 부분은 Global Migration and Demography Research에서 담당하고 있음
- PEW Research에서 핵심적인 인력구성원³¹⁾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Andrew Cohen, Director, Communication
 - Alan Cooperman, Director, Religion Research
 - Carroll Doherty, Director, Political Research
 - Cary Funk ,Director, Science and Society Research
 - Alycia Kantor, Director, Legal Affairs
 - Courtney Kennedy, Director, Survey Research
 - Mark Hugo Lopez, Director, Global Migration and Demography Research
 - Amy Mitchell, Director, Journalism Research
 - Christie Moon, Director, Human Resources
 - Kim Parker, Director, Social Trends Research
 - Michael Piccorossi, Director, Digital Strategy
 - Lee Rainie, Director, Internet and Technology Research
 - Aaron Smith, Director, Data Labs
 - Richard Wike, Director, Global Attitudes Research
 - Nikolas Wissmann, Director of Financial Administration

(2) 역할과 임무³²⁾

-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정책입안자, 시민 지도자, 교육자, 공공부문 등에 다양한 주제에 관한 실증조사로 도움을 주면서 세계의 가장 주요한 현안들의 이해를 돕고 공론화를

31) <https://www.pewresearch.org/about/our-leadership-and-staff/>, 2019.10.01

32) <https://www.pewresearch.org/about/our-mission/>, 2019.10.01

도출함

- 데이터를 활용한 증거 기반으로 공공에서의 논의를 촉진하고 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Nonprofit(비영리), Nonpartisan(초당적), Nonadvocacy(객관적) 원칙을 지키고 있음
- 최근 연구 분야: 미국 정치 및 정책, 여론과 미디어, 인터넷, 과학 및 기술, 종교 및 공적생활, 히스패닉 추세, 글로벌 추세, 미국 사회 및 인구 추이 등; 히스패닉 추세 부분은 미국 이민자 추세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이어나가고 있음

(3) 법령근거

- Pew Research Center는 The Pew Charitable Trust를 통해 재원을 기부받아 조달하는 기관으로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설립 근거 등을 규정하는 법령이 제공되지 않음

(4) 운영재원³³⁾

- Pew Research Center는 비영리 연구센터이며 The Pew Charitable Trusts에서 지원금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Trust는 기부금 및 투자금을 받아 신탁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짐

(5) 보유 DB 및 정보시스템³⁴⁾

- Pew Research Center는 정부, 유사정부, NGO 등에서 제공하

33) <https://www.pewtrusts.org/en/about>, 2019.10.01

34) <https://www.pewresearch.org/methods/demographic-research/data-sources/>, 2019.10.01

는 데이터는 공공개방이 된 것을 중심으로 연구에 활용하고 있으며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에게 데이터 또한 전해받아 활용함

- 데이터 Source는 다음과 같음: US Census;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SIPP); Other Sources (기타) àWorldBank, Federal Reserve, Bureau of Labor Statistics 등
- 개방 데이터는 원하는 변인이 없는 경우가 있기에 직접 서베이를 운용하기도 하며 데이터 수집은 모두 정부기관과의 협업이 아닌 직접 수집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데이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하고 있음
- 주제별로 다양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가장 대표적인 설문조사는 Religious Landscape Study로 미국의 종교 현황에 대한 미국 전역의 35,000명의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였음

(6) 기존 정부 조직과의 관계

- Pew Research Center는 정부조직과 연계하지 않는 독립적인 민간연구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데이터 또한 개방된 데이터만을 활용하며 대외비용 데이터를 따로 정부 등에서 제공받고 있지 않음

(7) 서비스 내용 및 유형³⁵⁾

-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실증연구를 통해 증

35) <https://www.pewresearch.org/about/our-research/>, 2019.10.01

거기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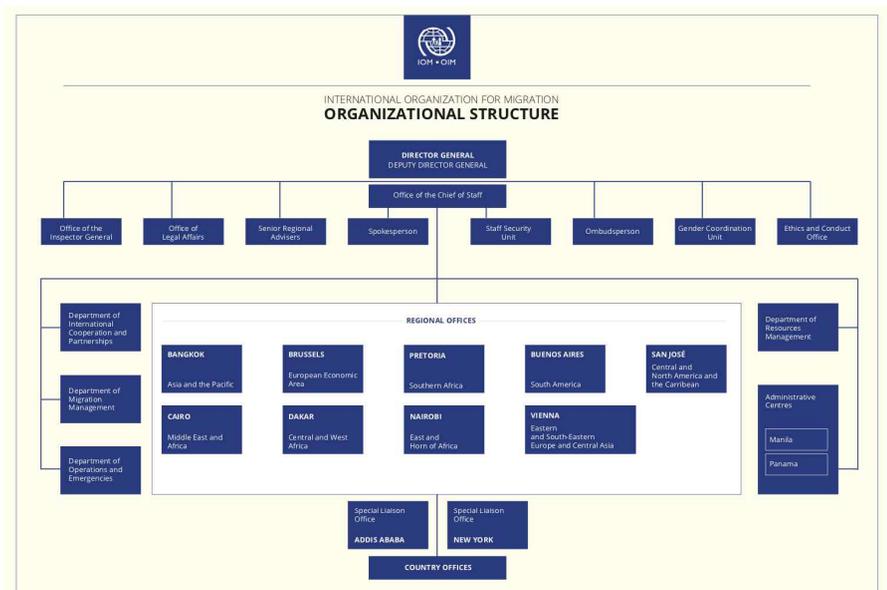
- US Politics, Media & News, Social Trends, Religion, Internet & Tech, Science, Hispanics, Global, Methods 등에서 Fact Sheet 발간 및 보고서 제작을 하고 있음; 직접 구성한 데이터 같은 경우 공개와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한 정책제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5)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Global Migration Data Analysis Centre (GMDAC)

(1) 조직구성

□ IOM 조직도

[그림 12] IOM 조직도



출처: <https://www.iom.int/organizational-structure>

□ GMDAC의 부서별 인원 구성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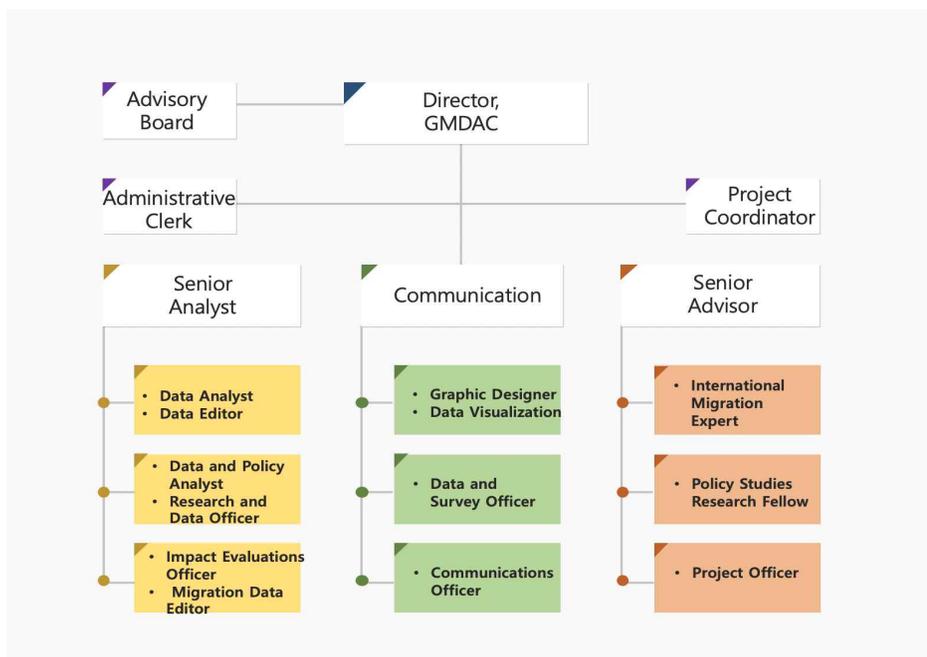
- 부서 인원 구성은 대부분 이민정책 관련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 학위나 커리어 모두 국제관계, 개발정책, 이민정책 등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계 및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회과학자에 가까움
 - 데이터 분석 전문가도 물론 포진은 되어 있으며 정책영향평가 전문가 또한 포진되어 있음
 -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PR 및 소통 전문가와 그래픽 디자이너 및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전문가가 있음
 - 경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프로젝트와 난민 및 이민 등의 정책을 다루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주요 분석가들의 커리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Director: Frank Laczko
 - International migration field 20 years
 - Co-chair of UN expert group on migration statistics
 - Co-editor of migration policy practice
 - Senior Analyst: Susanne Melde
 - Migration policy and data analysis 10 years
 - Specialist in migration governance and policy analysis
 - Analysts

36) <https://gmdac.iom.int/the-team>, 2019.10.01

- Data policy, strategy, capacity for government experts
- International migration data experts
- Development studies experts
- Migration policy expert
- International affairs/peace and conflict studies expert
- Data and policy analysts
- Impact evaluation officer (development economics)

□ GMDAC 조직도

[그림 13] IOM GMDAC 조직도



출처: <https://gmdac.iom.int/the-team>

(2) 역할과 임무³⁷⁾

- 이민과 관련된 시기적절한 데이터는 드물며 이는 종종 효과적인 이민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을 어렵게 함
- 이민 통계가 존재할 때에도 정책결정자들은 데이터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국가들에 흩어져 있어 이를 100%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IOM GMDAC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
- 이민 데이터의 부실한 제시는 이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으며 대중의 의견을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음
- 더 나은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소통은 이민 이슈에 관한 균형 잡힌 토론에 기여함

(3) 법령근거³⁸⁾

- 국제기구인 IOM은 1951년에 설립되어 유럽 이민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로 1952년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 기본은 국제이민법 촉진에 있음

(4) 운영재원³⁹⁾⁴⁰⁾

- 현재 IOM은 개발도상국 등 회원국가들을 위한 IOM Development Fund를 운영하고 있고, 이는 2001부터 시작되

37) <https://gmdac.iom.int/the-team>, 2019.07.10

38) <https://www.iom.int/iom-history>, 2019.07.10

39) <https://developmentfund.iom.int/sites/default/files/documents/S-24-7%20-%20IDF%20Final%20Report%202018.pdf>, 2019.07.10

40) <https://developmentfund.iom.int/about-fund>, 2019.07.10

었음

- 초기 USD 1.4 million 규모에서 현재 평균 USD 8.1 million까지 규모가 확대되었음
- 펀드 자원은 회원국들의 자유재량적 후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기부를 받고 있음; 회원국가로서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으며 민간조직 및 단체들 그리고 개인들도 웹페이지를 통해 기부할 수 있음
- IOM Development Fund 후원국가로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모로코, 스페인, 스웨덴, 미국이 있음

(5) 보유 DB 및 정보시스템⁴¹⁾

- 데이터는 다양한 원천에서 도출하고 있으며 공개되어 부분도, 비공개인 부분도 있음
- 모든 데이터는 IOM' s Migration Data Governance Policy로 모여서 처리됨
- 데이터 활용은 IOM' s Data Protection Principle에 따라 처리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
-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자체 행동
 - Migration Governance Indicators (MGI)를 활용하여 여러 국가에서 직접적인 질적 데이터를 수집함
 - Missing Migrants Project를 통해 GMDAC가 여러 이민 출처를 파악하여 이민자 정보를 직접 수집함

41) <https://migrationdataportal.org/themes/iom-data-overview>, 2019.07.10

- Migrant Assistant Division (MPA)는 IOM이 직접 인신매매 정보 등을 수집하여 글로벌 DB(CTDC, The Counter-Trafficking Data Collaborative)에 취합시킴
 - Migrant Training을 통한 데이터 수집
 - Resettlement, IOM의 Department of Operations and Emergencies (DOE)의 데이터 수집
 - IOM의 Displacement Tracking Matrix를 활용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나 비정상적인 이민 흐름 등을 파악
 - IOM의 Migration Protection and Assistance Division (MPA)의 취약 이민자 데이터 파악
 - IOM의 Migration Health Division(MHD)의 이민자 건강정보 파악(비공개)
- 중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외부 데이터 자원
- UN DES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WB (World Bank)
 -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6) 기존 정부 조직과의 관계⁴²⁾

- 기존 정부들에게서 자금 지원과 자원의 재분배의 역할을 수행함
- 데이터를 국가들의 협조를 얻어 직접 수집함
 - 국가들에게서 이민자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아님
 - 유럽이라는 복잡한 이민자 특성을 고려한 특이한 형태의 조직으로 볼 수 있음
 -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음

42) <https://www.iom.int/country-offices>, 2019.07.10

○ 자원조달을 위한 주요 국가에 사무실 설치

- 독일, 베를린
- 핀란드, 헬싱키
- 일본, 도쿄
- 미국, 워싱턴 DC

○ 이민자 관련 대응 및 조율을 위한 지역 사무실

-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 중동
- 호주, 캔버라 - 태평양
- 기야나, 조지타운 - 캐리비안
- 이탈리아, 로마 - 지중해
- 중국, 북경 - 커버 지역 미정
- 태국, 방콕 - 동남아 지역(예정)

(7) 서비스 내용 및 유형

- 글로벌 이민 거버넌스에서 데이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IOM 회원국들의 데이터 수집, 분석, 사용 역량을 지원하고, IOM 과 다른 원천 데이터를 추적, 공유, 분석하여 증거기반정책을 촉진함

6) The Information Centre on Asylum and Migration (IZAM)

(1) 조직구성

독일 The Information Centre on Asylum and Migration 조직도

- IZAM은 2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음: ① 저서, 문헌 부문; ② 국가 분석

- 세부 부서는 총 5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1) 분석 부서 (Analysis Divisions); (2) 저서, 문헌, 기사 부서(Library, Literature and Press Documentation); (3) 국가 및 관할지역 부서(Country and Jurisdictional Documentation); (4) 정보 공급 부서(Provision of Information, Document Delivery Service for legal practitioners and publications); (5) 거주, 분포도, 어려움 관련 입법 위원회(Law on residence, distribution over the lander, hardship case commission)
- 구성인력자원: (1) 사서, 다큐멘탈리스트⁴³⁾, 변호사, 정치학자,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전문가 포럼: 이민과 망명에 관한 전문가들을 모셔 정부의 방향을 수정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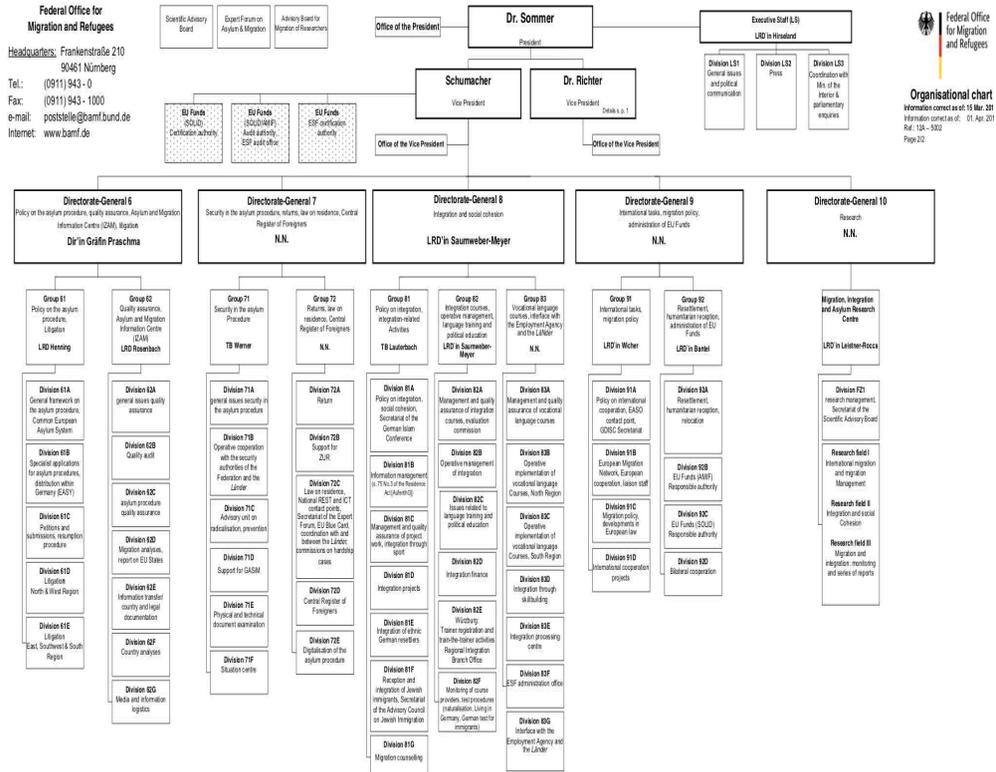
(2) 역할과 임무(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⁴⁴⁾

- IZAM은 이민, 통합, 그리고 송환에 관하여 조사하기 위한 기구로서 설치되었으며 주요 과제는 이민과 망명임
- 해당 기관은 믿을 수 있고 포괄적인 최신 이민자들의 현황과 출신지, 교통편 정보 등을 수집함
- 세계 난민과 이민 움직임을 그 원인에 맞춰 파악하고 문헌과 언론을 통하여 통합에 대해 평가함; 난민과 거주에 대한 법과 지리, 인권 등 다양한 원천을 통하여 이민 조사를 함

43) 문헌·정보의 수집·분류·정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44) <http://www.bamf.de/EN/DasBAMF/Aufgaben/InformationszentrumAsylMigration/informationszentrum-asyl-migration-node.html>, 2019.07.10

[그림 14] 독일 The Information Centre on Asylum and Migration 조직도



- 독일의 이민청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 관련 기관에서 전문가들을 통합하고 공공부문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전문가 포럼을 따로 운영하여 IZAM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함
- 매주 Briefing Notes를 발간하여 주요 이민자 · 난민 · 망명자 발생 가능성을 알아보고 해당 이슈에 대해 관련한 이슈들을 정리하고 각 국가별 현황을 정리하여 발간함
- 핵심 임무: (1) Asylum Act에 따른 기사, 전문가 보고서, 공식 처리 정보 등을 수집하고 망명과 거주에 관한 판례 수집;

(2) 발생지와 통행지인 국가 상태에 대한 분석과 실시간 이슈들에 대한 토픽 보고서; (3) 내부 혹은 외부 정보 문의에 대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

(3) 법령근거

- IZAM의 법령근거 법안은 Act on the Residence, Economic Activity and Integration of Foreigners in the Federal Territory (Residence Act)이며 여권, 비자, 거주, 유학, 영주권 등 다양한 이민 관련 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 법안임
- 해당 조항 Part 2 제75조 의무 조항에서 IZAM,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에 관한 의무와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⁴⁵⁾
- 제75조 제1항은 경제활동을 위한 외국인 거주지 정보와 여권 및 비자 정보처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연방정부를 위하여 전문가 의견을 정보자료와 통합방안들을 함께 제출한다고 명시함
- 제4항에서는 이민 관련 이슈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여 분석적 결론을 통해 이민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함

(4) 운영재원⁴⁶⁾

- 2015년부터 특히 2016년에 독일에 망명자들은 890,000명에 육박하며 BAMF의 IT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과 역량 개선이 필요했음; 따라서 2016년에 €21.7bn으로 증가하였음

45) http://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aufenthg/englisch_aufenthg.html#p1348, 2019.07.10

4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Press_Room/Publications/Technical-Papers/2017-01-27-Asylum-and-refugee-policy.html, 2019.07.10

- 2017년에 독일연방이 이민자들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음⁴⁷⁾

[그림 15] 독일연방이 이민자들을 위해 사용한 금액(2016~2017)

Contributions by the Federation in response to the flow of asylum seekers in billions of euros	2016 estimate	2017 projection
Combating the root causes of refugee flows	7.1	7.2
Arrival procedure, registration, housing during asylum procedure	1.4	1.3
Contribution to integration measures	2.1	3.2
Social transfers after asylum procedures	1.7	2.7
Direct financial support for Länder/local authorities	9.3	6.9
Total asylum-related contribution from the federal budget	21.7	21.3

(5) 보유 DB 및 정보시스템

- 주요 DB는 이민원의 정보처리 시스템인 MILo (Migration Info Logistics)를 쓰고 있음
- 관련된 데이터 주제는 다음과 같음: (1) 난민 출처 국가에 대한 정보; (2) 망명 및 난민 보호 정보; (3) 송환 조치 정보; (4) 이민·이주 관련 정보
- 난민 출처 국가에 대한 정보는 난민이 발생한 사유 정보 위주로 처리되며 그들의 정착지 및 목적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됨
- MILo는 Information Centre for Voluntary Return (ZIRF)의 DB 정보도 포함하고 있음

4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Press_Room/Publications/Technical-Papers/2017-01-27-Asylum-and-refugee-policy.html, 2019.07.10

- 2,000명 이상의 외부 이용자를 가지고 있으며 20개 다른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
-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의 수단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원천이 있음: (1) 망명 절차에 관한 정보; (2) 사법부의 판례; (3) 공식 정보 및 분석 자료; (4) 전문가 보고서; (5) 파트너 기관들의 문헌 및 발표자료; (6) 인권기관들의 보고서
- 비자와 관련된 데이터 관리 문제를 추후에는 ETIAS (The 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로 EU와 통합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2017년에 제안되어 2021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EU가 통합관리하며 독일의 경우 Germany Visa국에서 직접 처리
- ETIAS 활용의 이점: (1) 영토 진입을 원하는 이들에 대한 사전 검증; (2) EU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비자면제 제3국 시민에 대한 여행 거부; (3) EU각국의 안보 강화; (4) 불법체류 및 이민 방지; (5) 공공보건 해칠 위험성 제고, 출입국심사의 지연시간 감축

(6) 기존 조직과의 관계

- 철저한 독일 이민원 하위 기관으로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망명과 난민처리를 위해 설립되어 있음
- 유럽연합의 행정당국들과 협력하여 정책 수립 및 현안 해결을 위하여 유럽이주네트워크(The European Migration Network)를 설립하여 모든 EU국들의 이민데이터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설립하여 운영 중임 → EU의 이민정책에서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줌⁴⁸⁾

48) <http://www.bamf.de/EN/DasBAMF/EMN/DasEMN/dasemn-node.html>, 2019.07.10

(7) 서비스 내용 및 유형

- 유대인 이민자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 운영(Jewish Immigrants): 유대인 난민들과 이민자들은 독일의 Residence Act에 따라 독일 입국 지원을 할 수 있음
- 독일어로 된 Migration Report를 주기적으로 제공함; 이민 관련 통계 자료 제작 및 배포, 독일 입국절차 소개 및 관련 법안을 제공함
- 개발도상국 출신 이민자들의 가족 재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Family Reunification of third-country nationals in Germany)⁴⁹⁾
- 6가지 핵심 조건들 아래 가족재회 허용: (1) 프로그램 스폰서가 EU권에 장기거주권을 보유 중이거나 EU 블루카드 소지자로 영주권이 있어야 함; (2)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함; (3) 건강보험 소유 여부; (4) 가족부양 여부; (5) 특정 이민 집단은 독일 언어시험을 통과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음; (6) 배우자는 최소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개발도상국 이민자들의 교육 및 취업을 위한 절차 안내 서비스⁵⁰⁾
-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 민족인을 위한 서비스: 이민자 중 독일 민족으로 증명되면 즉시 시민권이 발급됨, 재정착을 위한 Integration Course를 들어야 함

49) http://www.bamf.de/SharedDocs/Anlagen/EN/Publikationen/EMN/Studien/wp73-emn-familiennachzug-drittstaatsangehoerige-deutschland.pdf?__blob=publicationFile, 2019.07.10

50) http://www.bamf.de/SharedDocs/Anlagen/EN/Publikationen/Broschueren/bildung-und-beruf-in-deutschland.pdf?__blob=publicationFile, 2019.07.10

- 독일 이민원의 경우 Service라는 용어가 출현하는 곳은 한국 데로, “The Information Service of the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로서 일반 시민 및 외국인들에게 유선 및 email을 통해 질의응답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그 외엔 서비스라는 단어가 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7) 시사점

- 이민자·외국인 관련 정보시스템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보안성이 낮고 공개성이 높은) 정보의 출처로 활용되는 사례들이 발견됨
- IRCC: 모든 이민자·외국인 관련 데이터는 캐나다 정부의 open government portal를 통해 관리·공개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예: 영주권자, 단기체류자, 난민)에 따른 다양한 이민자·외국인 서비스(예: 관리·감시, 부동산, 법률)를 제공하고 있음
- IZAM: 주요 이민자·외국인 관련 데이터는 (외부자도 이용할 수 있는) IZAM의 정보처리시스템인 MILo(Migration Info Logistics)를 통해 관리·공개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문헌별·국가별 이슈를 조사·분석하고 보고서를 발간함
- 이민자·외국인 관련 정보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수집·추적·활용·공유되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음
- 보안성이 낮고 공개성이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에 필요한) 가공된 정보를 생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민자·외국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민정보

서비스원' 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됨

4. 설립의 타당성 분석

- 이 연구는 학자들과 공무원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민·외국인정책 관련 전문가들이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이민·외국인정책 전담 지원 기관의 명칭을 '이민정보원' 대신 '이민정보서비스원' 으로 제안하고자 함
-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민·외국인정책 전담 지원 기관의 명칭은 보안성이 낮고 공개성이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에 필요한) 가공된 정보를 생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민자·외국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민정보서비스원' 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향후 전개될 신설 이민·외국인정책 전담 지원 기관의 핵심적인 기능 및 향후 기능의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경우, 이민·외국인정책 전담 지원 기관을 '이민정보원' 보다 '이민정보서비스원' 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함

1) 제도적 타당성

(1) 조직 형태: 준정부기관으로서의 공공기관 설립의 타당성

- (준정부기관으로서의 공공기관 설립의 타당성 검토)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이민·외국인정책에 관한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정부조직이 운영상의 한계를 갖는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점에서 준정부기관으로서의 공공기관 설립의 타당성이 높음

- 공공기관은 국민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가 공적 소유권 제도를 활용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 혹은 정부로부터 일정한 업무를 위탁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아 비상업적인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함
- 공공기관의 역할은 (1) 기존 정부조직이 갖는 운영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역할(경직적인 정부조직의 역할을 대행하는 유연한 조직으로서의 기관), (2) 정부가 담당해야 할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정부의 집행 중심의 업무를 대행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기관)로 구분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유형들 중에서 준정부기관은 소비자 안전 보호, 자연자원 보존 및 시설관리, 국민건강 및 복지서비스 전달, 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인력·정보 등의 지원서비스, 정책 금융서비스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기능을 담당함
- 또한, 준정부기관은 정부의 정책집행 수단으로서의 역할, 사회적 규제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부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회보험 혹은 정책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등을 담당함

[표 3] 중앙정부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성하는 제도단위

소유통제주체 : 정부				민간						
←공공성 ————— 기업성 →				←공공성 ————— 기업성→						
공공부문							민간부문			
정부부문			공공기관				비영리부문		영리부문	
정부부처 (정부기업)	책임운영기관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준정부기관		공기업		시민 단체 (NGO)	공익 법인 (NPO)	사기업
	행정형 기관	기업형 기관 (정부기업)		위탁 집행형 기관	기금 관리형 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법무부 우정사업본부	현대 미술관	경찰 병원	KDI	KOTRA	국민연 금공단	조폐 공사	가스 공사	참여 연대	대한상공 회의소	

자료: 곽채기(2009: 60)에서 재구성

-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설립은 현재 이민·외국인정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급증하는 이민·외국인정책 관련 대민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이민정보서비스원이 제공하는 대민서비스는 이민정책(외국인의 입국·체류·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등)과 사회통합정책(언어·문화교육, 차별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이민·외국인정책에서의 집행적 성격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음
- (책임운영기관 설립의 타당성 검토)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성과 측정의 어려움, 자체적인 재정수입 확보의 어려움, 공무원조직으로서의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운영기관 설립의 타당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법)

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를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함

- 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과 같은 기준 중에서 어느 하나에 맞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됨: (1)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 (2)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
 - 이민정보서비스원이 제공하는 대민서비스는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와 연관되지만, 업무의 성격상 업무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을 통해 정량화하여 개발하고 측정하기 어려움
 - 이민정보서비스원이 제공하는 대민서비스는 영리활동 및 이를 통한 안정적이고 수혜적인 수익과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움
 - 공무원조직으로서의 책임운영기관은 이민정보서비스원이 제공하는 대민서비스의 전문성, 유연성,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연하고 신축적인 인사·조직·예산관리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어려움
-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의 타당성 검토) 이민정보서비스원은 학술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보다는 실용적이고 즉각적인 대민서비

스를 지향하고 이민·외국인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설립의 타당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기관법)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의미함
-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주요한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이 이민·외국인정책에 관한 학술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보다는 실용적이고 즉각적인 대민서비스와 연관되어 있음: (1) 법무부로부터 이관받는 이민·외국인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관리; (2) 이민·외국인 정보 분석을 통한 정책의 개발 지원; (3) 국외 우수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을 포함하는 이민자·외국인 관련 정책의 지원을 위한 대민 서비스 제공
- 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외국인정책에 관한 전문화된 기관으로서 이미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1) 이민 관련 조사·연구, 정보자료 교환, 전문적 자문 제공; (2)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 전문자료 발간·배포; (3)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분석, 시행 지원; (4) 이민정책·관리에 대한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 및 국제회의 개최·지원; (5) 국내외 이민법에 대한 이민정책 실무자·전문가 교육

(2) 중복 여부: 이민 서비스 및 정보 관련 공공기관 없음

- 이민·외국인정책에 관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 중에서 주요 역할과 기능이 외국인 정보체계의 구축·관리·운영, 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종합적 이민자 유입 계획 수립, 이민자 유입의 파급효과의 분석·평가, 이민자 증가에 따른 부

작용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이민 정보의 정부기관 공동 활용인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은 없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함;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상담, 통번역, 자녀교육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
- 고용센터: 외국인에 대한 취업지원, 직업진로지도, 직업능력개발, 기업지원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인적자원개발 촉진에 기여함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지방자치단체), 복지지원팀(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가족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원회), 제대군인지원센터(국가보훈처)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고용, 복지, 서민금융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함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문화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학교편입학 상담, 기초학습지원 등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 모두를 위한 이중언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함

2) 법적 타당성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통한 설립 근거 마련

- 단기적으로,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설립 근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외국인처우법)의 일부 조항으로서 마련되는 방안이 있음
 - 「외국인처우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한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외국인처우법」의 일부 조항에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설립목적, 설립형태, 수행업무, 비용출연·지원, 준용규정, 설립·운영근거, 임직원의 신분, 비밀누설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민정보서비스원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음
- (국내 유사 사례 1)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의 일부 조항으로서 제시되어 있음
 - 「사회보장급여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회보장급여법」 제29조(사회보장정보원)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목적, 설립형태, 수행업무, 비용출연·지원, 준용규정, 설립·운영근거, 임직원의 신분, 비밀누설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국내 유사 사례 2)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의 일부 조항으로서 제시되어 있음
 - 「고용정책 기본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목적, 설립형태, 수행업무, 비용출연·지원, 준용규정, 자료의 제공 요청, 설립·운영근거, 임직원의 신분, 비밀누설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민정보서비스원 설립의 법적 근거는 아래 예시와 같이 「외국인처우법」의 일부 조항으로서 마련되는 방안이 있음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u>제9조의2(이민정보서비스원) ① 법무부로부터 이관받는 이민·외국인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이민·외국인 정보 분석을 통해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이민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외 우수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을 포함하는 외국인 관련 정책의 지원을 위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민정보서비스원(이하 “이민정보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p> <p><u>② 이민정보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하고,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③ 이민정보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법무부로부터 이관받는 이민·외국인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관리</u> <u>2. 이민·외국인 정보 분석을 통한 정책의 개발 지원</u> <u>3. 국외 우수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을 포함하는 외국인 관련 정책의 지원을 위한 대민 서비스</u> <u>4.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u> <u>5. 그 밖에 출입국·외국인 관련 정책의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u>

- ④ 정부는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수익사업금으로 충당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제공받은 자료를 제3항의 업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⑧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⑨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⑩ 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이민정보서비스원법(가칭)」을 통한 설립 근거 마련

- 장기적으로,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설립 근거는 「이민정보서비스원법(가칭)」을 통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마련되는 방안이 있음
 - 「이민정보서비스원법(가칭)」의 목적은 외국인 정보체계의 구축·관리·운영, 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종합적 이민자 유입 계획 수립, 이민자 유입의 파급효과의 분석·평가, 이민자 증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이민정보의 정부기관 공동 활용, 국제협력 활성화, 이민 전문인력 양성 및 업무 종사자 교육 등임
 - 「이민정보서비스원법(가칭)」은 이민정보서비스원법의 법인격, 설립방식, 정관 포함 사항, 수행사업, 임원의 구성, 임원의 직무, 임원의 결격 사유, 이사회 구성, 직원의 임면, 출연금 지급 방식,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잉여금의 처리, 자료의 제공 요청, 검사 및 시정 요구, 비밀 유지의 의무, 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별칙시 공무원 신분의 적용, 「민법」의 준용, 범칙금,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는 방안이 있음
- (국내 유사 사례 1)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 근거는 「한국재정정보원법」을 통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한국재정정보원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한국재정정보원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의 법인격, 설립방식,

정관 포함 사항, 수행사업, 임원의 구성, 임원의 직무, 임원의 결격 사유, 이사회 구성, 직원의 임면, 출연금 지급 방식,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잉여금의 처리, 자료의 제공 요청, 검사 및 시정 요구, 비밀 유지의 의무, 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별칙시 공무원 신분의 적용, 「민법」의 준용, 범칙금, 과태료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국내 유사 사례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설립 근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을 통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조사·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정의, 법인격, 설립방식, 정관 포함 사항, 수행사업, 임원의 구성, 임원의 직무, 임원의 결격 사유, 이사회의 구성, 원장의 업무 및 임명, 지역교육정보센터의 설치, 직원의 임면, 운영재원 조달 방식, 정보서비스 이용료·수수료의 징수,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인력의 파견 요청, 자료의 제공 요청, 검사 및 시정 요구, 비밀 엄수의 의무,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별칙시 공무원 신분의 적용, 「민법」의 준용, 범칙금, 과태료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이민국정보서비스원 설립의 법적 근거는 아래 예시와 같이 「이민국정보서비스원법(가칭)」으로서 마련되는 방안이 있음

이민정보서비스원법

[시행 0000. 00. 00] [법률 제00000호, 0000. 00. 00, 제정]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00-0000-0000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민정보서비스원을 설립하여 법무부로부터 이관받는 이민·외국인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이민·외국인 정보 분석을 통해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이민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외 우수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을 포함하는 이민자·외국인 관련 정책의 지원을 위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공감 아래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이민정보서비스원은 법인(法人)으로 한다.

제3조(설립)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정관) ①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②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① 이민정보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무부로부터 이관받는 이민·외국인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관리
2. 이민·외국인 정보 분석을 통한 정책의 개발 지원
3. 국외 우수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을 포함하는 이민자·외국인 관련 정책의 지원을 위한 대민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이민정보서비스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

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임원) ① 이민정보서비스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 및 상임이사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이민정보서비스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이민정보서비스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이민정보서비스원의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9조(이사회) ① 이민정보서비스원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1조(출연금) ① 법무부장관은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이민정보서비스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민정보서비스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잉여금의 처리) 이민정보서비스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填)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移越)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이민정보서비스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민정보서비스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이민정보서비스원이 아닌 자는 이민정보서비스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민법」의 준용) 이민정보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이민정보서비스원이 아니면서 이민정보서비스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00000호, 0000. 00. 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민정보서비스원의 설립 준비)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민정보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민정보서비스원 설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준비위원회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완료한 준비위원회는 그 사무와 재산을 제8항에 따라 임명된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준비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나면 해산하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⑦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설립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⑧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임원은 제6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준비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12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무부장관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과 계약한 업무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에 이민정보서비스원이 계약한 것으로 본다.

3) 정책적 타당성: 국가정책 부합성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의 비전 및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역할과 기능을 갖추고 있음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은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다음과 같은 5개의 정책목표를 제시함: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5)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그림 16]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

정책 목표	중점 과제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3.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4.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2.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5.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2.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3.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 첫째,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우수 외국인재들에게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시장수요 분야와 이 분야에서 근무하기 위한 자격요건, 경력조건, 그리고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우수 외국인재 유치에 기여하고, 이는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의 실현에 기여함
- 둘째,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전자민원·생활정보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 정보와 연계를 통해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들 모두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행정서비스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
- 셋째,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시 취업여부, 취업분야, 임금정보에 대한 DB와 국내 거주 외국인 일자리에 관한 실태조사 관리를 통해 이민자 취업과 국내 일자리 창출과의 충돌 문제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국내 일자리 조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
- 넷째,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자격 변경, 근무지 변경, 임금·업종 변동 정보 구축과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인들이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문제와 국내 고용주들의 인권침해 실태 등을 점검함으로써 구체적인 인권보호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이는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
- 다섯째,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이민·외국인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업들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중앙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통합서비스 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동안의 외국인 정책 관련 분야별·부처별·기능별 등 여러 측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거실적, 현황, 예측 등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분석, 정책연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운영을 수행하고, 이는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의 실현에 기여함

II

이민정보서비스원 기능 및 구성

1. 개요
2. 이민정책의 의의와 정책지향
3. 한국의 이민정책 추진현황과 문제점
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현황
5. 이민정책 관련 기능 수행 기관
6. 이민서비스 제공사례
7. 유사기관 현황
8.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
9. 소결

1. 개요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정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통계·연구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이민행정 정책대상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기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정책 관련 정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의 이민행정서비스를 정보기반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짐
- 법무부에서 기존에 관리중인 사증발급, 출입국, 체류허가 등 관련 기록물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와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기존 각 부처에서 생산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통계도 통합적으로 관리함
- 또한, 이민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민 정책지향도 달라지고, 이민행정서비스도 이에 맞추어 변화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함
- 본 절에서는 이중 외국인정책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수립 기반을 구축하며, 이민행정서비스를 정보기반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을 이민정보서비스원의 기능으로 봄

- 이에 법무부를 비롯한 다양한 중앙행정기관의 이민정책현황과 서비스 집행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임무와 이민정책·서비스 관련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재)한국이민재단 및 IOM이민정책연구원의 임무를 살펴봄. 또한, 정책영역은 다르지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재정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조직 현황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를 거쳐 조직구성(안)을 제시함

2. 이민정책의 의의와 정책지향

1) 이민정책의 의의

- 한국정부는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을 외국인정책으로 명명함 (법무부, 2018)
-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민’이라는 용어에 대해 국민이 ‘해외 이민’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민정책’ 대신 「외국인정책」으로 호칭하기로 정부 내에서 합의하여 사용

○ 이민정책을 협의로 해석하면 “외국인의 출입국 통제” 분야만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내국인의 출입국심사와 외국인의 입국, 체류, 등록, 출국, 국적, 난민, 사회통합 등에 관한 정책”을 이민정책이라고 봄. 특히, 이민정책을 넓게 해석할 경우에는 “외국인 및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 전 분야를 포함함 (우기봉, 2011)

□ UN 인구국은 이민정책의 종류를 ① 이입에 대한 입장, ② 이입 정책, ③ 영구 정착 정책, ④ 고숙련 노동자 정책, ⑤ 단기취업 노동자 정책, ⑥ 가족재결합 정책, ⑦ 비국민 통합 정책, ⑧ 귀화 정책, ⑨ 이민자 출신국 귀환촉진 프로그램, ⑩ 불법이민에 대한 우려 수준, ⑪ 이출에 대한 입장, ⑫ 이출정책, ⑬ 복수국적 허용, ⑭ 재외국민 귀국 장려 정책, ⑮ 재외동포관련 특별 정부조직, ⑯ 재외동포 투자 유치 정책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함 (United Nations, 2013; 설동훈, 2016)

2) 이민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지향

[그림 17] 이민정책지향의 변화



□ 한편, 법무부는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10년간 정책과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그림 15]과 같음 (법무부, 2018)

-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외국인을 유입하고, 외국인이 자립·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 사회통합 체계와 체류, 영주, 국적의 연계를 강화하여 재한 외국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유도
- 유학생의 학습 및 적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연수 및 유학을 취업과 창업으로 연계하여 재한외국인의 성장을 촉진
- 취약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보호방안 강구 등 종합적 인권증진 방안을 마련
- 중앙·지자체 협의체 구성, 컨설팅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인프라 강화
- 증가하는 이민자의 현황 및 경제·사회적 영향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 재한외국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계·연구 기반 구축 등

[그림 18] 이민행정의 정책수요, 정책목표, 정책대상

정책수요	정책목표	정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유입 • 사회통합 • 저숙련인력 유입 • 고급전문인력 확보 • 사회갈등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국가 경제성장 기여) • 사회통합(사회문제 예방) • 인권(이주자의 인권 증진) • 사회안전(국경관리, 체류관리) • 국제사회와 공동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다문화가족) • 단순기능인력 • 고급전문인력 • 외국국적동포 • 유학생 • 난민 • 중도입국자녀

□ 이민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수요, 정책목표, 정책집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허준영, 2017에서 재정리)

○ 먼저, 이민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수요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외국인 유입 필요, 외국인 체류 및 정착추세 다변화로

인한 사회통합 필요,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저숙련 인력 유입 필요, 기술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고급 전문인력 확보 필요, 난민 등 대상 반이민정서 확산에 대응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갈등해소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이에 따르는 정책목표는 경제성장 기여, 사회문제 예방을 통한 사회통합, 이주자의 인권 증진, 국경·체류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 등이 있음
- 이민행정의 정책대상으로는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저숙련인력, 고급전문인력,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난민, 중도입국자녀 등이 있음

3. 한국의 이민정책 추진현황과 문제점

1) 이민정책 추진현황

- 세계 각국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이라는 보편 개념 대신에 ‘외국인정책(법무부)’, ‘외국인주민정책(행정안전부)’, ‘외국인력정책(고용노동부)’, ‘다문화가족정책(여성가족부)’, ‘다문화교육정책(교육부)’, ‘다문화장병정책(국방부)’ 등 개별적이고 특수한 개념을 사용하는 등 한국의 이민정책은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특성을 갖고 있음(한경구 외 2012; 한승준 외 2009)
-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이민자의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며 재한 외국인 전체를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음. 출입국기획 및 심사, 체류관리에서부터

이민자의 사회통합 및 인권조사 등 이민자에 관련해 가장 광범위한 행정기능을 보이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청소년 활동 진흥, 다문화가족정책, 다문화가족지원, 복지지원 등을 주요 기능으로 가지고 있음. 부처 내 다문화가족정책과와 다문화가족지원과의 2개 과가 모두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이민자 중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업무의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문화가족정책기능은 대부분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수행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도입, 관리 등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외국인 도입에 수반되는 국가 간 협력과 결혼이민자의 고용 촉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지방조직인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국내 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이민자 관련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표 4] 주요 중앙행정기관별 주요 이민정책

중앙행정기관	정책영역	정책대상	주요 이민정책
고용노동부	고용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직장적응/사회적응 지원 • 기업의 외국인력 도입체계 관리 • 결혼이민자취업지원 • 이민자직업교육/훈련지원
국방부	국방	다문화장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구성원, 즉 다문화장병을 위한 병영 환경 조성
국토교통부	기반시설	입국 외국인, 외국인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항만 출입국관리 시설 개선 • 건설업외국인노동자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력	해외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외국인 과학기술자 유치 • 외국인대상정보/통신서비스제공
교육부	교육	다문화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학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교육

중앙행정기관	정책영역	정책 대상	주요 이민정책
	인적자원개발	외국인유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우수외국인유학생유치기반조성 외국인유학생 관리 및 활용강화기반확충
농림축산식품부	인력, 인문, 농업, 교육, 훈련	농촌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결혼이민자와 가족 지원 이주여성농업인맞춤형영농교육 농촌외국인노동자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체육, 예술, 관광	구민, 외국인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과 이민자의 쌍방향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확대 국립국어원을 통한 한국어교육 방향 설정
법무부	출입국, 국적, 이민	제한외국인, 국적취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정책 총괄 출입국관련업무, 외국인체류관리, 심사, 강제퇴거 이민자사회통합정책 난민업무 국적업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노동자/다문화가족 복지 증진, 사회보험, 공공부조제도 운용 외국인/다문화가족아동보육정책 이민자에게 건강정보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인력, 투자	해외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외국인투자유치정책
여성가족부	성평등, 여성인권	다문화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등 다문화가족 정책 총괄 이민배경아동/청소년지원 국제결혼중개관련신상정보제공, 피해자보호
외교부	외교	입국·귀환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공관장이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한국 입국 희망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 재외동포관련업무(재외동포정책위원회운영) 다문화가족의 결혼/이혼으로인한 문제해결 방안 모색
중소벤처기업부	인력, 투자	해외전문인력, 외국인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및 채용 지원, 외국인 창업 지원 중소기업외국인노동자고용지원 외국인투자유치정책
해양수산부	인력	어업 외국인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 외국인노동자 관리 어업외국인노동자인권보장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외국인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 지원 지역사회주민으로서의 외국인주민정착지원 외국인범죄및외국인밀집거주지역생활환경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통신	제한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경찰청	치안	제한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범죄 관리 및 치안 활동 강화 운전면허학과 교육 등 안전한 정착지원
해양경찰청	치안	입국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밀입국 단속, 국경관리

□ 우수인재 유치, 이민자와 2세의 사회통합, 이주배경 가족 지원, 문화다양성 제고, 재외동포 교류지원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이민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하고 있음(법무부, 2018)

-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부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간사),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경찰청

[그림 19]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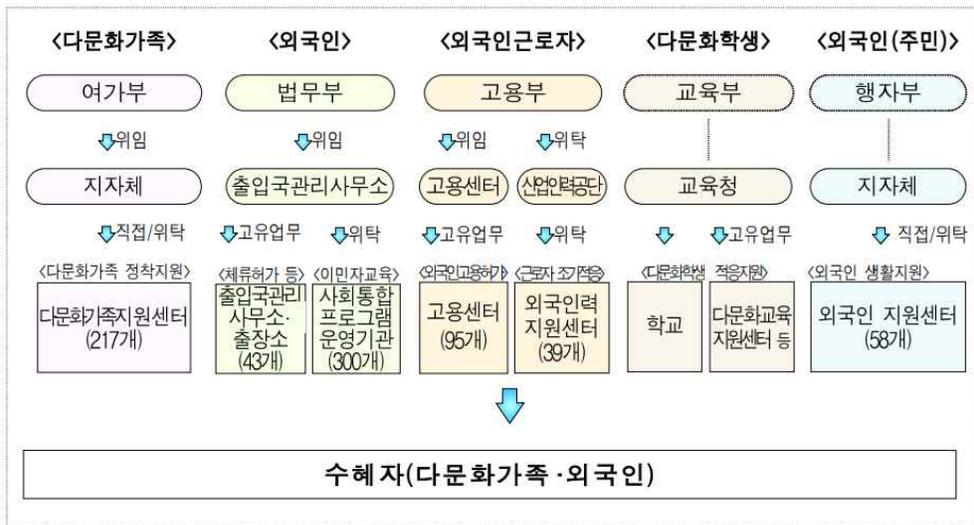
출처: 법무부(2018)

2) 문제점

□ 이민정책은 위와 같이 관련분야가 많은 특성상 정책 유형 및 정책 대상별로 소관 부처가 다양함

- 특히, 이민정책 서비스의 수혜자인 이주배경 가족, 외국인 근로자, 이주배경 학생, 외국인 주민 등에 따라 서비스가 전달되는 체계가 다양함
- 정책대상별로 전달체계가 다양함에 따라 서비스 집행 기관에 따라 연계가 부족하고, 관련 정보의 공유가 미흡한 문제점이 발생함
- 이민 환경 변화에 따라 중요한 정책대상자로 부각이 됨에도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경우도 발생함(예: 유학생, 고숙련인력)

[그림 20] 다문화·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출처: 행정안전부(2016)

□ 한국의 외국인○○정책·다문화○○정책은 단시간에 큰 성과를 거두었음. 그렇지만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을 입안하여 시행하는 바람에 정책의 중복·비효율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정책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한국 사회 이민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서 ‘조직 간 칸막이 현상(sectionalism in organizations)’ 내지 ‘조직 사일로 효과(organizational silos effects)’의 문제가 발생한 것임 (Selznick 1949; Weber 1968; Stone 2004; Aaker 2008; Froy 외 2010; 설동훈, 2017에서 재인용)

- 예컨대, 이민자 자녀, 또는 이민 배경 아동·청소년은 이민정책의 주요대상임. 그들과 관련된 부처는 법무부(외국인 체류관리), 보건복지부(아동 보육),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 청소년), 교육부(다문화학생), 고용노동부(일하는 청소년) 등 여럿인데, 정부는 각 세 단위 연령별 외국인 아동 및 청소년 수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음.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는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등 5세 단위로 등록외국인과 단기체류자격외국인 수가 제시되어 있을 뿐임(설동훈 2017, 53)

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현황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임무
 -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 출입심사, 출입국규제
 - 외국인의 사증·체류관리 정책 및 체류허가, 사증면제협정, 사증발급 심사
 - 외국인 동향조사 및 출입국사범 심사,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 출입국·외국인정책행정 정보화,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관리 및 분석
 - 소관 법령 제·개정, 외국인정책위원회 운영,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 귀화·국적상실 및 관련 정책·제도 개선
 -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정책
 - 난민정책 총괄, 난민인정심사, 재정착난민 수용 및 정착지원

□ 조직현황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개의 정책단, 9개 과로 구성
- 소속기관은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24개 출장소, 2개 외국인보호소 및 1개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로 구성

[그림 2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직



□ 인력현황

[표 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직별 인력현황

(2018년 기준)

합 계	본 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2,416명	112	2,081	215	8

[표 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급별 인력현황

(2018년 기준)

합 계	고위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416명	6	7	42	133	435	662	647	526

□ 업무분류 체계 및 이민정보과 업무내용

○ 이민행정 업무분류는 사증, 심사, 체류, 조사, 사범, 보호, 국적, 난민, 사회통합 등으로 구성

○ 이민정보과 업무내용

-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개선
- 생체인식기술 등 국내외 첨단기술을 응용한 출입국·체류심사제도 연구·개선
- 출입국자·체류외국인·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및 분석
- 외국인 출입국, 조사, 보호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분석
- 여권·사증 등 문서의 위조·변조 감식 및 분석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재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

[표 7] 직제상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민행정 기능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출입국·외국인정책 (직제§13 ③)	출입국기획 (시행규칙§9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제도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공무원의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지도·감독 •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 출입국·외국인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행사 개최와 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본부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출입국심사 (시행규칙§9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 입출항선박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규제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련 대테러 및 경호 안전 대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해상밀입국등 불법입국의 방지에 관한 사항 • 국제행사의 안전관리등 출입국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사례의 수집·교환·관리 • 불법체류 외국인 송환 협정등 출입국·외국인 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개정협상의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 수한미군지위협정(SOFA)중 출입국 분야에 관한사항 • 국의 주재관 업무연락 및 정기보고·평가에 관한 사항 • 주한외국공관원과의외국인정책관련업무협조
	체류관리 (시행규칙§9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체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사증 및 사증 발급인정서의 발급 심사에 관한 사항 • 사증 면제협정 등에 관한 사항 • 산업체에서의 외국인 기술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등 각종 체류 허가에 관한 사항 •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재입국 허가에 관한 사항 • 투자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 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전자비자센터 업무의 개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이민조사 (시행규칙§9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 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고발과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 동향조사 및 정·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활동 범위의 제한 또는 준수사항의 결정과 활동의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 외국인 보호 및 보호 외국인의 강제퇴거등에 관한사항 • 외국인 보호소 및 보호실의 경비에 관한 사항
	이민정보화 (시행규칙§9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 및 국적통합관리시스템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개선 • 생체인식기술등 국내외 첨단기술을 응용한 출입국·체류심사제도의 연구·개선 • 출입국가·체류외국인·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작성 및 분석 • 외국인의 출입국, 조사, 보호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분석 • 여권·사증 등 문서의 위조·변조 감식 및 분석기법의 개선에 관한사항 •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 •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등 제증명의 발급에 관한사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p>외국인정책 수립·시행 (시행규칙§9⑧)</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 외국인정책의 총괄추진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사무처리 • 외국인 정책추진 관련 부처간 정보제공 등에 관한사항의 총괄 • 외국인정책평가기법의 개발 • 외국인정책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의 점검·관리 • 외국인정책 관련자료의 종합분석·평가
	<p>국적관리 (시행규칙§9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에 관한 사항 • 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 허가 및 미성년 자녀 수반 취득에 관한 사항 • 국적회복허가에 관한 사항 •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미포기시 국적상실과 국적 상실자의 국적재취득에 관한 사항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이탈 신고, 국적선택명령 및 국적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 복수국적자 발견통보등 복수국적자의 관리에 관한사항 • 외국국적취득자의 국적보유 신고 및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국적판정에 관한 사항 •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국적보유판정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국적업무에 관한 사항
	<p>이민통합 (시행규칙§9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의 총괄 • 재한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다문화사회전문가양성, 이민정책연구·개발 등을 위한 다문화 사회통합 거점대학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세계인의 날 관련행사, 다문화교육, 홍보등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 외국인지원 관련 비영리법인허가, 관리·감독, 취소에 관한 사항 • 재한 외국인 또는 그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사회통합프로그램(온라인교육을포함)의 기획,운영등에 관한 사항 • 사회통합교육기관지정, 관리 및 감독등에 관한 사항 • 이민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제결혼예정자에 대한 사전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거주 및 영주를 포함한 사증·체류 관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p>난민관리 (시행규칙§9⑪)</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 •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난민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 • 재정착희망 난민의 수용에 관한 사항 • 난민인정자들의 처우에 관한 사항 •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 유엔난민기구(UNHCR)등 국제기구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난민 업무에 관한 사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인권조사 (직제§11.2⑤, 시행규칙§7.2 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사·교정·보호·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 침해 예방, 제도 개선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출입국관리, 외국인 보호, 외국인 지원 (직제§48)	출입국 관리사무소행 정 (직제§48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 중지명령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재외동포거소 신고등에 관한 사항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외국인보호~보호자의경비및보호) 국적 취득의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난민 인정 결정 및 난민처우 등에 관한 사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 자격중 거주(F-2), 영주(F-5)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등에 관한 사항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외국인 보호소행정 (직제§48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 심사 및 조사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보호소 내의 위생관리
	출입국 외국인 지원센터 행정 (직제§48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입·퇴소자 관리 입소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입소자 복지 및 의료지원 등

5. 이민정책 관련 기능 수행 기관

1) (재)한국이민재단

□ 일반 현황

-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2004년 출입국관리협회 → 2009년 한국이민정책발전재단 → 2010년 한국이민재단으로 변경
-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수탁기관(2018)' 지정, 2017년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조기적응지원단 및 지원센터) 재지정, 2017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운영기관' 재지정, 2014년 결혼이민(F-6)사증관련 한국어 교육기관 지정 등

□ 사업 현황

- 온라인 화상 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운영기관' 으로 지정되어 전국 단위의 온라인 화상교육을 운영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법무부로부터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조기적응지원단 및 지원센터)으로 지정되어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외국국적동포대상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
- 해외 한국어 교육센터: 2014년 8월 베트남 호치민시 여성연맹과 MOU를 체결하여 호치민시 여성연맹 교육장에 한국이민재단 지부 및 교육원을 설치하고 한국어 초급과정을 운영
- 외국인 육아도우미 교육: 2013년 6월부터 외국인 육아도우미 전문 교육 과정을 실시

- 전문인력 양성교육: 1) 법무부로부터 구술시험관 양성교육을 위탁받아 전국단위의 구술시험관 양성교육을 실시, 2)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위탁받아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 3) 이민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미래의 이민행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민(출입국)행정 실무 아카데미를 실시

□ 조직 현황

[그림 22] (재)한국이민재단 조직현황



2) IOM이민정책연구원

□ 일반 현황

- 2009년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IOM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

○ 2015년 기타공공기관 지정, 2019년 공공기관 지정해제

□ 설립목적 및 기능

[그림 23] IOM이민정책연구원 설립목적 및 기능

협정 제 1조	협정 제 2조	정관 제 2조
이주민 및 이주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 이주정책 및 국가들의 법률에 관한 이주 관련 조사, 연구, 자문 및 정보교환	·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연구
정책입안자와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로 국가 이주정책개발에 기여	·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 국내외 이주법 및 정책관련 전문가 훈련	· 이민정책전문가 양성
국제이주법, 이주관리 및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국가들의 역량향상	· 이주정책 및 법률 관련 국제 교류, 협력 프로그램 및 국제회의 주관	· 국제교류 및 협력
이주와 개발, 환경, 안보 등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출판 및 발간	· 이주정책 관련 학회 및 연구 지원 활동 · 학술자료, 정기간행물, 보고서 발간 · 보급	· 국내외 이민정책 이해증진

□ 주요 활동

[그림 24] IOM이민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 연구사업

- 이민법·행정 : 체류관리, 비자, 국경보안 등 이민법, 행정, 제도 연구
- 이민경제 : 노동, 투자이민, 도입규모 등 경제적 효과 연구
- 사회통합 : 이민자와 내국인 사회갈등 분석 및 사회통합 방안 연구
- 국제이민협력 : 국제이주현상과 관련된 국제관계 및 협력에 관한 연구
- 이민동향분석 : 국내외 이민정책과 이민통계 등 현황 분석
- 인권·난민 : 이민자의 인권 및 국내외 난민 제도 및 현황 연구
- 이민교육·훈련 : 이민 및 이주민, 공무원 등 관련자 교육과 훈련 사업 수행

○ 교육협력사업

- 교육사업: 이민정책에 대한 국내·외 이해증진 및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음. 국내 이주 및 다문화 관련 정책 입안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협력사업: 국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주와 관련된 학술, 전문인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및 해외 기구와의 협력활동을 하며,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관련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음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 법무부로부터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1조기적응지원단)으로 지정되어 외국인유학생, 밀집지역 외국인, 예술·홍행 체

류자격 외국인 대상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함.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임

□ 조직

[그림 25] IOM이민정책연구원 조직



6. 이민서비스 제공사례

1) 독일: Make It In Germany

- Make it in Germany is the German government's information portal for qualified professionals from around the world.
- FOMR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은 협력기관으로 참여. 운영에 대한 책임은 FMEAE (Federal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에서 담당
- Jobs, Study & Training, Visa, Living in Germany 등 4개 영역에서 이민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26] Jobs

<p><u>Professions in demand</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Nursing professionals• Physicians• Engineers• Scientists & IT specialists	<p><u>Recognition</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Foreign professional qualifications• Recognition process• Foreign academic qualifications	<p><u>Setting up a busines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reasons• Visa• Professional requirements• Advisory services• Types of new business• Business plan• Financing & funding• Start your business	<p><u>Research</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search location Germany• Career in research• 5 steps for doing research
<p><u>Looking for a job</u></p>	<p><u>Work contract</u></p>		<p><u>Business etiquette</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First impression• Dresscode• Workplace manners• Business negotiations & business meals
<p><u>Job listings</u></p>	<p><u>Social security</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German social security• Pension entitlements		
<p><u>Applying for a job</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pplication• Interview	<p><u>Taxe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German income tax• Tax relief		

[그림 27] Study & Training

<p><u>Study</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reasons• 5 steps• Opportunities after your graduation• 3 tips from a student• Interview with an International Office	<p><u>Training</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reasons• What is a vocational training?• Do I qualify for a vocational training?• How do I find a vocational training?• 5 training profiles at a glance• Prospects after your vocational training	<p><u>Further training</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fferent forms of further training• Further training step by step	<p><u>German schools abroad</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German schools abroad• Schools offering the DSD language diploma• FIT schools• Off to Germany with a school-leaving certificate• Off to Germany with the DSD language diploma• Scholarships
--	---	--	--

[그림 28] Visa

Quick-Check

Who needs a visa?

Kinds of visa

- Work visa
- Visa for jobseekers
- Visa for studying
- Visa for training
- Visa for an internship
- Visa for research
- Visa for self-employment
- Visa for the recognition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pplying for a visa

- Entry visa process
- Visa application forms

Local contacts

- World map
- Contacts in Germany
- German states

Living permanently in Germany

- Settlement permit
- Naturalisation

[그림 29] Living in Germany

Learning German

- Do I need to know German?
- Language classes
- Duration & cost
- Language centres
- Other learning opportunities
- German online
- Experiences of a German teacher
- Experiences of language students

Integration

- Integration courses
- Migration advisory services

Family reunification

- Spouses joining EU citizens
- Spouses joining citizens of non-EU countries
- Bringing your children to join you in Germany
- Parental leave
- Parental benefit (Eiterngeid)
- Child care
- Germany's school system

Housing

- Looking for housing
- Moving
- Settling in

Healthcare

- Health insurance
- Visit to the doctor
- Hospital stay

Insurance

- Private liability insurance
- Motor vehicle insurance
- Further insurances
- Taking out insurance policies
- Insurance terms

Money & shopping

- Account opening
- Shopping

Mobility

- Car
- Bus, train & bicycle

Active citizenship

- Active citizenship in Germany
- Active citizenship for your home country

Back to Germany

- Social security
- Unemployment

Discover Germany

- Politics & EU
- Economy
- Demography
- Qualified professionals
- Immigration
- Employment & earnings
- Education
- German society
- Travel destination

□ 평가

- 고숙련 전문가 이민, 고등교육 유학생 유치 관련 정보 및 서비스,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생활관련 지원의 '서비스'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음

2) 캐나다: IRCC Departmental Plan

- 캐나다 이민행정이 직면한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4가지 전

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촉진하는 11개 프로그램을 제시함

각 전략과 세부프로그램은 정책대상자에 대한 이민행정서비스와 연결

4개 전략

- “캐나다 경제를 강화하는 영구 및 임시 거주자의 이주”
- “가족 재결합 및 난민 보호하는 인도주의적 이주”
- “통합 사회를 육성하기 위한 이민자와 시민 참여”
- “캐나다인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강, 안전 및 보안을 보호하는 이주 및 여행”

[그림 30] 캐나다 IRCC 업무계획

SO: 1 Migration of permanent and temporary residents that strengthens Canada's economy	SO: 2 Family and humanitarian migration that reunites families and offers protection to the displaced and persecuted	SO: 3 Newcomers and citizens participate in fostering an integrated society	SO: 4 Managed migration and facilitated travel that promote Canadian interests and protect the health, safety and security of Canadians	
P: 1.1 Permanent Economic Residents	P: 2.1 Family and Discretionary Immigration	P: 3.1 Newcomer Settlement and Integration	P: 4.1 Health Protection	
1.1.1 Federal Skilled Workers	2.1.1 Spouses, Partners and Children Reunification	3.1.1 Settlement	4.1.1 Health Screening	
1.1.2 Federal Skilled Trades	2.1.2 Parents and Grandparents Reunification	3.1.1.1 Language Training	4.1.2 Medical Surveillance and Notification	
1.1.3 Quebec Skilled Workers	2.1.3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and Public Policy Considerations	3.1.1.2 Community and Labour Market Integration Services	4.1.3 Interim Federal Health	
1.1.4 Provincial Nominee	P: 2.2 Refugee Protection	3.1.2 Grant to Quebec	P: 4.2 Migration Control and Security Management	
1.1.5 Caregiver		3.1.3 Immigration Loan		4.2.1 Identity Management
1.1.6 Canadian Experience Class		3.1.4 Resettlement Assistance Program		4.2.2 Eligibility and Admissibility Screening, Status and Documents
1.1.7 Federal Business Immigrants		P: 3.2 Citizenship for Newcomers and All Canadians	3.2.1 Citizenship Awareness	4.2.3 Global Assistance for Irregular Migrants
1.1.8 Quebec Business Immigrants	3.2.2 Citizenship Acquisition, Confirmation and Revocation			P: 4.3 Canadian Influence i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gration Agenda
P: 1.2 Temporary Economic Residents		2.2.1 Government-Assisted Refugees	P: 4.4 Passport	
1.2.1 International Students	2.2.2 Privately Sponsored Refugees			
1.2.2 Temporary Work Authorization	2.2.3 Blended Visa Office-Referred Refugees			
1.2.3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2.2.4 In-Canada Asylum			
	2.2.5 Pre-removal Risk Assessment			
P: 5.1 Internal Services (Supports all SOs)				

Legend
 Strategic Outcome (SO): Program (P): Sub-Program: Sub-Sub-Program:

□ 평가

- 난민지원, 사회통합, 보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데, 자국 및 자국민의 이익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이주민이 자국민의 동화되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음

3) 하이코리아 포털

□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는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이 필요한 투자, 고용, 거주, 생활편의 정보를 하나의 창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구축한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Government for Foreigner)의 대표 사이트임

□ 제공서비스

○ 포털

- 사증, 체류자격 및 입출국 절차 안내
-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문화, 관광 등 생활편의정보
- 외국인 투자 정보 및 투자 상담
- 외국인 고용허가제 안내

○ 법무부 민원

- 방문예약
- 재입국허가
- 단기체류기간 연장허가
- 장기체류기간 연장허가
-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 고용, 연수 외국인 변동신고
- 방문취업(H2)체류자격 취업개시 및 근무처 변경신고

○ 고용노동부 민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신청
- 외국인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 고용변동신고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변경) 신청
- 출국예정신고
- 외국인 구직신청

- 사업장 변경신청

○ 투자유치촉진 시스템

- 잠재 투자가 등록 및 국내 합작 파트너 조회
- 국내 합작 파트너 등록 및 잠재 투자가 조회
- 잠재투자가 및 국내 합작 파트너의 정보 매칭 및 개인화 검색 기능 부여

□ 평가

- 하이코리아는 정보의 보유 및 관리 측면에서 고도화가 필요하나, 서비스의 통합제공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음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위 하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법무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제공서비스에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 교육부의 다문화학생지원,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포함하고, 그 외 참고 국가(독일 등)의 선진 서비스를 포괄하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31] 하이코리아: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7. 유사기관 현황

1) 한국재정정보원

□ 일반현황

○ 기관설립일

- 2016년 07월 01일

○ 설립근거

- 한국재정정보원법

○ 설립목적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

○ 주무기관

- 기획재정부

□ 기능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운영 및 관리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영 및 관리
- 재정 통계의 생산, 연구 활동
- 재정시스템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 국제협력
- 재정경제 부문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에 대한 보안관제
-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

□ 주요사업

[표 8] 한국재정정보원 주요사업

단위: 백만 원

사업구분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5,581	15,770	21,963	23,60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41,500	7,705	6,419	5,606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	77,087	11,707	15,774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705	2,154	2,133	2,029
재정정보분석	-	-	705	670

□ 조직

[그림 32] 한국재정정보원 조직



□ 임직원 수

[표 8] 한국재정정보원 임직원 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1	1	1	1
		상임 현원	1	1	1	1
		비상임	0	0	0	0
	이사	상임 정원	1	1	1	1
		상임 현원	0	1	1	1
		비상임	5	5	5	5
	감사	상임 정원	0	0	0	0
		상임 현원	0	0	0	0
		비상임	1	1	1	1
	기타		0	0	0	0
상임임원 정원(A)		2	2	2	2	
정원(B)		158	158	222	228	
정규직 (일반정 규직)	현원	계	149	154	187.25	204.25
		전일제	149	154	185	202
		단시간	0	0	2.25	2.25
정규직 (무기계 약직)	정원(C)	0	0	0	0	
임직원 총계 (A+B+C)		160	160	224	230	

2) 사회보장정보원

□ 일반현황

○ 기관설립일

- 2009년 12월 07일

○ 설립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사회보장정보원)

○ 설립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지원 및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 받은 사업

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무기관
 - 보건복지부

□ 기능

-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
- 사회·보육서비스사업의 통합 관리
 - 사회·보육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회·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
 - 사회·보육서비스 제공비용의 예탁, 청구, 지급, 정산, 사후관리 및 품질관리
-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 공공·민간의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정보화 수요조사, 정보화 표준마련 지원
- 보건복지 정책개발 지원
 - 보건복지분야 각종 통계 생산·조사 분석 및 제공
 - 기초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규정책 도입영향 및 기존 정책효과 평가
- 고객지원 및 품질관리
 - 보건복지분야 대국민 포털 운영
 - 정보시스템 사용자 업무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및 교육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 조직

[그림 33] 사회보장정보원 조직



□ 주요 사업

[표 10] 사회보장정보원 주요사업

단위: 백만 원

사업구분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5,904	5,657	9,292	9,516	8,410	7,436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법정부)	2,713	2,561	2,619	1,930	1,960	1,57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 템	1,242	1,365	1,270	1,149	2,102	624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 템	4,853	4,996	4,633	4,595	4,226	3,608
보건복지포털	320	459	484	249	273	311
취약노인지원시스템	219	298	299	297	412	339
정보보호 및 기반구축	1,622	727	766	1,383	1,668	1,940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4,242	5,862	5,557	4,203	4,258	3,211
보육전자바우처	3,869	4,279	4,367	3,571	3,359	2,270
추가 수탁사업	5,644	7,031	8,753	18,892	18,945	21,330

□ 임직원 수

[표 11] 사회보장정보원 임직원 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1	1	1	1	1	
		상임 현원	1	0	1	1	1	
		비상임	0	0	0	0	0	
	이사	상임 정원	2	2	2	2	2	
		상임 현원	2	2	2	2	2	
		비상임	10	10	10	10	10	
	감사	상임 정원	0	0	0	0	0	
		상임 현원	0	0	0	0	0	
		비상임	1	1	1	1	1	
	상임임원 정원(A)		3	3	3	3	3	
정원(B)		342	352	423	434	444	457	
정규직 (일반 정규직)	현원	계	335.3	348.33	420.88	415	414.25	413.63
		전일제	333	344	416	409	409	405
		단시간	2.3	4.33	4.88	6	5.25	8.63
정원(C)		152	152	274	274	274	274	
정규직 (무기 계약직)	현원	계	119	195	151.5	206.5	207.75	231.5
		전일제	119	189	145	199	201	227
		단시간	0	6	6.5	7.5	6.75	4.5
임직원 총계 (A+B+C)		497	507	700	711	721	734	

3) 한국고용정보원

□ 일반현황

○ 기관설립일

- 2006년 03월 31일

○ 설립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 설립목적

-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고용관련통계의 작성·보급 등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 주무기관

- 고용노동부

□ 주요 기능

- 고용정보 · 고용전산업무계획 수립
- 고용정보의 수집 · 제공 및 고용동향 분석
- 직업사전발간, 직무분석기법 연구 등 직업연구 및 보급
-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 상담에 관한 기법의 연구 · 개발 및 보급
- 인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 산업의 동향 및 전망 등이 포함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및 전망 작성
- 고용지원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고용정보 · 고용보험 · 직업훈련 · 외국인근로자 관리 정보통신망 등의 개발 및 운영 · 관리

□ 조직

[그림 34] 한국고용정보원 조직





□ 주요 사업

[표 12] 한국고용정보원 주요사업

단위: 백만 원

사업구분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국가고용정보화 개발센터 구축	-	-	-	-	-	4,117
공공고용서비스 국제협력	-	-	-	-	-	100
온라인 청년센터(청년센 터 운영)	-	-	-	-	2,425	2,786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SI 고용서비스 지원	-	-	-	-	-	5,274
직업정보제공및직 업지도	4,399	6,599	4,569	5,049	4,951	4,311
고용서비스드나더링	1,542	2,465	2,412	2,654	3,537	3,264
고용동향조사분석	2,954	2,867	4,958	4,497	4,761	4,672
중장기인력수급전 망 및 고용동향분석	1,566	1,991	-	-	-	-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22,646	26,082	28,607	41,490	39,880	35,592
고용보험전산망 관리	7,733	6,285	7,950	-	-	-
한국고용정보원지 방이전	8,471	-	-	-	-	-

□ 임직원 수

[표 13] 한국고용정보원 임직원 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1	1	1	1	1	
		상임 현원	1	1	1	1	1	
		비상임	0	0	0	0	0	
	이사	상임 정원	0	0	0	0	0	1
		상임 현원	0	0	0	0	0	0
		비상임	8	8	8	8	8	8
	감사	상임 정원	0	0	0	0	0	0
		상임 현원	0	0	0	0	0	0
		비상임	1	1	1	1	1	1
	상임임원 정원(A)		1	1	1	1	1	2
정원(B)		222	249	282	296	343	398	
정규직 (일반 정규직)	현원	계	215.5	247	281.5	293.5	338	334
		전일제	215	245	280	292	336	332
		단시간	0.5	2	1.5	1.5	2	2
정원(C)		21	21	9	9	77	77	
정규직 (무기 계약직)	현원	계	21	18	0	9	9	77
		전일제	21	18	0	9	9	77
		단시간	0	0	0	0	0	0
'임직원 총계 (A+B+C)		244	271	292	306	421	477	

8.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

□ 법무부에서 발주하여 2018년 11월 발간된 「이민기록정보원 설립방안 및 타당성 연구」에 제시된 ‘이민기록정보원’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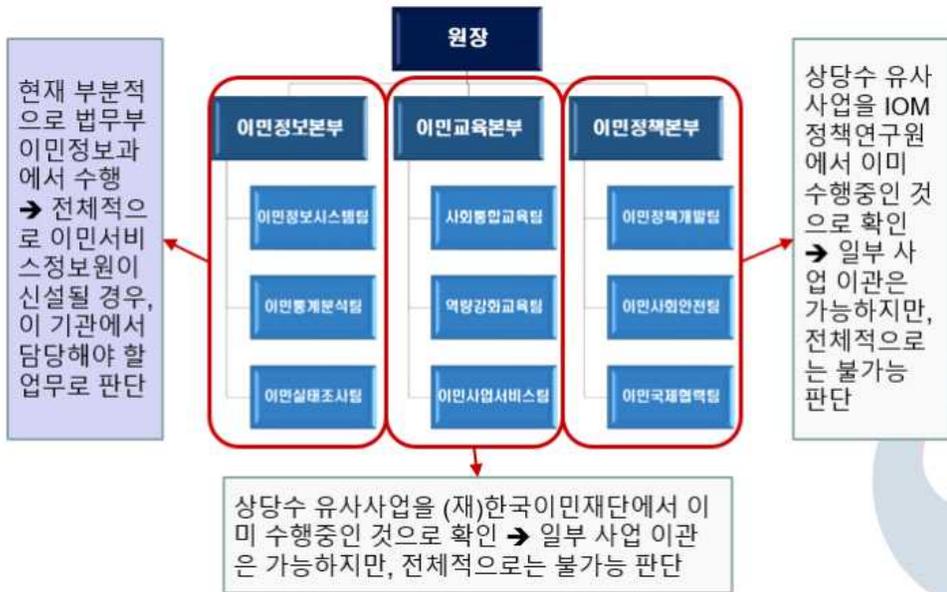
- 이민자 관련 기록물의 보관 및 관리 역할
- 이민자 관련 데이터 수집, 관리 및 활용을 통한 정책문제 해결
- 이민자 관리 중복과 예산낭비 방지를 통한 업무효율화
- 미래 이민정책의 예측 및 대응방안 제시

□ 위 연구는 이민기록정보원을 이민정보본부, 이민교육본부, 이민정책본부의 3본부 형태로 제안함

□ 평가

- 이민정보본부의 기능은 부분적으로 법무부 이민정보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민정보서비스원이 신설될 경우, 담당해야 할 업무로 보임
- 이민교육본부의 기능은 상당수 유사사업을 (재)한국이민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부사업 이관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이관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이민정책본부의 기능은 상당수 유사사업을 IOM이민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부사업 이관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이관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그림 35]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



9. 소결

1) 이민정보서비스원의 기능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정책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수립 기반을 구축하며, 이민행정서비스를 정보기반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을 기능으로 함

 - 법무부에서 기존에 관리중인 사증발급, 출입국, 체류허가 등 관련 기록물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와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기존 각 부처에서 생산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통계도 통합적으로 관리함
 - 이와 함께 이민행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타 부처 사업이지만 통합적 고려가 필요한 대민 서비스와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한 중점 서비스를 기능으로 함
 - 또한, IOM이민정책연구원, (재)한국이민재단 등 유관기관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함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기존 서비스
- 출입국 심사, 체류 연장 등 주로 출입국 체류 서비스 및 관련 정보
 - 출입국자·체류외국인·국적 등 이민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및 분석
 - 외국인 출입국, 조사, 보호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분석
 - 단, 사회통합교육 등 이민교육관련 기능은 상당수 유사사업을 (재)한국이민재단에서 수행 중으로, 일부기능은 이관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이관은 불가능함

- 또한, 이민정책개발, 이민정책국제협력 등 정책연구사업은 상당수 유사사업을 IOM이민정책연구원에서 수행 중으로, 일부 기능은 이관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이관은 불가능함
- 한편, 이민정책관련 대민서비스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비자(VISA) 서비스의 이민정보서비스원에서의 수행 여부 및 수행 수준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정리하여, 기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이민정보서비스원으로 이관이 가능한 기능과 소요 인력은 다음 [표 14]과 같음

[표 1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민행정 기능 중 이민정보서비스원 소관이 가능한 기능과 인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이민정보서비스원 소기능	이민정보서비스원 소기능에 따른 인원
출입국·외국인정책 (직제§13③)	출입국기획 (시행규칙 §9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제도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지도·감독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외국의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출입국·외국인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행사 개최와 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그밖에 본부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의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기획과는 11개의 직제와 22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1개 직제당 평균 2명의 직원이 배정되어 있음을 의미함 그러므로 이민정보서비스원으로 이관되는 1개 직제를 위해서는 2명의 직원이 필요함
	출입국심사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의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사례의 수집·교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심사과는 11개의 직제와 16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1개 직제당 평균 1.45명의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이민정보서비스원 소기능	이민정보서비스원 소기능에 따른 인원
	§9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출항선박등의검색및상륙허가에관한사항 • 출입국규제에관한사항 • 출입국관련대테러및경호안전대책의지원에관한사항 • 해상밀입국등불법입국의방지에관한사항 • 국제행사의안전관리등출입국관리의지원에관한사항 • 외국의출입국·외국인정책담당기관등을통한관련외국정책사례의수집·교환·관리 • 불법체류외국인송환협정등출입국·외국인정책관련국제협약의체결·개정협상의참가·지원에관한사항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중출입국분야에관한사항 • 국외주재업무연락및정기보고·평가에관한사항 • 주한외국공관원과의외국인정책관련업무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이 배정되어 있음을 의미함 • 그러므로 이민정보서비스원으로 이관되는 1개 직제를 위해서는 1명의 직원이 필요함
	이민조사 (시행규칙 §9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에 대한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법령위반자단속및조사에관한사항 • 고발과통고처분·과태료부과 등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동향조사및정·첩보수집에 관한 사항 • 외국인활동범위의제한또는준수사항의결정과활동의중지명령에관한사항 • 외국인보호및보호외국인의강제퇴거등에관한사항 • 외국인보호소및보호실의경비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조사과는 7개의 직제와 11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 • 이는 1개 직제당 평균 1.57명의 직원이 배정되어 있음을 의미함 • 그러므로 이민정보서비스원으로 이관되는 1개 직제를 위해서는 1명의 직원이 필요함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이민정보서비스원 소기능	이민정보서비스원 소기능에 따른 인원
		관한사항		
	이민정보화 (시행규칙 §9⑦)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및국적통합관리시스템등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개선 생체인식기술등국내외첨단기술을응용한출입국·체류심사제도의 연구·개선 출입국가·체류외국인·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작성 및 분석 외국인의출입국,조사,보호등과관련하여수집한정보의분석 여권·사증 등 문서의 위조·변조 감식 및 분석기법의 개선에 관한사항 외국인등록에관한사항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및관리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등제증명의발급에관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및국적통합관리시스템등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개선 생체인식기술등국내외첨단기술을응용한출입국·체류심사제도의 연구·개선 출입국가·체류외국인·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작성 및 분석 외국인의출입국,조사,보호등과관련하여수집한정보의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정보과는 9개의 직제와 23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1개 직제당 평균 2.55명의 직원이 배정되어 있음을 의미함 그러므로 이민정보서비스원으로 이관되는 4개 직제를 위해서는 8명(= 4개 직제 × 2명)의 직원이 필요함
	외국인정책 수립·시행 (시행규칙 §9⑧)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와의외국인정책에관한협의·조정 외국인정책의 총괄추진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사무처리 외국인정책추진관련부처간정보제공등에관한사항의총괄 외국인정책평가기법의개발 외국인정책에관한계획수립및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정책추진관련부처간정보제공등에관한사항 외국인정책관련자료의종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정책과는 8개의 직제와 14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1개 직제당 평균 1.75명의 직원이 배정되어 있음을 의미함 그러므로 이민정보서비스원으로 이관되는 2개 직제를 위해서는 2명(= 2개 직제 × 1명)의 직원이 필요함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이민정보서비스원 소기능	이민정보서비스원 소기능에 따른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실적의 점검·관리 외국인정책관련자료의 종합분석·평가 		
	이민통합 (시행규칙 §9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의 총괄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이민정책 연구·개발 등을 위한 다문화사회통합 거점대학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세계인의 날 관련 행사, 다문화교육, 홍보 등 다문화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외국인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허가, 관리·감독, 취소에 관한 사항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회통합 프로그램(온라인교육을 포함한다)의 기획,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사회통합교육기관 지정,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이민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연구,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국제결혼에 정자에 대한 사전 소양 교육에 관한 사항·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거주 및 영주권을 포함하는 중·체류 관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인의 날 관련 행사, 다문화교육, 홍보 등 다문화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사회통합 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 제외)의 기획,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연구,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통합과는 11개의 직제와 12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1개 직제당 평균 1.09명의 직원이 배정되어 있음을 의미함 그러므로 이민정보서비스원으로 이관되는 3개 직제를 위해서는 3명(= 3개 직제 × 1명)의 직원이 필요함
출입국관	출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류관리과는 14개의 직제와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이민정보서비스원 소기능	이민정보서비스원 소기능에 따른 인원
<p>리, 외국인 보호, 외국인 지원 (직제\$48)</p>	<p>관리사무 소행정 (직제\$48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등록및지문찍기 • 출입국사법의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체류자격외의활동을하는외국인에대한활동중지명령범위의제한 • 외국인의거소및활동범위의제한 • 외국인의준수사항의결정 • 재외동포거소신고등에관한사항 • 출입국관리기록의정리와보관 • 제2항제1호내지제4호에관한사항(외국인보호~보호자의경비및보호) • 국적취득의신청,국적이탈·상실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행조사 • 난민인정결정및난민처우등에관한사항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외국인의체류자격중거주(F-2), 영주(F-5)등을가진정주외국인및귀화자등의네트워크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의발급등에관한사항 • 기타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국적취득의신청,국적이탈·상실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실행조사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외국인의체류자격중거주(F-2), 영주(F-5)등을가진정주외국인및귀화자등의네트워크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 • 이는 1개 직제당 평균 1.35명의 직원이 배정되어 있음을 의미함 • 그러므로 이민정보서비스원으로 이관되는 3개 직제를 위해서는 3명(= 3개 직제 × 1명)의 직원이 필요함 <p>(위 직제의 경우 대응되는 과가 없기 때문에 체류관리과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p>

- 타 부처 사업이지만 통합적 고려가 필요한 대민 서비스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여성가족부)
 - 외국인/고용, 근로자 적응(고용노동부)
 - 다문화학생지원(교육부)
 - 외국인주민생활지원(행정안전부)
 - 우수인재/고숙련 전문인력 유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 범죄 방지(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한 중점 서비스
 - 사회통합을 위한 생활관련 지원
 - 고숙련 전문가 이민, 고등교육 유학생 유치(독일)
 - 이민자의 가족재회를 위한 서비스(캐나다, 독일, 호주)
 - 건강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캐나다, 독일)
 - 워킹홀리데이 형태의 단기체류 서비스(호주)

2) 이민정보서비스원의 구성(안)

- 정보관할 부서를 기존 법무부 이민정보과에서 출입국정보과로 변경하고, 출입국정보는 이민정보서비스원에 이관하지 않은 채, 기존대로 법무부 내에서 관할

- 그 외 실시간성(긴급성)이 낮고, 보안상 문제가 적은 이민서비스 관련 정보는 이민정보서비스원(공공기관)으로 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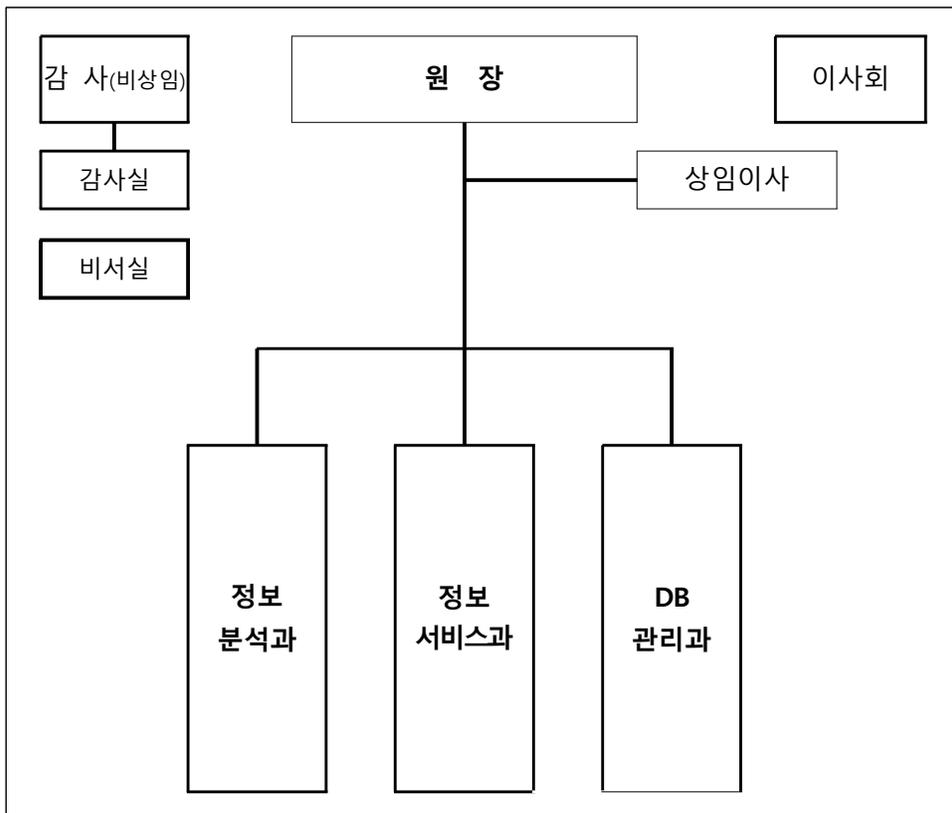
- 정보와 서비스의 분리에 따라 사례조사, 외국인/이민 정보DB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DB 구축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방향 조정이 필요

□ 기능 및 조직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정보분석과, 정보서비스과, database관리과의 3과 48인 정도의 조직으로 출범
- 비자서비스 이관시 담당부서 추가 필요
- 필요시 소규모의 운영지원과 추가 필요
- 임원2명(원장 1인, 상임이사 1인)

□ 위를 바탕으로 한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조직도(안), 정원표(안), 업무분장(안)은 다음과 같음

[표 15]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조직도



[표 16]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정원

구 분			정 원 (명)
직 군	직 렬	직 급	
총 계			48
임원 계			2
-	-	원장	1
		상임이사	1
일반직 계			44
일 반 직	일반직	1급	3
		2급	6
		3급	8
		4급	8
		5급	8
		6급	11
별정직 계			2
별 정 직	별정직	가 급	1
		나 급	1

[표 17]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업무분장

조 직	분 장 업 무
정보분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사례의 수집·교환·관리 • 외국인 동향 통계자료 분석 및 연구 • 출입국 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 통계자료 분석 및 연구 • 생체인식기술 등 국내외 첨단기술을 응용한 출입국·체류심사제도의 연구·개선 • 출입국가·체류외국인·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및 분석 • 외국인의 출입국, 조사, 보호 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통계 및 정보의 분석 • 외국인정책 추진 관련 부처 간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 분석 •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실태 통계자료 분석 및 연구 등
정보서비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Korea 통합정보서비스 (다국어지원, Data 분석) 지원 •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정보서비스 제공지원 • 세계인의 날 관련 행사, 다문화교육, 홍보 등 다문화 이해 증진 서비스 제공지원 •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 제외) 지원 •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정착지원 서비스보조 및 관련 연구 지원 •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관리 지원 • 고숙련 전문가 이민, 고등교육 유학생 유치 지원 • 이민자의 가족 재회 서비스 지원 • 건강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 사업지원 • 워킹홀리데이 형태의 단기체류 지원 등
DB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개선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정보연계 표준관리 및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 품질 개선 및 직원역량 강화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행방안 수립 지원·관리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운영 • 정보화 관련 제규정 및 표준절차 수립 및 개선
비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의 비서 업무에 관한 사항 • 원장 지시사항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감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 업무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 •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 원장이 감사 관련 지시·처리에 관한 사항 등

[표 18]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정원 및 예산(1년차)

기관명	임원		별정직		일반직 직급별 연봉					
	원장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감사	비서	1(부장)	2(차장)	3(과장)	4(대리)	5(주임)	6(사원) 대졸4년 제기준
한국재정정보원	138,644,000	110,915,000	24,000,000	65,615,000	75,530,000	66,610,000	54,410,000	47,640,000	42,350,000	38,700,000
사회보장정보원	138,644,000	110,916,000	3,600,000	55,335,000	74,080,000	63,190,000	54,550,000	45,880,000	41,290,000	33,090,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8,644,000	110,915,000	N/A	62,719,000	71,040,000	62,380,000	52,380,000	44,740,000	38,160,000	36,210,000
한국고용정보원	138,643,000	N/A	20,400,000	62,126,000	74,380,000	63,520,000	54,700,000	47,200,000	45,030,000	38,610,000
평균	138,643,750	110,915,333	22,200,000	61,448,750	73,757,500	63,925,000	54,010,000	46,365,000	41,707,500	36,652,500
인원수 (이민정보서비스원)	1	1	1	1	3	6	8	8	8	11
총평균 연봉	138643750	110915333	22200000	61448750	221272500	383550000	432080000	370920000	333660000	403177500

도출과정

1. 임원(원장 및 상임이사)의 경우 알리오에서 4개 기관의 평균 연봉을 산출
2. 별정직의 경우 알리오에서 비상임감사의 3개기관의 평균 연봉을 산출(사회보장 정보원의 경우 Outlier 성격이 강해 제외함, 비서직의 경우 사원(대졸 4년제) 기준 평균으로 연봉으로 산정)
3. 일반직 직급별 연봉의 경우 사람인 사이트에서 4개기관의 평균 연봉을 산출
4. 인원수를 고려한 총평균연봉을 산출[인원수(이민정보서비스원)*평균=총평균연봉]
5. 2, 3년치의 경우 예상소비자물가지수(CPI index)를 통계분석프로그램으로 도출하여 [예상소비자물가지수*총평균연봉]으로 산출함

[표 19]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정원 및 예산(1-3년차)

구 분			정원(명)	1년차추정예산 (단위:원)	2년차추정예산 (단위:원)	3년차추정예산 (단위:원)
직 군	직 렬	직 급				
총 계			48	2,477,867,833	2,511,170,377	2,544,317,825
임원 계			2	249,559,083	252,913,157	256,251,611
-	-	원장	1	138,643,750	140,507,122	142,361,816
		상임이사	1	110,915,333	112,406,035	113,889,795
일반직 계			44	2,144,660,000	2,173,484,230	2,202,174,222
일 반 직	일반직	1급	3	221,272,500	224,246,402	227,206,455
		2급	6	383,550,000	388,704,912	393,835,817
		3급	8	432,080,000	437,887,155	443,667,265
		4급	8	370,920,000	375,905,165	380,867,113
		5급	8	333,660,000	338,144,390	342,607,896
		6급	11	403,177,500	408,596,206	413,989,676
별정직 계			2	83,648,750	84,772,989	85,891,992
별 정 직	별정직	가 급	1	22,200,000	22,498,368	22,795,346
		나 급	1	61,448,750	62,274,621	63,096,646

- 이민정보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첨단 정보기술(예: AI, IoT) 처리 능력 및 빅데이터 분석능력을 지닌 데이터 과학 지향의 전문가들이 기존에 수행할 수 없었거나 수행하기 힘들었던 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보 분석] 예를 들어, 이민·외국인정책에 필요한 특정 자격(E-7 특정활동, E-2 회화강사 등)을 가진 외국인들의 평균 임금정보나 평균 체류기간이 짧은 시간 내에 산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세금납부액에 대한 계산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는 자료가 생산될 수 있음
- [서비스 지원] 포괄적인 데이터 기반의 대민 서비스, 신속한 업데이트를 통한 정확한 대민 서비스, 수요 맞춤형 대민 서비스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어, 고숙련 전문가 이민과 유학생 유치에 관한 서비스를 사회통합을 위한 생활에 관한 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민, 직업교육, 취직, 생활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서비스가 기획·개발될 수 있음

[그림 36] 이민정보서비스원 설립 후 예상되는 인력과 업무의 변화

		As-Is	To-Be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행정가 지향의 공무원 · 평균적인 정보기술 처리능력 및 데이터 분석능력을 지닌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과학자 지향의 공공기관 직원 · 첨단 정보기술(예: AI, IoT) 처리능력 및 빅데이터 분석능력을 지닌 인력
업무	DB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데이터의 디지털화 · DB의 개별적이고 일상적인 관리 · DB와 시스템의 연계 및 공유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의 디지털화 확대 · DB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 기관 내 및 기관 간 DB와 시스템의 연계 및 공유
	정보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관계 파악 수준의 정보분석 ·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동향 조사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하고 포괄적인 데이터 기반의 동향 조사 · 대량의 실시간 SNS 데이터 기반의 동향 조사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데이터 기반의 대민 서비스 제공 · 적시성 있는 대민 서비스 제공의 부족 · 일반 이민자 및 외국인 대상 대민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인 데이터 기반의 대민 서비스 지원 · 신속한 업데이트를 통한 정확한 대민 서비스 지원 · 수요자 맞춤형 대민 서비스 지원

III

출입국·외국인 관련 정보 DB /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1. 정보 DB의 구축
2. 법령 등 서식(기록물)에 포함된 정보 분류
3.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후 정보 DB의 변화
4.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후 정보시스템의 변화
5. 이민정보서비스원의 DB /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6. 소결 - DB 활용서비스 개선 방안

1. 정보 DB 구축

1) 정보 DB의 유형 및 구축과정

- DB의 유형은 서지DB, 사실DB, 전문DB, 멀티미디어DB로 구성됨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8)
- DB의 구축 과정은 크게 기획, 설계, 구현,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로 구성됨(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8)
- 기획 과정은 DB 구축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단계임: DB 구축을 위한 각종 항목 및 시장 분석(DB로 구축할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수요 현황과 경제성, 타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시장조사와 분석), 요구사항 분석, 데이터베이스 범위, 성격, 서비스의 정의, 마케팅 전략 수립(DB의 범위, 성격, 서비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관련된 정보 요구사항 분석), 구축된 DB를 정보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과 DB 저작권, 구축 비용, 품질관리 등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 등이 이루어짐
- 설계 과정은 개념적 모델, 논리적·물리적 구조의 설계가 실시되는 단계임: 개념적 모델의 설계(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DB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 구조를 단순화하고 추상화시켜 개념화하는 것), 논리적 구조의 설계(개념적 모델 설계를 통해 얻은 개체로서의 자료를 실제적으로 DB에 구현하기 위한 중간 단계), 물리적 구조 설계(논리적 구조 설계에 따른 자료의 레코드와 파일의 저장 구조 및 형태를 결정하고 레코드의 접근 방식 등을 선택하는 과정)가 이루어짐

- 구현 과정은 구체적으로 DB를 제작하는 단계임: DB로 구축할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의 분류·색인·초록 작성 과정을 포함한 자료의 가공, 그리고 자료의 입력을 통한 저장과 검색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설치 과정이 수행됨
- 운영 및 유지·보수 과정은 구현된 DB의 관리, 복구, 유지·보수, 평가 등의 작업이 수행되는 단계임: DB의 품질 관리와 감시(모니터링)가 필수적이며, 재해나 예기치 못한 사태 등에 대비한 DB의 복구·회복 방법 및 대책 마련, 보안 강화, 그리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DB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가 이루어짐

2. 법령 등 서식(기록물)에 포함된 정보 분류

1) 법령 등 서식(기록물)에 포함된 정보 현황

-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 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 국적과, 난민과, 이민통합과의 주요 업무 및 보유정보는 아래 [표 20]과 같음

[표 2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주요업무 및 보유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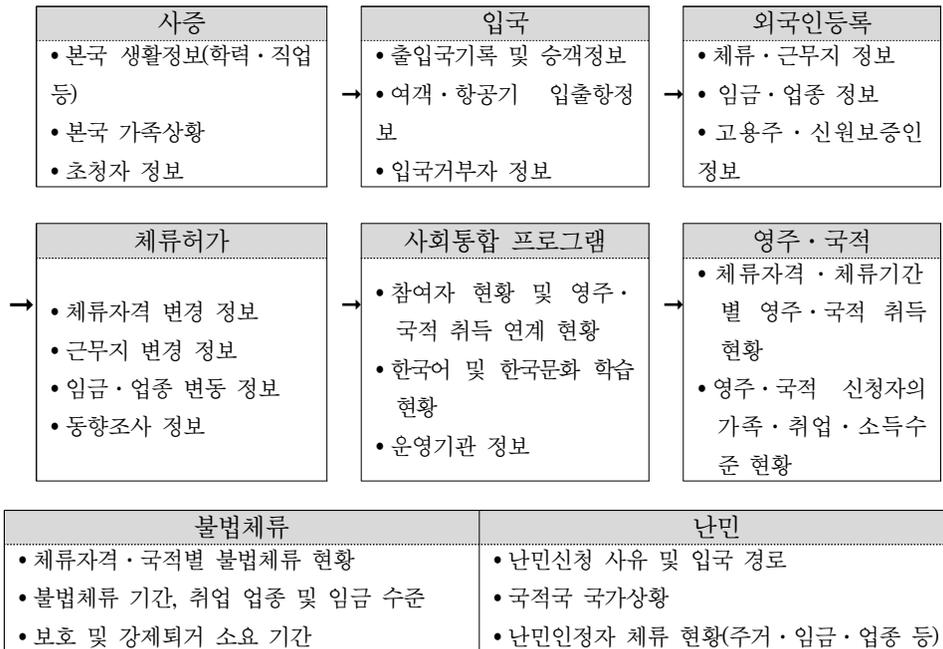
부서	주요업무	보유 정보
출입국 심사과	* 출입국심사 * 남북한왕래 * 선박심사 * 입·출국 금·정지	* 출입국 신고서 * 입출항 보고서 * 남북한 왕래자 현황
체류 관리과	* 사증 * 외국인등록 * 각종 체류허가 * 재외동포	* 사증발급 신청서 * 외국인등록 신청서 * 체류허가 신청서
이민 조사과	* 불법체류자 단속 * 출입국사범 처리 * 보호 및 강제퇴거 * 동향조사	* 심사결정서 * 보호명령서

이민 정보과	* 외국인 관련 통계 * 바이오정보 활용 * 증명발급	* APIS(승객정보) * 바이오정보(지문) * 출입국기록
국적과	* 귀화 * 복수국적	* 귀화 신청서 * 국적불행사 서약서 * 국적포기 등 신청서
난민과	* 난민인정 * 재정착난민	* 난민인정 신청서 * 재정착난민 선정 현황
이민 통합과	* 결혼이민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정보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현황

출처: 법무부(2018a)

□ 업무처리과정별(혹은 외국인의 체류 흐름별) 정보와 불법체류 및 난민 정보는 [그림 37]와 같음

[그림 37] 업무처리과정별 외국인 관련 정보



출처: 법무부(2018a)

○ 첫째, 사증 단계에서는 인적사항, 여권정보, 연락처, 혼인사항 및 가족사항, 학력, 직업, 방문정보, 초청인 정보, 방문경비,

서류 작성 시 도움인 정보 등을 기록하고 있음

○ 둘째, 입국 단계에서는 인적사항과 한국 체류사항을 기록하고 있음

[표 21] 사증 발급 신청서

조사 항목	상세 내용
인적사항	1. 여권에 기재된 영문성명 2. 한자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국적 6. 출생국가 7. 국가신분증번호 8. 이전 한국 출입국시 다른 성명 사용하였는지 여부 9. 복수 국적 여부
여권정보	1. 여권종류 2. 여권번호 3. 발급국가 4. 발급지 5. 발급일자 6. 기간만료일 7. 다른여권 소지여부
연락처	1. 본국 주소 2. 현 거주지 3. 휴대전화 4. 일반전화 5. 이메일 6. 비상시 연락처-성명, 거주국가, 전화번호, 관계
혼인사항 및 가족사항	1. 현재 혼인사항 2. 배우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국적, 거주지, 연락처 3. 자녀 유무
학력	1. 최종학력 2. 학교명 3. 학교소재지
직업	1. 직업 2. 직업 상세정보
방문정보	1. 입국목적 2. 체류예정기간 3. 입국예정일 4. 체류예정지 5. 한국 내 연락처 6. 과거 5년간 한국을 방문한 경력 7. 한국 이외에 과거 5년간 여행한 국가
초청인 정보	1. 초청인/초청회사- 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주소, 전화번호
방문경비	1. 방문경비 2. 경비지불자- 성명/단체명, 관계, 지원내용, 연락처
서류 작성시 도움여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도움을 준 사람 상세 내용(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관계)

출처: 법무부(2018a)

[표 22] 입국신청서

조사 항목	상세 내용
인적사항	1. 성명 2. 성별 3. 국적 4. 생년월일 5. 직업
한국 체류사항	1. 한국 내 주소 2. 입국 목적 3. 서명

출처: 법무부(2018a)

- 셋째, 외국인등록 단계에서는 인적사항, 여권관련정보, 대한민국 내 체류 및 체류자격 사항, 근무처 사항, 재입국 허가사항, 주요활동 및 신분변동 사항, 범법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음

[표 23] 등록외국인기록표

조사 항목	상세 내용
인적사항	1. 외국인등록번호 2. 영문성명(한글표기) 3. 성별 4. 생년월일 5. 국적 6. 한자성명 7. 직업 8. 전화번호 9. 출생국가 또는 지역 10. 특이사항
여권관련 정보	1. 여권사항 번호 2. 발급일 3. 만료일
대한민국 내 체류 관련	1. 대한민국 내 체류지 2. 등록일 3. 대한민국 내 체류 가족사항(관계,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 사항 구분란	구분/ 체류자격/ 만료일/ 허가일/ 허가번호/ 구분/ 체류자격 만료일/ 허가일/ 허가번호
근무처 사항	구분/ 근무처명칭/ 직위 또는 담당업무/ 만료일/ 허가일/ 허가번호
재입국 허가사항	구분/ 만료일/허가일/허가번호
주요활동 및 신분변동 사항	구분/일자
범법사항	범법내용/ 처벌구분/ 처벌일자/ 조치구분/ 조치일자/ 조치근거

출처: 법무부(2018a)

- 넷째, 사회통합 프로그램 단계에서는 업무선택과 인적사항 및 여권정보 일반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음

[표 24] 등록 신청서

조사 항목	상세 내용
업무선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 등록 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3. 등록증 재발급 4. 근무처변경·추가 허가·신고 5. 체류기간 연장허가 6. 재입국허가(단수, 복수) 7. 체류자격 변경허가 8. 체류지 변경신고 9. 체류자격 부여 10. 등록사항 변경신고
인적사항 및 여권정보 일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 2. 한자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5. 국적 6. 여권번호 7. 여권 발급일자 8. 여권 유효기간 9. 대한민국 내 주소 10. 전화번호 11. 여권 발급일자 12. 여권 유효기간 13. 대한민국 내 주소 14. 전화번호 15. 휴대전화 16. 본국 주소 및 전화번호 17. 근무처(과거, 예정 근무처/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18. 재입국 신청기간 19. 이메일 20.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21. 신청일 22.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출처: 법무부(2018a)

- 다섯째, 영주·국적 단계에서는 초청인의 인적사항, 교제 및 혼인 경위, 초청인의 혼인경력, 소득요건, 주거요건, 부부간 의사소통,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여부, 서류 작성 시 도움 여부 등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음

[표 25]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조사 항목	상세 내용
초청인의 인적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 2. 성별 3. 출생국가 4. 생년월일 5. 주소 6. 집전화번호 7. 휴대전화번호 8. 전자우편 주소
교제 및 혼인 경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우자를 처음 만난 날짜 2. 배우자를 처음 만난 장소 3. 배우자를 소개해준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소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전화번호, 소개인과의 관계 4. 처음 만나게 된 경위 5. 첫만남 이후 관계 발전 경위, 입증 자료 유무 6. 첫만남 이후 배우자의 국가에 방문하였는지 여부 7. 첫만남 이후 배우자가 한국에 방문하였는지 여부 8. 배우자와 결혼식 하였는지 9. 한국에 혼인신고한 날짜 10. 한국에 혼인신고 시 신고서에 기재한 증인 2명 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초청인) 11. 초청하려는 배우자와 동거 경험 여부-동거기간, 동거장소 12. 초청인의 부모가 혼인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초청인의 혼인경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청인의 과거 혼인여부 2. 과거 혼인경력(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배우자 국적, 혼인기간) 3. 과거에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을 한국으로 초청해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 4. 가장 최근에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날짜
소득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청인과 함께 사는 가족원 수 2. 가족인원수에 따라, 초청인이 충족해야하는 소득요건(법무부 고시 참고) 3. 근로소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취업여부, 2)직장명칭, 3)직장고용주 성명과 연락처, 4)현재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날짜, 5) 과거 1년간 얻은 세전수입, 6)초청인이 과거 1년간 한국에서 취업 경험 여부, 7)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업하였던 직장명, 주소, 고용주의 이름과 연락처, 8)초청인이 과거 1년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및 얻은 세전 소득, 9) 세전소득의 합, 10)현재 취업하고 있는 직장에서 얻은 소득 4. 사업소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거 1년간 사업여부, 2) 사업장 명칭, 주소, 전화번호, 3) 사업종류, 4) 과거 1년간 사업을 통해 얻은 세전소득 5. 그밖의 소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거 1년간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에 의한 소득 존재 유무 2) 이상 문항에 기재한 소득 합산 금액 6. 재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청인 명의의 재산 존재유무, 2) 초청인 대출 등 부채 여부, 3)

	재산합계에서 부채 제외한 금액, 4) 순재산의 5% 금액, 5) 초청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재산환산금액의 합계 금액 7. 소득요건의 면제 1)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유무
주거요건	1. 배우자 입국후 거주할 주소 2. 이상의 거주공간의 권리관계 3. 거주공간 크기 4. 거주공간 방의 개수 5. 거주공간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 유무
부부간의사소통	1. 초청인과 배우자가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는 언어 2. 배우자가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 3. 초청인이 배우자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 4. 초청인과 배우자가 제3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 5. 의사소통 요건의 면제 1) 초청인과 외국인배우자 간 출생 자녀 유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여부	1. 외국인 배우자 국적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중 하나인지 여부 2. 초청인의 정보 3.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 4. 범죄경력 및 건강정보 상호 교환 유무
서류 작성시 도움 여부	1. 서류 작성시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도움을 준 사람의 성명, 주소, 연락처, 초청인과의 관계

출처: 법무부(2018a)

- 여섯째,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사건관련, 용의자, 죄명, 처분, 제출물, 행정제재, 비고 등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음

[표 26] 사건부

조사 항목	상세 내용
사건 관련	1. 사건 번호 2. 접수 년월 3. 구분(인지 또는 ~로부터 인수) 4. 담당(직급, 성명)
용의자	1. 국적 2. 성별 3. 성명 4. 체류자격 5. 생년월일 6. 연락처 7. 주거(소)
죄명	출입국관리법 제00조 00항 위반
처분	1. 보호(명령서발부년월, 보호기간, 보호장소, 보호기간연장, 보호통지,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 이의신청, 보호해제) 2. 강제퇴거(명령서발부년월, 이의신청년월, 집행년월, 송환국)

	3. 출국명령(명령서발부년월, 출국기한년월, 출국일자년월, 출국항) 4. 통고처분(통고서발부년월, 납부기한년월, 통고금액, 납부일자년월, 처분 후 조치) 5. 과태료(통지서발부년월, 납부기한년월, 부과금액, 납부일자년월) 6. 고발(고발일자, 고발사유, 송치관서, 결과) 7. 타관이송(연월일) 8. 기타(연월일)
제출물	제출물, 제출일자, 환부물, 환부일자
행정제재	입국금지(사중규제) 년
비고	입국일자, 불법체류기간, 동반가족원수, 출국선박 등 편수

출처: 법무부(2018a)

- 일곱째, 난민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한국 입국사항, 한국 내 체류사항, 국적 및 영주권, 혼인사항, 가족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군복무사항, 거주사항, 여권사항, 한국 사증사항, 자국 출입국 사항, 난민인정 신청사항, 난민인정 신청사유 등을 기록하고 있음

[표 27] 난민인정신청서

조사 항목	상세 내용
인적사항	1. 성, 이름 2. 다른 이름 (혼전 성명, 종교적 이름, 가명, 별명 등) 3. 생년월일(연/월/일) 4. 성별(남/ 여) 5. 국적 6. 직업 7. 직업 8. 출생지 9. 자국에서 등록된 주소지 10. 종교 11. 인종 12. 모국어 및 구사 언어
한국 입국사항	1. 입국일(연/월/일) 2. 입국장소 3. 입국허가여부 4. 여권번호 또는 신분증번호 5. 사증종류 6. 사증상 체류기관 7. 여권 제시 입국여부 8. 여권상 성(姓) 9. 여권상 이름 10. 여권상 생년월일 11. 여권상 국적

한국 내 체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체류자격 2. 체류기간 만료일(연/월/일) 3. 법 위반사항 4. 법 위반사항 해당시 사유 5. 대한민국 내 주소 6. 연락처 7. 전자우편 8. 한국 내 연고자 내용
국적 및 영주권	과거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적 및 영주권 내역(국가, 취득일, 상실일, 현재상태)
혼인사항	혼인여부, 혼인 발생일 및 배우자 정보, 현재 상태
가족사항	배우자 및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정보(관계, 성명, 생년월일, 국적, 거주국가)
학력사항	재학기간(입학, 졸업연도), 학교 또는 그 밖의 교육기관 명, 소재지, 졸업여부
경력사항	근무기간, 직장명, 소재지, 담당업무(직위)
군복무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무복무 혹은 지원 복무 여부 2. 군복무 여부 3. 군복무 기간 4. 군복무한 국가(지명 포함) 5. 복무한 군대 6. 소속 부대명 7. 전역 당시 계급 8. 전역 사유 9. 전투 참가 경력
거주사항	자국 또는 외국에서의 거주사항 내용(거주기간, 거주국가, 상세주소, 신분)
여권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소지여부 2. 여권 등 발급기관 명 3. 발급일 4. 취득목적 5. 여권 취득 여부 6.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소지 경위 7. 여권 불법 취득시 그 이유 8. 여권 미소지시 그 이유 9. 여권 미소지시 여권 발급 여부 10. 취득 가능 여부 항목(여권, 여행증명서, 국가신분증) 11. 여권 취득 불가능시 그 이유
한국 사증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 입국을 위한 사증 발급여부 2. 사증 발급 기관명 또는 지역 3. 사증 종류 4. 발급일 5. 한국 사증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6. 한국 사증 취득 또는 한국 입국에 도움을 준 사람의 인적사항과 경위
자국 출입국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자국 출국일(연/월/일) 2. 출국 공항·항만 또는 지역 3. 출국 교통수단(비행기, 선박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출국 당시 출국목적 5. 출국시 출국허가 또는 출국비자 받아야하는지의 여부 6. 적법한 허가 수령 여부 7. 출국허가 받은 날짜 8. 출국허가 받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 9. 한국 입국 전 타국 입국 여부 10. 과거 외국정부로부터 입국거부, 체류불허, 강제퇴거 등 처분 받은 여부
난민인정 신청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난민인정 신청 사유 2. 부당한 처분 및 박해 여부, 그 이유 3. 귀국시 부당한 처분 및 박해 여부 4. 신청자 또는 신청자 가족이 심문 또는 조사받았는지 여부 5. 신청자 또는 신청자 가족이 자국에서 체포, 구금 또는 구속 여부 및 그 내용 6. 신청자 또는 신청자 가족이 자국에서 소속된 단체 또는 활동한 단체 여부 및 그 내용 7. 자국정부나 특정 단체에 적대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8. 응답자 또는 응답자 가족이 외국정부에 난민신청 이력 여부 및 내용 9. 자국에 거주중인 가족과 연락 지속 여부 10. 신청자의 신청 사유를 뒷받침할 서류 및 증거물 11. 한국의 난민신청에 대해 알게 된 경위 12. 한국에 입국한지 1년이 지나 난민신청을 한 경우 그 이유
난민인정 신청사유	추가적으로 진술하고 싶은 내용

출처: 법무부(2018a)

3.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후 정보 DB의 변화

1)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의 도입의 필요성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에서는 업무의 측면에서 외국인 개인 신원 확인의 어려움, 업무 간 정보의 단절, 데이터 신뢰도 저하, 시스템 접근 및 이용 불편, 개인정보 오남용 개연성 존재, 대부분 업무의 수기 작성·보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의 도입을 진행하고 있음

○ 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출입국 이민행정 서비스 지원 한계에 도달하였고, 데이터 중복 및 불일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의 발생, 17년 전 구축된 시스템의 노후화, 기관 간 개별

연계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 활성화 미흡하고, 보안에 취약한 매체를 이용한 정보유통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다는 점, 출입국·이국인 정보 공동 이용 확대에 따라 정보보안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의 도입과 이를 통한 통합(이민행정업무처리)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2) 출입국·외국인 데이터베이스 구성 현황

○ 출입국·외국인 데이터베이스는 20개 주제영역으로 구성

[그림 38] 주제별 출입국·외국인 데이터베이스

1. 출입국심사 항공을 이용해서 입국하는 국민 또는 외국인의 입출국 기록 및 심사정보 등을 관리하는 영역	2. 체류/재류외국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기본 정보 및 허가, 신고, 증명발급 등의 민원 처리 정보를 관리하는 영역	3. 사증 국내 입국을 위한 사증 및 국내 초청을 위한 사증발급 신청서 등에 대한 처리 정보를 관리하는 영역	4. 조사/사범/보호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수행하는 조사, 불법체류심사, 보호 등의 업무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영역	5. 기타/공통 이민행정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공통코드 및 게시판, 조직, 권한, 인사, 상호회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영역
6. 자등출입국 대한민국 또는 합정을 맺은 일부 국가에 항공을 이용하여 출입국을 하는 경우 자등게이트를 통과하는데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영역	7. 국적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정보 및 관련 업무 처리 정보를 관리하는 영역	8. 비자포탈 혼리인을 통하여 전자사증 또는 사증발급신청서를 신청 업무와 비자포탈 운영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영역	9. 난민/소송 난민신청에 따른 처리 및 출입국의국민지원센터 관련 업무와 소송 업무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영역	10. 공동이용 시군구 등 타 행정기관과 공유하기 위한 외국인정보와 운영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영역
11. 국경관리 항공을 이용해서 입국하는 국민 또는 외국인의 발견 및 탑승객정보 사적분석에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영역	12. HiKorea/모바일 체류외국인들의 민원처리를 위한 방문예약 및 전자입원 처리 정보의 모바일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영역	13. 유학생 국내 유학생 또는 예정자들에 대한 기본정보, 구인구직정보, 교육기관 정보 등을 관리하는 영역	14. 감식 여권 등의 위변조 여부를 감식하기 위한 정밀분석, 컨텐츠 등의 정보와 운영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영역	15. 송수신/등보 전자민원 송수신 하기의 환경 정보를 관리하는 송수신 영역과 입국통보대상자에 대한 통보를 관리하는 출입국통보 영역
16. 선박 대한민국으로의 입출항선박 승객, 포루크 단체인탈객, 상륙 허가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영역	17. 사회응답 국내외 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 이수결과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영역	18. 바이오 각 업무에서 획득된 외국인의 인면, 지문 정보를 취합한 정보 및 검색, 비교 분석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영역	19. 이미지 체류, 국적 등 각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신청서, 증명서 등의 서류를 스캔하여 저장한 정보를 관리하는 영역	20. 통계/DW 체류, 출입국심사, 사용 등 각 업무별 대상자, 업무처리 현황 및 자원별 통계 정보를 관리하는 영역

○ 데이터베이스 현황

- 26개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는 이중화를 포함하여 30개 DB(user 기준), 4,092개 테이블로 구성(주요 13개 DB의 3,074개 테이블에서 약 156억 건의 데이터 보유)

3)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의 도입 전·후 정보 DB 변화

-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은 DB측면에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도입이 진행됨

- 위에서 살펴본 업무별, 업무처리과정별 정보는 차세대이민행정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통합 관리될 예정임
- 통합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에 따라 기존에 인천 업무 서버팜에 인천 1, 2(RAC), 서울 업무 서버팜에 서울1, 서울2, 서울4이 ICRM 통합1, 2(RAC)로 통합되고, 통합이미지 DB가 추가로 구축되었음을 아래 [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28]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전후 데이터베이스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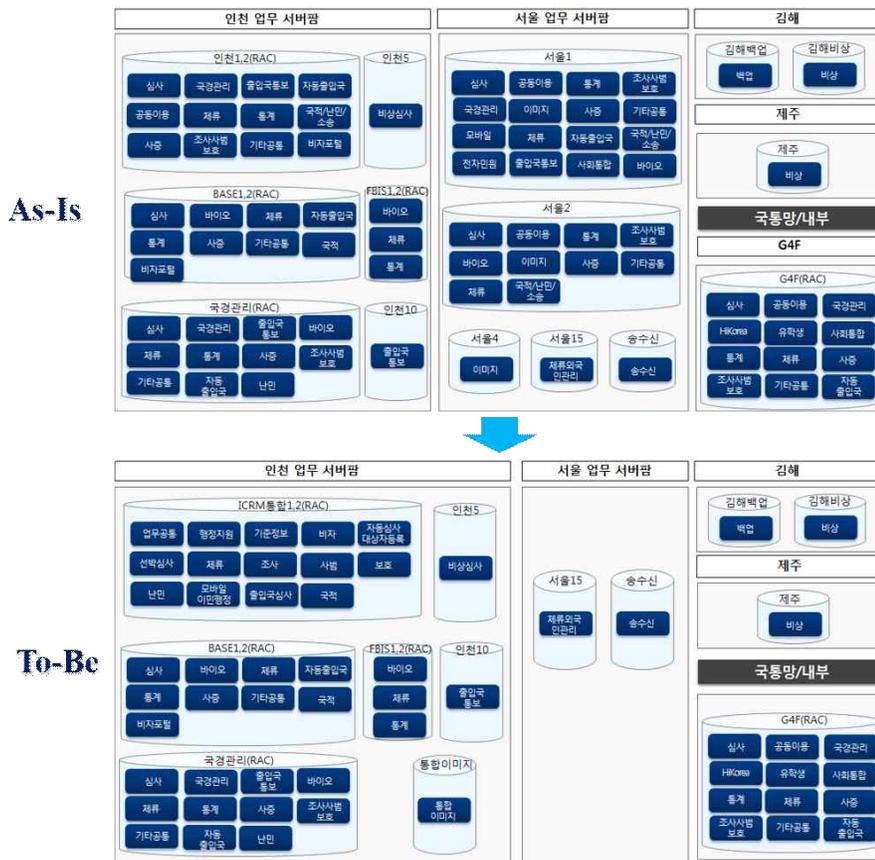
도입 전(AS-IS)		도입 후(TO-BE)		
서버	업무	서버	업무	
인천 업무 서버 팜	인천 1,2(RAC)	ICRM통합 1,2(RAC)	업무공통, 행정지원, 기준정보, 비자, 자동심사대상자등록, 선박심사, 체류, 조사, 사범, 보호, 난민, 모바일 이민행정, 출입국심사, 국적	
	인천5	인천5	비상심사	
	BASE1,2(RAC)	BASE1,2(RAC)	심사, 바이오, 체류, 자동출입국, 통계, 사증, 기타공통, 국적, 비자포털	
	FBIS1,2(RAC)	FBIS1,2(RAC)	바이오, 체류, 통계	
	국경관리 (RAC)	국경관리 (RAC)	심사, 국경관리, 출입국통보, 바이오, 체류, 통계, 사증, 조사사범 보호, 기타공통, 자동출입국, 난민	
인천10	인천10	출입국통보	출입국통보	
서울 업무 서버 팜	서울1	서울15	체류외국인관리	
	서울2	김해백업	백업	
		김해	김해비상	비상

	서울4	이미지
	서울15	체류외국인관리
	송수신	송수신
김해	김해백업	백업
	김해비상	비상
제주	제주	비상
국 통 망/내 부 -G4F	G4F(RAC)	심사, 공동이용, 국경관리, Hikorea, 유학생, 사회통합, 통계, 체류, 사증, 조사사범 보호, 기타공통, 자동출입국

제주	제주	비상
국 통 망 / 내 부 -G4F	G4F(RAC)	심사, 공동이용, 국경관리, Hikorea, 유학생, 사회통합, 통계, 체류, 사증, 조사사범 보호, 기타공통, 자동출입국

○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전후의 DB현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그림 39]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전후 DB 현황



- 또한 데이터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기존 DB의 위치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이, 업무별로 구분되어 변화되고 있음을 [표 29]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29]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전후 데이터 아키텍처

도입 전(AS-IS)			도입 후(TO-BE)		
법무망	서울1	사증, 심사, 체류, 조사, 사범/보호, 국적, 난민, 비자포탈	바이오취득	FBIS	통합 업무 사증, 심사, 체류, 사범/보호, 난민, 국경관리, 선박, 조사, 국적, 감식, 등록외국인, 외국인여권, 내국인여권, 공통코드, 조직, 사용자정보, 권한
	서울2	통계	바이오분석	BASE	
	서울4	이미지	로그	로그	
	서울6	실명인증	통계	일반통계, 분석통계	
	서울15	체류외국인			
	송수신	송수신			
	신원인증	신원인증			
	인천1	사증, 심사, 체류, 국경관리			
	인천5	비상심사			
	인천6	비상심사 웹			
	인천10	통보			
	외국인지문	FBIS			
	바이오분석	BASE			
	국경관리	국경관리, 사증, 심사			
	전자여권	전자여권			
김해1	서울1백업		통합업무지원	실명인증, 신원인증, 전자여권	
	서울2백업		출입국업무	인사관리	
	인천1백업		데이터관리	메타관리, 품질관리	
	비상심사				
제주1	비상심사				
인터넷망 DMZ	외부연계	외부연계, 메일	인터넷망 DMZ	Hi korea 연계	Hi korea 연계
인터넷망	포털	Hikorea, 사회통합, 자동출입국	인터넷망	Hi korea	Hi korea, 사회통합, 자동출입국, 유학생, 비자포탈, 스트리밍
행정망	공동이용	체류, 유학생	행정망	출입국정보 공동이용	공동이용, 통합사증, 외부사용자
행정망 DMZ	공동이용	체류, 유학생	행정망 DMZ	출입국정보 공동이용 연계	출입국정보공동이용 연계

4.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후 정보시스템의 변화

1)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후 정보시스템 현황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보시스템은 이민행정업무 처리시스템, 대민서비스 시스템, 대외기관 제공 시스템 22종과 장비·KIOSK 4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아래 [표 30]은 주요 기능별 시스템 현황임

[표 30] 주요 기능별 시스템 현황

주요 기능		시스템 구분	
이민행정업무전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	
심사	(정보분석)	통합국경관리시스템(IBMS)	
		탑승자 사전확인(I-prechecking)	
		사전승객정보분석(APIS)	
		사전승객예약정보분석(PNR)	
		승객정보관리(PIMS)	
	환승객관리(T/S)		
	비상심사시스템(C/S)		이민행정업무처리시스템
	비상심사시스템(Web)		
	자동출입국심사 신청서비스(SES)		대민서비스시스템
	자동출입국심사관리시스템(AICS)		장비·KIOSK
화물터미널무인심사시스템(RCSS)			
선원관리시스템			
이동출입국심사시스템			
사증	사증업무시스템(KVIS)		이민행정업무처리시스템
	비자포털(e-VISA)		대민서비스시스템
	통합사증정보시스템(IVIS)		대외기관제공시스템
조사	체류외국인관리시스템(FRMS)		이민행정업무처리시스템
	외국인정보분석시스템(FIAS)		
	모바일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mlCRM)		
감식	출입국감식정보시스템(KIAS)		
바이오분석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FBIS)		이민행정업무처리시스템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BASE)		
체류	외국인을위한전자정부(Hikorea)		대민서비스시스템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		대외기관제공시스템
사회통합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대민서비스시스템

- 시스템 측면에서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의 도입 후 주된 변화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의 개선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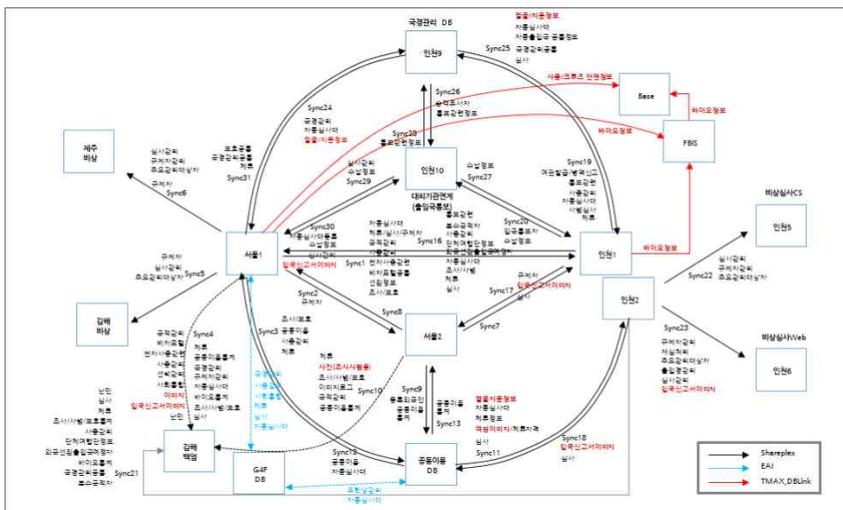
- 위의 [표 30]를 개념적으로 정리한 어플리케이션 구성도는 아래 [그림 40]와 같음

[그림 40]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구성도



- 이민행정시스템의 서버 위치별 내·외부 연계도는 아래 [그림 41]과 같음 크게 인천과 서울로 양분되어 있고, 김해서버에 백업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41] 서버 위치별 내·외부 연계도



- 26개 단위시스템, 약 3만본 프로그램, 4천여 개 테이블로 시스템 구성·운영

[표 31] 시스템 현황

시스템 구분	단위 시스템수	테이블수
이민행정 업무처리	ICRM 등 15개 + 장비 4개	4,092개
대외기관제공	외국인정보공동이용 등 2개	
대민 및 대외국인 서비스	하이코리아 등 5개	
합 계	26개	4,092개

2)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후 응용프로그램 구성 현황

[표 32] 응용프로그램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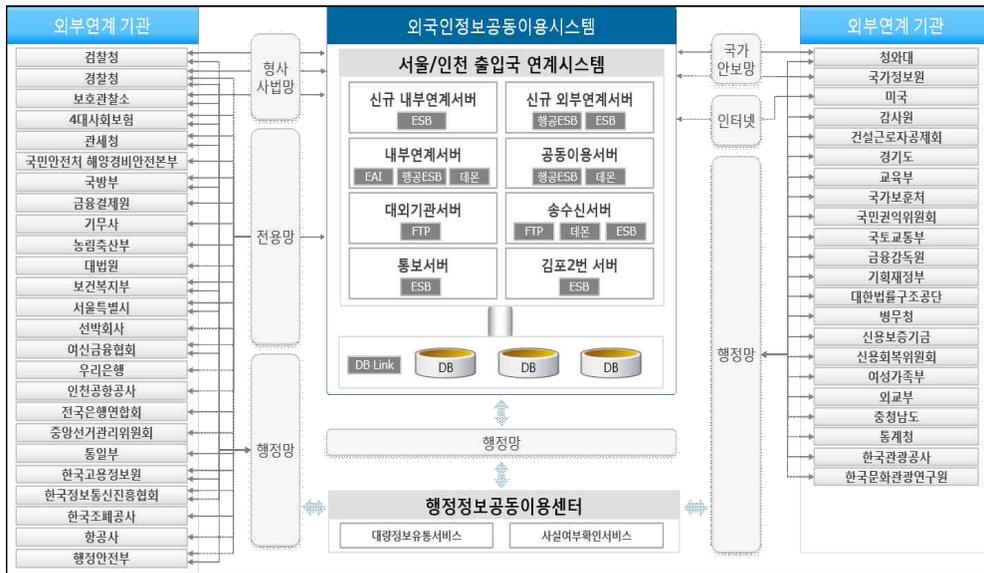
(단위 : 본)

구분	계	화면	서비스	보고서	기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체류/조사/사범/국적/이미지 관리 등)	11,011	3,757	4,945	1,767	542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출입국 심사)	2,331	854	1,176	298	3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HiKorea)	5,306	2,319	2,898	89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	1,645	547	947	151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1,335	335	984	16	
사회통합정보망(Soci-Net)시스템	1,177	739	418	20	
사증시스템(비자 포털 등)	3,460	1,329	1,991	139	1
체류외국인관리시스템(FRMS)	280	137	143		
외국인정보분석시스템(FIAS)	391	79	312		
자동출입국관리시스템(SES)	1,169	353	815	1	
모바일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m-ICRM)	124	76	48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FBIS)	174	61	113		
통합국경관리시스템(IBMS)	1,493	769	549	19	156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BASE)	463	281	182		
감식정보시스템(KIAS)	218	171	47		
화물터미널원격심사시스템	47	45	2		
비상심사시스템	518	183	335		
선원관리시스템	110	49	56	5	
출입국통보시스템	2				2
이동출입국심사시스템	152	94	57	1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모니터링 포함)	279	65	210	4	
외부기관연계시스템(인천공항)	15				15
합 계	31,700	12,243	16,228	2,510	719

3)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후 출입국·외국인정보 공동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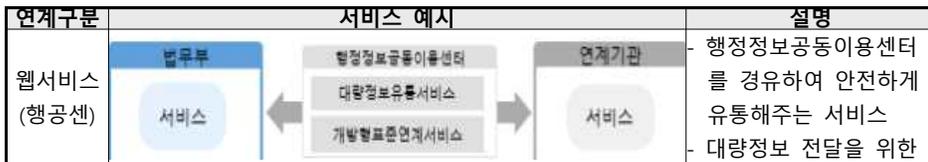
○ 정보시스템 연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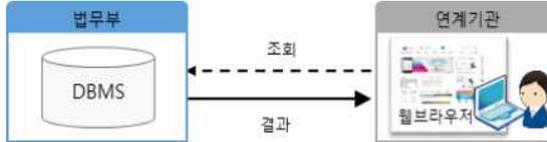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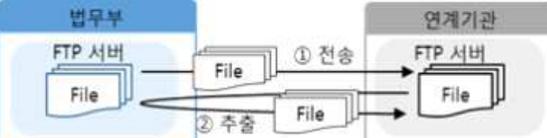
[그림 42] 정보시스템의 외부연계 구성도



- 출입국·외국인정보는 다양한 연계방식으로 49개 내·외부 기관과 정보를 송·수신하고 있음(송신기관 : 49개, 수신기관 : 23개)
- 49개 기관과 송수신하는 상세연계 항목수는 총 584건이며, 연계방식은 크게 항공센, ESB, 데몬, EAI, FTP, DBLink, 웹서비스 등 12가지 종류로 분류됨

[표 33] 외부기관과 연계 서비스 방식



연계구분	서비스 예시	설명
		<p>대량정보유통과 정보보유기관의 사실여부(Y,N) 실시간 조회</p>
웹조회		<p>법무부의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 정보 조회</p>
법무부 EAI		<p>서로 다른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 간의 정보에 대한 전달, 연계,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으로 법무부 EAI 솔루션 Indigo를 사용함</p>
외부 EAI		<p>서로 다른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 간의 정보에 대한 전달, 연계,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으로 연계되는 각 외부기관의 EAI 솔루션을 사용함</p>
법무부 ESB		<p>동종/이종 정보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메시지 라우팅, 메시지 변환, 서비스 조합기능 제공 Data 특성에 따라 DB, File, Web Service 등의 서비스 컴포넌트를 제공</p>
FTP (통보서버)		<p>FTP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와 접속을 위한 클라이언트로 구성 법무부에서 연계기관에 직접 전송하는 방법(전송)과 연계기관에서 직접 가져가는(추출) 두 종의 방법 존재.</p>
단말기		<p>외부기관용으로 개발된 법무부 출입국정보관리 시스템을 해당기관에서 사용</p>
데몬		<p>서로 다른 기관과의 자료 연계를 위하여</p>

연계구분	서비스 예시	설명
		데몬을 이용하여 상호 연계
DB Link (통보서버)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간 자료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타 DBMS에 있는 정보를 링크
공문		온나라, 전자우편, Fax 등을 이용하여 공문 전달
웹서비스		웹을 통한 정보 조회
KTNET		전자문서교환시스템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표준연계체계

[표 34] 표준연계체계

순번	기관	관련부서 (또는 업무)	연계항목	송/ 수신	기존 연계 방식	표준 연계방식
1	경찰청 (4종)	분청 외사정보과	출입국규제통보자	송신	DB LINK	법무부 ESB
2		분청 외사정보과	APIS통보자	송신	DB LINK	
3		분청 외사정보과	APIS사전분석규제자통보	송신	DB LINK	
4		분청 외사정보과	테러지원국가 ED카드	송신	DB LINK	
5	고용노동부	정보화기획팀	출입국규제통보자	송신	DB LINK	항공센
6	관세청 (15종)	PNR	항공예약승객명부 공통내역	수신	데몬	법무부 ESB
7		PNR	항공예약승객명부 개별내역	수신	데몬	
8		PNR	항공예약승객명부 개별여행경로내역	수신	데몬	
9		PNR	항공예약승객명부 개별수화물내역	수신	데몬	
10		PNR	항공예약승객명부 공통미탑승내역	수신	데몬	
11		PNR	항공예약승객명부 티켓발권내역	수신	데몬	

순번	기관	관련부서 (또는 업무)	연계항목	송/ 수신	기존 연계 방식	표준 연계방식
12		APIS/GD	입국EDI파일문서관리대장	수신	데몬	
13		APIS/GD	경유지EDI문서테이블	수신	데몬	
14		APIS/GD	운항EDI문서테이블	수신	데몬	
15		APIS/GD	입국승객EDI문서테이블	수신	데몬	
16		APIS/GD	출국EDI파일문서관리대장	수신	데몬	
17		APIS/GD	출국경유지EDI문서테이블	수신	데몬	
18		APIS/GD	출국운항EDI문서테이블	수신	데몬	
19		APIS/GD	출국승객EDI문서테이블	수신	데몬	
20		전산정보관리과	MRP심사로그	송신	DB LINK	
21	국가정 보원 (3종)	국정원(지부포함)	출입국규제통보자	송신	DB LINK	법무부 ESB
22		국정원(지부포함)	APIS사전분석규제자통보	송신	DB LINK	
23		국정원(지부포함)	테러지원국가 통보	송신	DB LINK	
24	국세청 (2종)	징세과	출입국규제통보자	송신	DB LINK	행공센
25		징세과	출국금(정)지자의 시스템 입력사항	송신	DB LINK	
26	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	출입국규제통보자	송신	DB LINK	법무부 ESB
27	보건복 지부 (6종)	질병관리본부	국내체류 외국인 결핵환자	수신	DB LINK	행공센
28		질병관리본부	국내체류 외국인 결핵환자 출국기록	송신	DB LINK	
29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 대상 외국인정보	수신	DB LINK	법무부 ESB
30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 대상 외국인 입국신고서 이미지	송신	DB LINK	
31		질병관리본부	오염국 출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정보	수신	DB LINK	
32		질병관리본부	외국인등록번호	송신	DB LINK	
33	서울특 별시	38세금징수과	출입국규제통보자	송신	DB LINK	행공센
34	외교부 (7종)	영사서비스과	외교부 국적 접수 정보	수신	법무 부EAI	행공센
35		영사서비스과	외교부 국적 접수 진행상태 정보	송신	법무 부EAI	
36		영사서비스과	외교부 국적법 질의 수신	수신	법무 부EAI	
37		영사서비스과	외교부 국적법 질의 답변 송신	송신	법무 부EAI	
38		영사서비스과	최종심사결과저장	송신	법무 부EAI	
39		영사서비스과	허가처리	송신	법무 부EAI	
40		영사서비스과	외교부 영사수입금	송신	법무 부EAI	

순번	기관	관련부서 (또는 업무)	연계항목	송/ 수신	기존 연계 방식	표준 연계방식
41	우리은행 (2종)	외국인영업부	Global Entry 수수료 납부자	수신	데몬	법무부 ESB
42		외국인영업부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납부자	수신	데몬	
43	인천국제 공항공사 (3종)	스마트공항팀	출국및환승여객 항공사 운송 정보	수신	DB LINK	법무부 ESB
44		스마트공항팀	환승구역 보안검색대 통과자 정보	수신	DB LINK	
45		스마트공항팀	입국장 구역별 심사 현황	송신	DB LINK	
46	통일부 (7종)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신원의뢰	수신	DB LINK	법무부 ESB
47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신원결과	송신	DB LINK	
48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방북승인정보	수신	DB LINK	
49		남북교류협력시스템	통행계획	수신	DB LINK	
50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승인취소	수신	DB LINK	
51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남북왕래로그	송신	DB LINK	
52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방북목적코드	수신	DB LINK	
53	해양경 찰청	수사정보과	출입국규제통보자	송신	DB LINK	법무부 ESB

5. 이민정보서비스원의 DB /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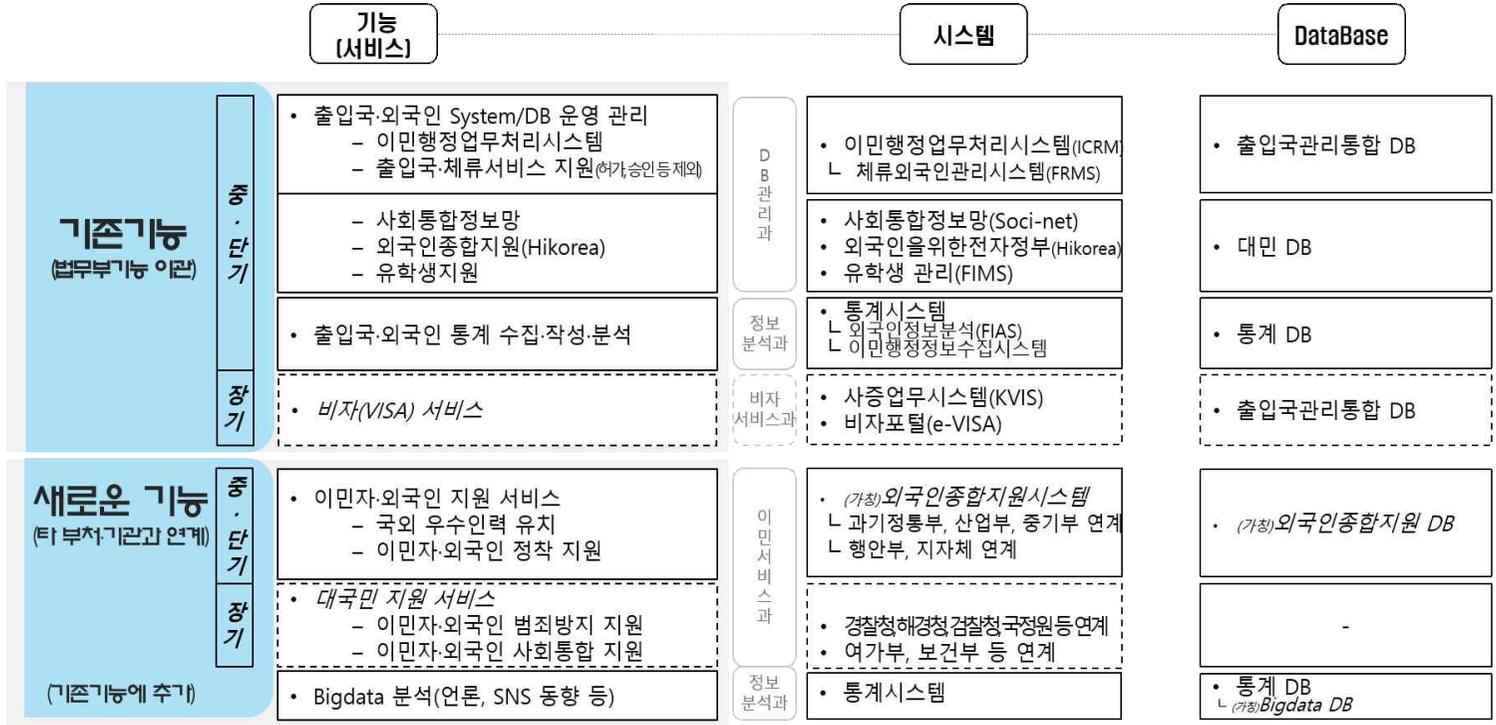
1) 기능연계 측면: 이민정보서비스원 DB /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 이민정보서비스원의 기능과 DB / 시스템 연계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앞서 제시된 타당성 분석과 조직 역할 및 구성에 따라 국내 체류외국인과 이민자들에게 수요자 맞춤형·(기관)통합적인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함
 - 여기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낮고, 공개성이 높은 데이터⁵¹⁾가 서비스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음
 - 이민정보서비스원의 기능과 시스템 및 DB 구축시 연계방안은 다음 [그림 40]와 같음
- 이민정보서비스원의 기능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법무부가 기존에 수행하던 기능을 이관하여 수행할 ‘기존 기능’ 과 타부처·기관과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행하게 될 ‘새로운 기능’ 임
 - 기존 기능을 중·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였고, 중·단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능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출입국 외국인 관련 시스템과 DB의 운영, 관리과 출입국, 외국인 관련 통계의 수집, 작성, 분석이라고 간주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과 DB를 연동하였음

51) 보안성이 높고, 공개성이 낮은 데이터에는 국가별 출입국외국인 수가 해당될 수 있음

[그림 43] 이민정보서비스원 기능과 시스템/DB 연계

도입 고려



- 새로운 기능은 이민자, 외국인 지원 서비스로 ‘국외 우수인력 유치’와 ‘이민자 외국인 정착 지원’을 고려할 수 있고, 국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이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 대상자의 현황 등과 이러한 우수 인재를 포함한 외국인과 이민자의 정착을 지원(현재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 중)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칭)외국인종합지원시스템과 (가칭)외국인종합지원DB의 구축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대국민 지원 서비스까지 확장의 여지가 있을 것임
- 출입국·외국인 정보 시스템 / DB 활용한 기존 서비스 이관
-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DB/시스템 중 유학생 DB/시스템,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Hikorea)와 통계 DB, 사증/심사/체류 등의 DB가 활용될 수 있음
- 정보 DB / 시스템 활용 새로운 서비스
- 추가적인 대민 서비스를 위하여 (가칭)외국인종합지원 DB와 Bigdata DB의 추가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활용을 촉진하고, 유의미한 데이터의 활용성과를 위하여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문제의 소지가 적은 데이터의 Open API화를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Bigdata DB는 출입국, 외국인 등에 대해 언론기사, SNS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한 비정형데이터를 의미함

- 이를 text mining, 감정분석, 머신러닝 등의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음
- 이를 통하여, 국/내외 특정 국가, 특정 지역, 외국인 집단 등에 대한 동향 파악이 가능하고, 증거기반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여기에서 증거기반정책(evidence based policy)은 정책의 기반이 되는 자료 또는 데이터의 명확성이 담보되고, 방법론의 강화를 통해 제시된 증거의 확증성이 재검증될 수 있는 과학적 정책을 의미함(윤광성 외, 2016) 즉, 객관적 사실성과 수용성이 담보된 증거에 기초하여 설계된 정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재인용)
- 증거기반정책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와 과학적 접근에 따른 근거와 함께 정책담당자의 전문성과 정책대상자의 특성도 고려되어야 하면 Rubin(2013)에 따르면, 생산성이 있고, 효율적인 증거기반정책은 정책담당자의 전문성(Practitioner's Expertise), 과학적 연구증거(Best Research Evidence), 정책대상자 특성(Client Attributes)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통합기반에서 가능하다고 하였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2) 출입국외국인 DB, 시스템의 활용 방안(확장)

- 출입국·외국인 통계 데이터 분석의 측면에서 통계 작성 및 분석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먼저, 이민자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산업 동향 및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적 이민자 유입 계획 수립이 가능함

-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 정보와 추가적으로 고용정보원(고용노동부)의 외국인 임금데이터 등의 연계가 필요함
- 다음으로, 이민자 유입이 경제 및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문화지역적 영향 등의 장기적 시각에서의 분석/평가가 가능할 것임
 - 이는 일부 이민정책연구원의 기능과 중첩되므로 이민정책연구원과의 특히, 통계 데이터 공유 등의 측면에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민자 증가에 따른 밀집지역 관리, 불법체류 다발 지역업종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의 제시가 가능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와 유관 부처, 이민정책연구원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이민관련 조사의 시행, 국제이민지표와 국제이민통계사업 참여, 주요 각 국의 이민당국 및 국제기구와 정보교환 등 글로벌 협력 활성화
 -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진행하는 고용-체류조사 등을 이민정보서비스원에서 주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Bigdata를 활용한 국/내외 외국인, 이민 동향의 파악 등의 기능 수행할 수 있음
- 이러한 분석에는 분석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 처리가 필요함

6. 소결 - DB 활용서비스 개선 방안

1)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시스템, DB구축 방안

- 법무부와 이민정보서비스원의 DB 공유,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고려가 필요함
-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도입 후 출입국관리통합 DB, 대민 DB, 통계 DB와 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받아 유의미한 통계 분석 및 정책의사결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DB 연동, 공유가 필요함
- 이민정보서비스원에 DB 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DB 센터를 통해 내부 시스템 연계와 DB 공유가 이루어져야함

2) DB 센터 구축

- 이민정보서비스원 내부에 DB 센터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영지원시스템과 사업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임
- 경영지원시스템은 이민정보서비스원의 내부적인 행정처리와 DB 관리 등 일상 업무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임
- 사업지원시스템은 이민정보서비스원에서 생산한 (유의미한) 정보를 법무부, 타 부처, 타 기관과 연계하기 위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이민정보서비스원 발족 전 별도의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등이 요구됨

3)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처 간-기관 간 외국인 정보 공유를 위한 연결자(Key)로 적극 활용

- 내국인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증)는 행정안전부가 부처 간-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연결자⁵²⁾로 활용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외국인 대상으로 외국인등록번호(증)는 법무부가 부처 간-기관 간 정보 공유, 연계를 하기 위한 연결자로 활용의 필요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법무부 공무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정보연계·공유의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였음

“(사무관 000)사실 외국인 정보는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는 내국인에 대한 행안부 관리의 주민등록 정보와 비슷함, 이를 통하여 정보공유, 연계와 그에 따른 공유 방식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음”

[참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 I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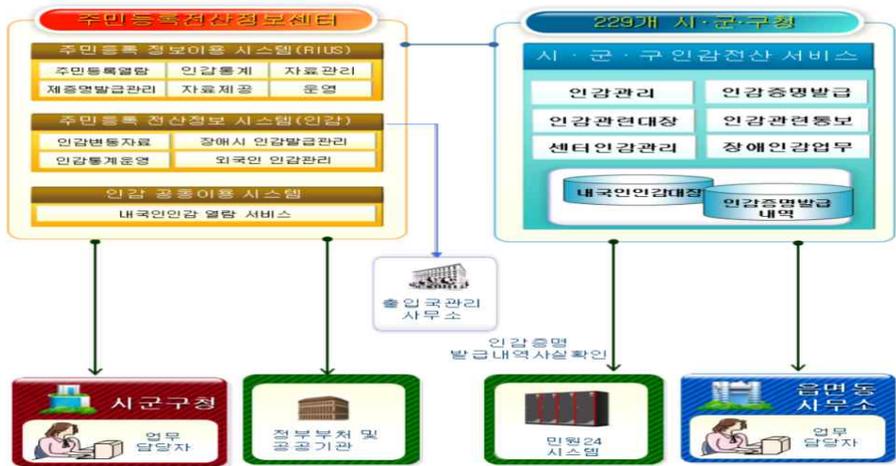
[그림 44]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연계



- 행정기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이동 실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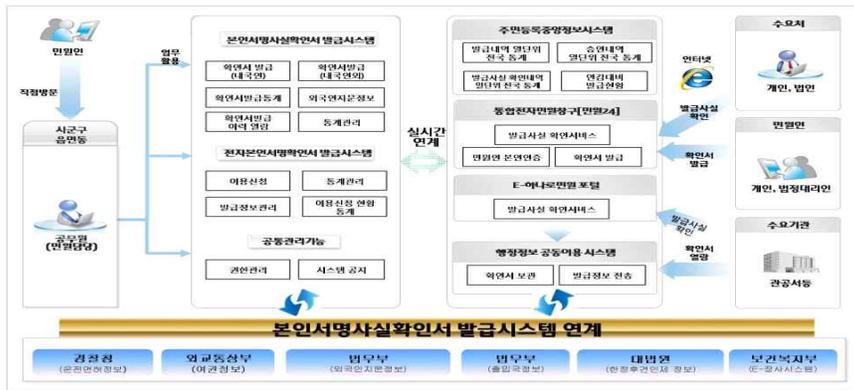
52) 헌법재판소 판결문(2015. 12. 23.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

[그림 45] 인감시스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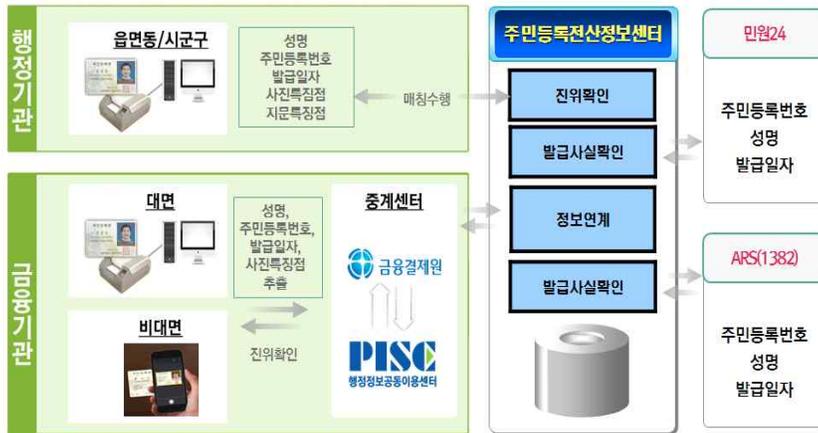
-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감 신고인의 일종의 보증수단으로, 공증서에 의하지 않고도 공증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각종 활동에 편리하고 폭 넓게 이용

[그림 46] 본인서명확인시스템



-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관계법령(조례·규칙 포함)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음

[그림 47]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



-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정보를 이용하여 진위 또는 발급사실을 확인하는 서비스로서 행정기관, 금융기관, 민원24, ARS(1382)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출처: 행정안전부(2018).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 제안요청서.

- 타부처, 기관과의 정보공유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법무부의 표준연계체계와 행정안전부의 행정공유정보의 표준연계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음. 여기에는 공유를 위한 agent의 설치가 필요함
- 또한 연계의 방식을 과거에 API를 통해 연계하는 것은 보안의 문제가 발생하고, 추적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어, 기관(부처) 간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내용은 아래의 전문가(LG CNS 담당자)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음

“(전략)...연계방식은 법무부 표준연계방식과 행정공유정보의 표준연계방식 두가지가 있어서 공유하는 것에 agent만 설치된다면 문제가 없음. 여기에서는 모든

항목에 대해 기관간 연계할 때 과거에 연계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것도 고려가 필요함...(중략)...과거에는 API를 통해 연계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API를 통해 연계하는 방식은 보안에 구멍이 생기는 등 추적이 불가능해 log기록을 통한 통합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특히 외국인 정보는 개인정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스템간 연계가 더욱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됨...(후략) ”

4) 내부-외부 수요조사를 통한 DB matching를 통한 서비스 발굴(DB 연계, 공동 활용 강화)

- 수요조사의 중요성은 출입국·외국인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LG CNS 담당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전략)...이러한 정보를 타 기관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수사기관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중략)...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 기관별 외국인 정보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임. 과거에 행안부의 주민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분석한 바 있음. 또한 주민정보에 대한 필요를 파악할 때, 5,000종의 민원을 분석한 바 있음...(후략)”

-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진은 외부 수요조사와 내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출입국·외국인 DB의 내부, 외부 각각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매칭(matching)시키는 방법을 제안함
- 외부 수요조사는 각 부처가 Service 수요조사: 타 정부부처 및 기관이 필요한 법무부 내 서비스, DB의 수요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함
- 내부 수요조사는 이민정보서비스원 등 법무부가 추가로 제공하고 자 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외부 DB 수요조사를 의미함

5)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성공적인 빅데이터 축적 및 분석,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database) 자체 보다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가 중요하다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진은 법무부와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한 바 있음

“(전략)...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대외(타 부처) 통계 제공 서비스를 위해서는 별도의 통계팀이 있어야함. 유사한 사례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할 때, 각 부처마다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와 공개할 수 없는 데이터를 분류하고,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별도의 용역을 실시한 경우가 많았음. 이민정보서비스원의 별도의 통계팀은 데이터 공유를 위한 데이터 전처리 할 수 있는 역량과 예산 등을 가진 인력과 기술을 세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원하는 정보를 부처와 타 부처, 기관에서 정확하게 요청하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음. 빅데이터 분석이 의미있기 위해서는, 최근 4-5년의 경험을 비추어보면, 빅데이터의 수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막상 분석 단계에서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는 의미있는 분석이 되기 위한 중요 데이터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따라서 이러한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책부서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분석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아이디어를 같음하고,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데이터 소스는 어디서 가져오고, 코드 일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전 정보가 있어야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 혹은 지자체에서는 실제 수집 후에 데이터 분석을 실제로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모든 과정을 외부에 외주 맡기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외주의 경우에는 당장의 결과는 나타나지만, 다음 해에 연속성을 가지고 같은 분석을 진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음. (빅데이터 분석의 성공을 위해서는 분석의 목표(계획)와 실제 분석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제대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인프라가 중요하다
- 인프라에는 기술인프라(인력전문성, DB, System 구축 및 연계), 법제도인프라(법제, 팀/조직, 협업(governance)), 인식인프라(방

향성, 목표, data 공동활용, data 중요성 인식) 등이 있음

- 부처간 system 연계, DB 공유를 위한 적극적인 MOU, 협약 등 거버넌스 구축 등이 요구됨

IV

이민정보서비스원 연구/활동 확산 방안

1. 이민정책연구 현황— 국내 논문 및 보고서 현황
2. 이민정책연구 현황 - 국외 논문 및 보고서 현황
3. 소결 및 시사점 - 이민정책 및 정책 연구 관련

1. 이민정책연구 현황 - 국내 논문 및 보고서 현황

- 최근 10년간 국내 및 국외의 이민/외국인 정책과 관련하여 출판된 논문 및 보고서는 국내의 다수의 연구기관 및 저널에서 발간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이민/외국인 정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출판된 논문의 경우,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보, 한국행정학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외교사논총, 행정논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국제정치논총, EU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다문화교육연구와실천, 지중해지역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사회과학연구, 국제지역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의정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유럽연구, 인문과학연구, 국제지역연구, 공법학연구, 법학연구, 기업경영리뷰, 통일인문학, 인문사회과학연구, 초등도덕교육, 경제와사회, 한국과국가정치, 토지공법연구, 현대사회와다문화, 디지털융복합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다문화와평화, 법학논총, 동국사학, 공법학연구등에서 출판되고 있음
- 즉, 이민/외국인 정책 관련 논문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출판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논문의 연구대상 국가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음. 구체적으로 EU(유럽연합),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국가들,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국가들,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호주를 비롯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함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논문의 연구내용의 경우 이민정책, 망명 정책, 다문화정책, 통합정책, 이민복지정책, 이민자취업정책으로 유형화 시킬 수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논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안보, 안전, 고용, 문화, 교육, 경제, 복지, 문화, 법.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논문을 Lowi의 정책유형별(분배, 재분배, 규제, 구성 정책)로 유형화할 경우 그 내용에 있어서 모든 정책유형을 포함하고 있음

[표 35] 출판된 국내논문들의 유형화

연구 대상국가		연구내용		유형별		Lowi의 정책유형별	
국가명	논문 수	연구내용	논문 수	연구내용	논문 수	연구내용	논문수
한국	16	이민정책	28	법,제도	23	규제	27
				고용	9		
독일	7	다문화정책	11	교육	5	분배	15
EU (유럽연합)	6			고용,문화,교육,복지	4		
미국	4	이민,망명 정책	5	문화	3	분배,재분배	6
프랑스	4	이민정책,통합정책	4	법,제도,교육	3		
영국	3	이민정책,다문화정책	4	안보,안전	2	구성	5
호주	3			고용,교육	2		
러시아	1	이민자 취업 정책	3	고용,경제,교육	1	규제,분배	4
스웨덴	1			고용,경제,문화	1		
스위스	1	다문화정책,통합정책	2	고용,문화,교육,복지,양성평등	1	구성,규제	1
싱가포르	1			고용,문화	1		
일본	1	통합정책	2	교육,복지,문화	1	재분배	1

				복지	1		
다국가연구	11	이민복지정책, 다문화 정책	1	안보, 안전, 고용, 경제, 교육	1	규제, 분배, 재분배	1
				고용, 문화, 교육	1		
계	60	계	60	계	60	계	60

- 위의 표에서와 같이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의 연구 대상국가의 경우 한국(16), 독일(7), EU(6), 미국(4), 프랑스(4), 영국(3), 호주(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의 연구내용의 경우 이민정책(28), 다문화정책(11), 이민 및 망명정책(5), 이민 및 통합정책(4), 이민자 취업정책(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의 유형별 분류의 경우 법·제도(23), 고용(9), 교육(5), 고용·문화·교육·복지(4), 문화(3), 법·제도·교육(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을 Lowi의 정책유형별로 분류하면 규제(27), 분배(15), 분배·재분배(6), 구성(5), 규제·분배(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이민/외국인 정책과 관련하여 출판된 보고서의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IOM 이민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경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에서 출판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 관련 보고서도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출판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보고서의 연구대상 국가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음. 구체적으로 OECD 국가들,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비롯한 유럽국가들, 북미의 캐나다,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함.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보고서의 연구내용의 경우 이민정책, 난민정책, 다문화정책, 통합정책, 이민자취업정책으로 유형화 시킬 수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보고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안보, 안전, 고용, 교육, 경제, 복지, 법,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보고서를 Lowi의 정책유형별(분배, 재분배, 규제, 구성 정책)로 유형화 할 경우 그 내용에 있어서 모든 정책유형을 포함하고 있음
-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36]와 같음

[표 36] 출판된 국내보고서들의 유형화

연구 대상국가		연구내용		유형별		Lowi의 정책유형별	
국가명	보고서수	연구내용	보고서수	연구내용	보고서수	연구내용	보고서수
한국	13	이민정책	10	법,제도	6	규제	9
국제	2	난민정책	4	경제	3		
OECD	1			고용	3	분배	5
독일	1	이민자 취업정책	4	고용,경제	3		
영국	1			이민정책, 다문화정 책	2	교육	2
영국,독 일, 한국	1	다문화정 책	1			고용,교육, 복지	2
영국,네덜란 드,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1			이민정책,	1	교육,복지, 법,제도	1
중국, 필리핀,	1	고용,교육	1				

인도네시아		통합정책		안보, 안전	1		
캐나다, 한국	1						
계	22	계	22	계	22	계	18*

*4개의 보고서는 정책유형을 적용할 수 없는 보고서임

- 위의 표에서와 같이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국내보고서의 연구대상 국가의 경우 한국(13), 국제(2), OECD(1), 독일(1), 영국(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보고서의 연구내용의 경우 이민정책(4), 난민정책(4), 이민자 취업정책(4), 이민 및 다문화정책(2), 다문화정책(1), 이민 및 통합정책(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보고서의 유형별 분류의 경우 법·제도(6), 경제(3), 고용(3), 고용·경제(3), 교육(2), 고용·교육·복지(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을 Lowi의 정책유형별로 분류하면 규제(9), 분배(5), 분배·재분배(2), 구성(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이민/외국인 정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출판된 논문 및 보고서를 종합해서 유형화하면 다음의 [표 37]과 같음

[표 37] 출판된 국내 논문 및 보고서들의 유형화

연구 대상국가		연구내용		유형별		Lowi의 정책유형별	
국가명	논문수	연구내용	논문수	연구내용	논문수	연구내용	논문수
한국	29	이민정책	38	법, 제도	29	규제	36
독일	8			고용	12	분배	20
EU (유럽연합)	6			교육	7	분배, 재분배	8
미국	4	다문화정책	12	고용, 문화, 교육, 복지	4	구성	7

프랑스	4	이민자 취업 정책	7	문화	3	규제,분배	4
영국	4			법.제도,교육	3	구성,규제	1
호주	3	이민정책, 다문화정책	6	안보,안전	3	규제,분배,재 분배	1
러시아	1			경제	3		
스웨덴	1	이민,망명 정책	5	고용,경제	3		
스위스	1			고용,교육	3		
스페인	1	이민정책,통 합정책	5	고용,교육,복 지	3		
싱가포르	1	난민정책	4	고용,경제,교 육	1		
일본	1			고용,경제,문 화	1		
다국가연구	15	다문화정책, 통합정책	2	고용,문화,교 육,복지, 양성평등	1		
				통합정책	2		
		이민복지정책 ,다문화 정책	1				
				교육,복지,문 화	1		
				복지	1		
						안보,안전,고 용,경제,교육	1
						고용,문화,교 육	1
계	82	계	82	계	82	계	78*

*4개의 보고서는 정책유형을 적용할 수 없는 보고서임

- 위의 표에서와 같이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국내 논문 및 보고서의 연구대상국가의 경우 한국(29), 독일(8), EU(6), 미국(4), 프랑스(4), 영국(4)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국내 논문 및 보고서의 연구내용의 경우 이민정책(38), 다문화정책(12), 이민자 취업정책(7), 이민 및 다문화정책(6), 이민 및 망명정책(5), 이민 및 통합정책(5), 난민정책(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국내 보고서의 유형별 분류의 경우 법·제도(29), 고용(12), 교육(7), 고용·문화·교육·복지(4), 문화(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을 Lowi 의 정책유형별로 분류하면 규제(36), 분배(21), 분배·재분배(8), 구성(6)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이민정책연구 현황 - 국외 논문 및 보고서 현황

- 최근 10년간 이민/외국인 정책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출판된 논문의 경우,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Social Forces, People and place,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Patterns of Prejudice, Law & Polic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European Journal of Migration and Law,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Pastoralism,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British Politic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Journal of Refugee Studies,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등에서 출판되고 있음
- 즉, 국내 출판 논문과 마찬가지로 이민/외국인 정책 관련 국외 출판 논문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출판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국외 논문의 연구대상 국가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음. 구체적으로 EU(유럽연합), 그리스, 벨기에,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을 비롯한 유럽국가들, 미국, 캐나다,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북미 국가들, 한국,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함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논문의 연구내용의 경우 이민정책, 망명정책, 다문화정책, 통합정책으로 유형화시킬 수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논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안보, 안전, 고용, 문화, 교육, 경제, 복지, 양성평등, 문화, 법.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논문을 Lowi의 정책유형별(분배, 재분배, 규제, 구성 정책)로 유형화할 경우 그 내용에 있어서 모든 정책유형을 포함하고 있음

[표 38] 출판된 국외논문들의 유형화

연구 대상국가		연구내용		유형별		Lowi의 정책유형별	
국가명	논문수	연구내용	논문수	연구내용	논문수	연구내용	논문수
미국	19	이민정책	70	법,제도	19	규제	66
EU (유럽연합)	9			고용	18		
독일	6			복지	11		
스웨덴	5	이민정책, 통합정책	6	안보, 안전	10	분배	9
캐나다	5			교육	7		
영국	3	난민정책	3	고용, 복지	3	재분배	6
호주	2			안보, 안전, 고용	3		
핀란드	2			양성평등	2		
스페인	2	이민정책, 다문화정책	3	고용, 경제	2	규제 분배, 재분배	3
노르웨이	2			복지, 양성평등	2		
일본	2	다문화정책, 통합정책	2	문화	2	규제, 분배	1
프랑스	1			경제	1		
덴마크	1			안전	1		
코스타리카	1	이민, 다문화 통합, 정책	2	고용, 경제	1	규제, 재분배	1
그리스	1			고용, 경제	1		
뉴질랜드	1	이민, 망명 정책	1	경제, 문화	1	규제, 분배, 구성	1
이스라엘	1			고용, 양성평등	1		
		통합정책	1	고용, 경제, 복지	1		

이탈리아	1			고용,안보,안 전	1	분배, 재분배	1
다국가연구	25			고용,경제,교 육	1		
				고용, 교육, 경제, 복지	1		
계	88	계	88	계	88	계	88

*복지에는 인권이 포함됨

- 위의 표에서와 같이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의 연구 대상국가의 경우 미국(19), EU(9), 독일(7), 스웨덴(5), 캐나다(5), 영국(3), 호주(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의 연구내용의 경우 이민정책(70), 이민정책·통합정책(6), 난민정책(3), 이민 및 다문화정책(3), 다문화정책, 통합정책(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의 유형별 분류의 경우 법·제도(19), 고용(18), 복지(11), 안보·안전(10), 교육(7), 고용·복지(3), 안보·안전·고용(3), 양성평등(2)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을 Lowi의 정책유형별로 분류하면 규제(66), 분배(9), 재분배(6), 규제·분배·재분배(3)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이민/외국인정책과 관련하여 출판된 국외보고서의 경우 주로 Migration Policy Institute(MPI)와 OECD에서 발간되고 있음

[표 39] 출판된 국외보고서들의 유형화

연구 대상국가		연구내용		유형별		Lowi의 정책유형별	
국가명	논문수	연구내용	논문수	연구내용	논문수	연구내용	논문수

미국	30	이민정책	61	법,제도	21	규제	63
영국	4			고용,경제	12		
EU (유럽연합)	4	이민정책, 통합정책	9	고용	9	분배	11
독일	3			경제	6		
캐나다	2	통합정책	7	복지	5	규제,분배	7
터키	2			교육	4		
스페인	2	이민,망명 정책	7	고용,교육	3	구성	3
그리스	2			제도	3		
네덜란드	2	다문화정책	1	안보,안전	3	규제,분배,재 분배	2
노르웨이	2			국제협력	2		
스웨덴	2	이민,망명, 통합정책	1	고용 경제 제도	2	구성,분배	1
시리아	2			법,제도,문화	2		
중국	1	이민,통합, 다문화정책	1	고용,법,제도	2	구성,분배	1
체코	1			교육,복지	2		
포르투갈	1	이민,다문화 정책	1	고용,법,제도, 교육	2	규제,구성	1
프랑스	1			양성평등	1		
다국가연구 (OECD 국가 연구 포함)	27	이민,다문화 정책	1	경제,제도	1	계	88
계	88			기타	8		

*복지에는 인권이 포함, 유형별 항목의 기타 항목의 경우 (고용·교육·문화), (고용·복지·교육, 고용·법·제도·교육), (복지·교육·법·제도), (안보·안전·경제·문화) 등이 포함

- 위의 표에서와 같이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국외보고서의 연구대상국가의 경우 미국(30), 영국(4) EU(4), 독일(3), 캐나다(2), 터키(2), 스페인(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의 연구내용의 경우 이민정책(61), 이민정책·통합정책(9), 통합정책(7), 이민 및 망명정책(7), 다문화정책(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의 유형별 분류의 경우 법·제도(21), 고용·경제(12), 고용(9), 경제(6), 복지(5), 교육(4), 고용·교육(3), 제도(3), 안보·안전(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을 Lowi의 정책유형별로

분류하면 규제(63), 분배(11), 규제·분배(7), 구성(3), 규제·분배·재분배(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0] 출판된 국외 논문 및 보고서들의 유형화

연구 대상국가		연구내용		유형별		Lowi의 정책유형별	
국가명	논문수	연구내용	논문수	연구내용	논문수	연구내용	논문수
미국	49	이민정책	131	법,제도	40	규제	129
EU (유럽연합)	13			고용	27	분배	20
독일	9	이민정책, 통합정책	15	복지	16	규제,분배	8
스웨덴	7					재분배	6
캐나다	7	통합정책	8	고용, 경제	13	규제,분배, 재분배	5
영국	7	이민,망명 정책	8			안보,안전	13
스페인	4						
노르웨이	4	이민,다문 화정책	4	교육	11	그 이외 연구	5
프랑스	2						
그 이외 국가들 및 다국가연구	74	난민정책	3	그 이외 연구	56	계	176
		그 이외 연구	7				
계	176	계	176	계	176	계	176

□ 최근 10년간 이민/외국인 정책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출판된 논문 및 보고서를 종합해서 유형화 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 위의 표에서와 같이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국내 논문 및 보고서의 연구대상국가의 경우 미국(49), EU(13), 독일(9), 스웨덴(7), 캐나다(7), 영국(7), 스페인(4), 노르웨이(4)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국내 논문 및 보고서의 연구내용의 경우 이민정책(131), 이민·통합정책(15), 통합정책(8), 이민 및 망명정책(8), 이민 및 다문화정책(4), 난민정책(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국내 보고서의 유형별 분류의 경우 법·제도(40), 고용(27), 복지(16), 고용·경제(13), 안보·안전(13), 교육(1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을 Lowi 의 정책유형별로 분류하면 규제(129), 분배(20), 규제·분배(8), 재분배(6), 규제·분배, 재분배(5), 구성(3)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종합해보면 최근 10년간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출판된 논문 및 보고서의 경우 국내의 경우에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연구내용의 경우 이민정책, 다문화정책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국외의 경우에도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및 보고서가 주를 이루고 있고 연구 및 보고서의 내용의 경우 이민정책, 통합정책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에는 법·제도연구 및 고용, 교육에 관한 연구 및 보고서가 주를 이루고 있고 Lowi의 정책유형별로는 규제정책 및 분배정책에 관한 연구 및 보고서가 주를 이루고 있음
- 한편 국외의 경우에는 법·제도연구 및 고용, 복지, 경제, 안보, 안전에 관한 연구 및 보고서가 주를 이루고 있고 Lowi의 정책유형별로는 규제, 분배, 재분배정책에 관한 연구 및 보고서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이러한 연구들에 추가로 특히 외국인/이민자 출입국 관리와 관련하여 출판된 논문들의 경우 법·제도에 관련된 논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3. 소결 및 시사점 - 이민정책 및 정책 연구와 관련

[표 41] 주요 외국들의 상이한 이민/외국인정책 동향

국가	주요현황
일본	무례한 행동을 이유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거부하는 관광지 증가
미국	무슬림 입국 금지령에 따라 2018년 회계연도 비자 발급 감소
캐나다	2018년 학생비자로 입국한 인도인 2015년 대비 3배 증가
독일	외국인 요양 보호사, 간병인 증가
이탈리아	2018년 외국인 혐오범죄가 전년 대비 약 2.7배 증가, 이러한 외국인 혐오 범죄는 자국의 경제·사회 문제를 외부에서 유입된 외국인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로인해 혐오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
그리스	투자이민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 추진
덴마크	임시 체류허가를 받은 시리아인 난민에 대해 귀환 방법 검토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2019)

○ 위의 [표 38]에서의 내용과 같이 주요 외국들의 최근 이민정책 동향은 역사적으로 이민자 유입 배경이나 특성에 따라 다른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구분배제, 동화, 통합 및 다문화주의와 같은 이민자 편입정책이 이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구분배제(differential exclusion), 동화(assimilation), 통합(integration) 및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구분배제형은 교체순환을 원칙으로 하며 이주민의 정주를 허용하지 않는 특징으로 함
- 동화형 편입은 이민자를 수용국 문화에 일방향적으로 통합하는 정책인 반면에 통합형 편입은 수용국과 이민자의 문화가 상호영향을 주고 받으며 통합되어 가는 방식임
- 다문화 정책은 이민자가 집단적으로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며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보장받는 유형임

- 캐나다, 호주, 미국, 스웨덴의 경우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동화주의를 정책 기조로 채택하고 있음

○ 한편 다음의 [표 42]에서 같이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국가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전문 직종 유치 및 단계별 이민자 유입 정책을 포함한 이민자 유입정책의 경우 정책의 목표와 대응이 유사해지는 경향도 나타남

[표 42] 주요국의 유사한 이민/외국인정책 동향

내용	유사 이민/외국인 정책 동향
유입정책: 1. 전문직 선호 경향비자 정책 등을 통한 특정 분야의 우수 인재들의 취업촉진 · 유도 및 이들의 장기 거주를 장려 2. 단계별 이민자 유입 정책: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한시적 자격으로 입국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이 증가	
국가	이민/외국인 정책 내용
미국	H-1B 비자를 통해 세계 정보기술 전문기술자들을 흡수하고 있음, 단기별 이민자 유입정책의 경우, 학생비자 F-1 비자로 미국 대학 학부나 대학원을 졸업한 유학생은 신청자에 한해 취업전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1년간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는 한편 STEM 분야의 졸업생에게는 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줌
캐나다, 호주	전문 기술직 종사자들의 한시적 취업 허용 후 고용주 추천이나 지방정부 추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호주의 경우 과학 · 기술 · 공학 · 수학 (STEM) 이나 IT분야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점수제를 통해 영주이민 신청을 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
일본	유학생을 유치하여 학업 중과 졸업 후 이들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2013년 기준으로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유학생은 13만 6,000명이고 그 규모가 캐나다(13만 5,000 명)와 유사한 수준 임
동남아시아 국가들	전문 인력과 비전문인력을 구분하여 전문 기술자에 한해 영주이민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EU 회원국	전반적으로 합의된 이민정책 방향 즉, 비 EU 회원국 출신자의 선별적 이민을 허용하고 있으나 각국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특성에 따라 고유의 이민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출처: 이창원(2017)을 재구성

- 즉, 주요국의 이민정책의 동향은 공통적으로 이민자 유입정책을 취하면서도 각국의 이민자 유입 배경이나 특성 및 고유한 이민자 편입정책에 따라 상이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한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 이후 주로 고임금화, 3D업종 기피, 저출산 현상 등의 추세에 따라 이민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거주 불법 체류자를 제외한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2006년 536,627명, 2007년 722,686명, 2008년 891,341명, 2009년 1,106,884명, 2010년 1,139,283명, 2011년 1,265,006명, 2014년 8월 말에는 171만 명, 2015년 19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이규용, 2014; 이규용 외, 2015; 이삼식, 2011)
 - 체류 외국인의 유형도 기존의 단순노무 분야 종사자 중심에서 결혼이민자, 유학생, 투자가 등으로 구성이 다양화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2017년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을 비자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문취업비자(H-2) 238,880 명, 재외동포(F-4) 415,121명, 비전문 취업비자(E-9) 279,127 명, 결혼이민(F-6) 122,523명, 영주(F-5) 136334 명, 유학(D-2) 86,875 명임(법무부: 출입국통계 월보)
 - 한국의 외국인 편입 정책의 경우 동화주의(결혼이주자)와 구분배제(외국인 노동자)를 혼용하고 있음

- 종합해 볼 때 한국의 이민/외국인 정책은 주요 외국들의 이민/외국인 정책흐름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시사점

- 따라서 위와 같은 이민/외국인 정책관련 연구DB 이외에 새로 설립 될 이민정보서비스원의 경우 실질적인 이민 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연구 및 보고서 발간을 통한 연구DB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 이민정책연구원과의 인터뷰 결과 이민정책연구원의 경우 주로 이민정책연구보고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크게 외국인 도입, 사회통합, 인권, 문화다양성, 안전 및 국제협력으로 분류가 가능함이 확인됨. 그중 사회통합 정책은 여성정책연구원과 중복되는 점이 있음
- 그리고 이민정보서비스원 설립 시 요청되는 정보는 이민자 가족(가구)단위 정보 및 세금, 요금, 건강보험, 의료보험에 관한 정보, 연도별 세입·세출에 관한 정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에 대한(NGO 등) 정보가 요청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이민정보 서비스원 설립시 요청되는 연구 DB는 이민자 가족(가구) 단위에 관한 연구, 가족(가구)단위의 세금 및 각종 보험에 관한 장·단기추세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세입·세출을 활용한 다양한 재정 및 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기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이민정보서비스원 설립 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1.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협력방안
2. 기능 연계를 통한 협력방안
3. 국제 이민 네트워크 강화

제5장 이민정보서비스원 설립 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1.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협력방안

- 이민정보서비스원 설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함
-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설립은 다양한 참여자들의 협력이 필요해짐과 동시에 기존 조직과 새로운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이 요구됨
 - 더불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참여자들 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 때 해결의 주요기제로 활용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임
-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공공기관이 공식적인 의견일치를 추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집합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킴(Ansell&Gash, 2007)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향후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기능 연계를 통한 협력 방안, 국제 이민 거버넌스 구축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설명함

1) 이민관련 데이터 거버넌스

- 이민정보서비스원의 내부 DB 센터를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음

○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란 통상 기업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가용성, 유용성, 통합성, 보안성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세스를 다루며 프라이버시, 보안성, 데이터품질, 관리규정 준수를 강조하는 것을 의미함(Laudon and Traver, 2011)

- 광의의 개념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자산 관리에 대한 권한, 통제 및 공유된 의사 결정의 행사를 의미(Ladley, 2012)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출입국 심사, 체류 연장 등 출입국 체류 서비스 및 관련 정보들은 향후 이민정보서비스원 내 DB를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책, 지침,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함

○ 데이터의 공유·교류를 통해 데이터 및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정책, 지침, 표준, 전략 및 방향 수립, 데이터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 및 조직 구성 등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도입이 필요함

○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포괄한 국가 전체 데이터 자산 관리에 대한 권한, 통제, 의사 결정으로 개념 정의함

○ 공공 데이터는 물론 민간 데이터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의 정립이 필요함

○ 이민정보서비스원에서 관리할 DB는 정보 DB 측면에서 외국인종합지원 DB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포털(정보제공), 외국인 민원(법무부, 고용노동부), 투자촉진(산업통상자원부)의 서

비스를 DB 이관과 함께 넘겨받아 관리·운영할 수 있음

- DB (가칭)외국인종합지원 DB와 Bigdata DB의 구축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이민정보서비스원에서는 해당 데이터 관리를 위한 사업 지원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법무부, 타 부처, 타 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한 DB 거버넌스

- 성공적인 빅데이터 축적 및 분석,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database) 자체 보다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가 중요
- 필요한 데이터 리스트를 공유하고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부처 및 유관기관, 시스템 간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임
 - 기존 업무 방식은 소관 부처·부서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공유는 부족함
 - 소관 부처·부서 및 관련 기관 간 데이터 관리에 대한 상호 간 업무 공유가 필요함
- 데이터 분류 체계 및 업무 간 상호 호환을 위한 표준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데이터를 수집만 했던 기존 운영에 추가적이고 보완적인 데이터를 활용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에는 이민정보서비스원의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민 관련 연구기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이 요구됨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출입국 관리를 디지털화 하도록 기대됨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현재 아날로그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수집된 데이터를 디지털화 함으로써 법무부의 업무 중 출입국 체류 관리와 관련하여 반복적인 서류 제출 작업 프로세스를 단축시킬 수 있음
- 호주의 경우, 1996년 증가하는 출입국 건수를 관리하기 위해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 시스템을 도입함
 - 종이 지원서와 전자권한으로 33개의 “low risk” 국적에 비자 발급을 자동화하고 지원자의 최소한 정보만 수집해 이민관련행정의 발전을 가져와 현재 95%의 비자신청이 전자로 처리되고 있음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호주의 사례를 통해 ETA 구성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할 수 있고 기존에 법무부가 할 수 있었던 한정된 작업을 도와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2. 기능 연계를 통한 협력방안

1) 중앙부처 차원의 업무 연계 필요에 따른 거버넌스

- 이민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민 정책지향도 달라지고, 이민 행정서비스도 이에 맞추어 변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관련 업무를 고유 업무영역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

런 부처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필요로 함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법무부뿐만 아니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내에 정책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타 부처와도 이민협력의 목표와 틀을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정책 관련 정보를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통계·연구 기반을 구축해야함
- 현행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추진과제 중 법무부와 공동 세부추진과제로 포함된 부처로는 과학기술정통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통계청 등 9개 부처와 3개 청이 있음
- 기본계획에서 이민자와 관련된 정책은 어느 한 부처 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정책에 내재되어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앙부처 차원의 통합적 정책을 가능하도록 부처 간 협력을 법적·제도적으로 강제할 방안은 없음
- 이에 대해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설립은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부처 간 세부목표에서 서로 쟁점이 잘 포함되도록 하여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질 매커니즘을 형성하는 역할을 함
- 다양한 정책과제별 소관 다부처 및 네트워크를 [표 43]와 [그

림 45]와 같이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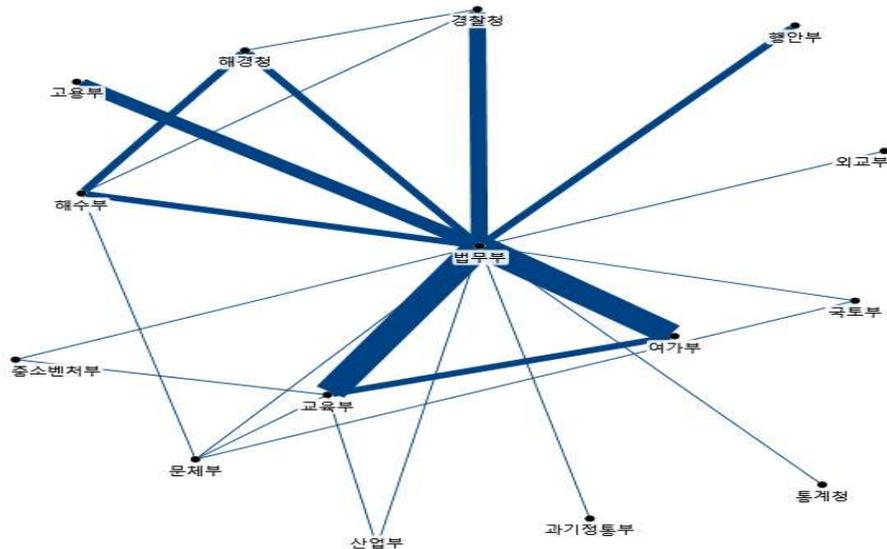
- [그림 45]와 같이 강한 연계를 필요로 하는 소관부처들과 이
민정보서비스원의 관계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필요로 함을 예
상할 수 있음
- 따라서 업무 연계의 강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표 43]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별 소관부처

정책과제별	추진과제		세부과제	소관부처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유치 및 정주 인프라 강화	정주환경 개선	법무부, 과기정통 부
		성장지원 확대	학습, 적응지원 강화	교육부, 법무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비전문직 취업이민자 유입·활용 체계 고도화	정주화 방지 강화 유입단계 검증 제도 개선	법무부, 고용부 법무부, 고용부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추진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민자 친화적 생활환경 개선	전자민원·생 활정보 서비스 확충	법무부, 여가부
		이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유기적 사회통합교육 실시	강사 역량 강화	법무부, 고용부, 여가부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성장주기별·대상특 성별 지원정책 강화	입국초기 학교생활 및 사회적응 지원 확충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거주 환경 및 의료 서비스 개선	집중거주지 역환경개선	법무부, 행안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국익위해 외국인 출입국 차단 시스템 구축	환승관리 강화	법무부, 국토부
		해상을 통한 출입국 관리 체계 강화	안전한 해상국경 관리 관계기관 공조 강화	법무부, 해수부, 해경청 법무부, 해수부, 해경청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불법체류 발생 억제 및 범질서 준수 촉진	세금·건강보 험부당이득 금 등 납부 유도	법무부, 경찰청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실태조사 및 순찰 강화 민관 협력 활성화	법무부, 경찰청 법무부, 경찰청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체계적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위기·재난 대응 체계 확충	행안부, 법무부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 강화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인권증진방안 마련	교육부, 법무부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	공공부문 프로그램 강화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난민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난민관련 국제협력 강화	외교부, 법무부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중앙부처 차원의 통합적 정책기능 고도화	위원회 협력 증진 기본계획간 연계 강화	법무부, 여가부 법무부, 여가부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이민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이민관련 연구기반 강화	공무원 교육 강화 통계기반 구축	법무부, 행안부 법무부, 통계청

[그림 48 제3차외국인기본계획 정책과제별 정책참여기관 네트워크



* 정책과제별 정책참여기관 공유 사업 횟수를 링크 두께로 표현함

2) 이민 전문연구기관과의 거버넌스

- 이민자 증가에 따른 밀집지역 관리, 불법체류 다발 지역업종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의 제시가 가능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와 유관 부처, 이민연구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국내 및 국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유학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임
 - 이민정책은 관련 분야가 많은 특성상 정책 유형 및 정책 대상별로 소관 부처가 다양함으로 정책 대상별 및 정책 유형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이민환경 변화에 따라 중요한 정책대상자로 부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이 미흡했던 경우가 존재함
 - 국내 및 국외 교육기관과의 유학생DB를 공유함으로써 해외유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유학생정보시스템(FIMS)를 통해 학교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이민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사업에 대한 협력을 할 수 있음
 - 현재 이민관련 연구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서 이민관련 데이터 수집, 관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을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예를 들어, 이민정보서비스원에서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기관에서는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고, 연구결과를 한시적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민정보서비스원과 연구기관의 공동 세미나를 통해 발표할 수 있음
-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대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됨

3. 국제 이민 거버넌스 네트워크 강화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이민관련 전문 국제기구와 실무적 협력이 필요함
 - 이민환경 변화에 따라 이민대상자들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정책대상자로 부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민대상자의 국가와 협력이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
 - 이민정보서비스원의 설립은 국제정치 속에서 국제이민협력도약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음
 -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현재 법무부 및 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이민 논의를 협력해오고 있음
 - 추진되는 국제이주 관련 다양한 연구 및 교육,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서 국제적인 이민동향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을 이민정보서비스원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엔난민기구(Office of the United Natio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 UNHCR)는 난민 관련 국제회의나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주로 주관하는데 기존에는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음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그동안 법무부가 노력해 온 이주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무적 협력을 함께 함으로써 국제 이민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제이민협력을 위해 다른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해야함

- 이민협력은 다자협력과 양자협력으로 크게 구분되며, 양자 협력은 주로 정보 및 인적교류와 정책 공조를 위한 네트워킹 활동이 주가 되어옴

-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해 이민당국의 공무원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 이민정보서비스원은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양자 협력 관계에 있는 이민당국의 공무원들에게 정보역량을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외국인정책 관련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통계·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이민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을 이민정보서비스원의 기능으로 봄

참고문헌

- 강동관, 정영태, 박민정, 장주영. (2018). 한국의 이주동향 2018. IOM이민정책연구원.
- 강동관. (2016).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기여효과. IOM 이민정책 연구원.
- 강휘원, 강성철. (2010). 독일 이주정책의 변화와 사회통합 거버넌스.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4), 291-316.
- 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웹사이트]. (2019.03.22).
- 고혜원, 김숙이, 이로미. (2011). 한국, 대만, 캐나다의 이민자 취업지원 정책의 비교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4), 207-233.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웹사이트]. (2019.03.22.).
- 곽윤경, 김미혜. (2018). 영국의 결혼이주정책 고찰. EU학 연구, 23(3), 37-59.
- 곽윤경, 정기선. (2015). 영국의 난민정책과 통합지원서비스. IOM 이민정책 연구원.
- 곽채기. (2009).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분석 및 혁신방안: 중앙정부(준정부 기관·기타공공기관)와 지자체(출자·출연기관)의 준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 교육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IOM 이민정책 연구원.
- 구춘권. (2012). 이주의 증가와 독일 이주민정책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21(1), 119-154.
- 국방부. (2017). 국방기록관 업무효율화를 위한 방안 연구.
- 국회예산정책처. (2019). 2019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
- 권형진. (2014). 통일 이후 독일 이민정책의 변화. 통일인문학, 57, 125-160.
- 기재부의 끝없는 영토확장...재정정보원은 또 뭐가. (2016.01.29.).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6012994001>
- 길강목. (2011).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현황과 과제. 다문화사회연구, 4(2), 139-168.
- 김경찬·장레이·Amelya Gustina. (2018). 외국의 강제추방 법제연구.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 김기선. (2016). 독일의 이민정책과 이민정책 추진체계. 노동법논총, 37, 111-158.
- 김대근. (2016).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관련 규정 정비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동관, 김원숙, 민지원, 박성일, 양윤희, 이상지, 현채민. (2017).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IOM이민정책연구원.

- 김명용. (2018). 유럽연합의 이주·망명정책의 법적 문제. 공법학연구, 19(4), 545-567.
- 김미나. (2009). 다문화 사회의 진행 단계와 정책의 관점: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 연구. 행정논총, 47(4), 193-223.
- 김복래. (2009). 프랑스, 영국, 미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교고찰. 유럽연구, 27(1), 207-236.
- 김성배. (2017). 미국 이민법체계와 이민법제의 발전과정에서의 시사점. 토지공법연구, 79, 711-735.
- 김수현. (2016. 01. 29). 나랏돈 씹씹이 총괄하는 한국재정정보원 설립된다. 연합뉴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6/01/82030/>
- 김숙령, 이선희. (2013).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이민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40(4), 503-521.
- 김용찬. (2018). 유럽 국가의 노동이주정책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8(2), 23-67.
- 김용태. (2018). 건국 초 미국의 시민권 정책과 국가 정체성 -이민과 귀화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를 중심으로-. 동국사학, 65, 5-46.
- 김종세. (2012).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교육정책에 관한 인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48, 27-48.
- 김진현. (2012). 의료심사평가 12 년의 성과와 과제. HIRA 정책동향, 6 (5), 4-12.
- 김태환. (2016). 한국 이민정책의 배제·동화프레임 :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이민정책학회보, 1(1), 117-150.
- 김현정. (2011). EU 공동이민정책이 노동이주에 미치는 영향. EU연구, 28: 59-92
- 김호연. (2011). 미국의 동화주의적 이민자 정책과 다문화주의. 인문과학연구, 28, 247-268.
- 김환학, 오정은, 최서리, 한태희, 이승복, 박가영, 신예진. (2017).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IOM 이민정책 연구원.
- 김희강, 류지혜. (2015). 다문화시대의 이민정책. 한국행정학보, 49(1), 223-244.
- 민지원. (2017). 캐나다 정책을 통해 본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와 국내제도 개선방안. IOM 이민정책 연구원.
- _____. (2018). 난민지위 결정을 위한 ‘젠더 가이드라인’ 에 대한 국제적 법제 및 사례 연구. IOM 이민정책 연구원.
- 박경순, 윤도현. (2009). 세계화와 이민정책 - 독일의 2005년 『이민법』 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19(2), 113-140.
- 박동열. (2010). 프랑스 이민정책과 언어정책. 다문화교육 연구와 실천, 2, 19-42.

- 박명준. (2014). 스위스의 이민정책과 이민행정체계. 한국이민학, 5(1), 5-28.
- 박선욱. (2018).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정책 비교 - 주요 EU국가와 한국의 사례 -. 법학논총, 42(2), 185-217.
- 박선희. (2010). 프랑스 이민정책과 사르코지(2002-2008년). 국제정치논총, 50(2), 193-211.
- _____. (2011). EU의 공동이민망명정책의 외재화와 그 문제점. 유럽연구, 29(1), 39-63.
- 박시내 · 손희경 · 홍상혁. (2016).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개발. 통계개발원
- 박재창. (2019). 한국의 이민정책과 학문 공동체의 책무. 2019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행정연구원 하계 공동학술대회.
- 박채복.(2008). 유럽연합의 이민 및 망명정책: 평가 및 전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0(1): 107-134
- 배경열. (2017). 제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한국콘텐츠학회지, 15(1), 29-34.
- 배소진, (2015. 11. 16.). 野에 '미운털' 박힌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법 무산위기.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111618277637277>
- 법무부. (2012). 해외 각 국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연구.
- _____. (2018a).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_____. (2018b). 한국형 이민통합 정책지수 개발 연구용역,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_____. (2018c).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12월호.
- _____. (2018d). 이민기록정보원 설립방안 및 타당성 연구 최종보고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_____. (2018e).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 법무부.
- 사회보장정보원. (2018). 수입지출현황.
- _____. (2019.03.22.). [웹사이트]
- 설동훈. (2010).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쟁점과 전망. 한국이민학회, 1(1), 5-28.
- _____. (2015).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이민정책. 경제와사회, 1060, 73-114.
- _____. (2017). 한국의 이민자 수용과 이민행정조직의 정비. 문화와 정치, 4(3), 85-122.
- 설동훈, 이병하. (2011). 스웨덴의 이민정책과 추진체계. 한국이민학, 2(2), 5-20.
- 설동훈, 전진영. (2016). 국회의 이민정책 결정과 정당정치: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한국과국제정치(KWP), 32(2), 137-172.
- 성연욱. (2013). 미국, 캐나다, 호주의 다문화주의 비교 연구. 기업경영리뷰, 4(2),

23-44.

- 송효준, 함승환. (2019).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돕는가? 이주 배경 청소년의 교육적 통합 양상 재검토. 사회과학연구, 45(1), 127-149.
- 신상록. (2017). 체류자격외 활동을 위한 매개 요인 연구: 결혼이민자의 가족취업을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회보, 2(3), 57-70.
- 신윤정 외. (2018).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 이주 배경 아동의 발생·성장 환경 분석. IOM 이민정책 연구원.
- 신재주. (2010). 일본, 독일, 호주의 다문화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17(3), 5-37.
- 신지원. (2010). 이민자 통합정책과 다층적 통합거버넌스: 영국, 독일,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IOM 이민정책 연구원.
- 신지원 · 육주원 · 김철효 · 신예진 · 박동혁 · 레베카 윌리엄슨 · 엘사 콜레스. (2011). 이민정책 해외사례 연구: 다문화 정책의 최근 논의를 중심으로. IOM 이민정책 연구원.
- 심성보. (2014). 호주 다문화주의의 역사적 변화와 다문화교육 정책. 초등도덕교육, 45(0), 183-208.
- 여성가족부 (2018). 연도별 다문화가족통계. 여성가족부.
- 오정은. (2018). 독일 통일이 이민정책에 미친 영향: 동·서독 인구 이동과 외국인 노동자 수요의 관계를 중심으로. IOM 이민정책 연구원.
- 오정은 · 김경미 · 문경희 · 박정해 · 송석원 · 안상욱. (2013). 미성년 이민자 관련 정책 및 법제 분석. IOM 이민정책 연구원.
- 온대원. (2010). 영국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EU연구, (26): 239-267
- 외국인정책위원회. (2019). 2019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법무부.
- 우기봉. (2011). 이민행정 법제에 관한 국제적 비교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유숙란. (2010). 독일의 이민정책 결정과정 분석. 국제정치논총, 50(2), 213-235.
- 육주원, 신지원. (2012).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격과 영국 다문화주의 정책 담론의 변화. EU연구, (31), 111-139.
- 윤광석 · 박경돈 · 지규원. (2016). 정책수립 시 데이터 활용 강화방안 연구. (연구보고 2016-04).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윤정향. (2009). 외국인력 수요분석 및 활용방안. 한국고용정보원
- 윤혜선. (2012).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단초로서의 이민제도의 고찰. 공법학연구, 13(2), 381-425.
- 이규용 · 김혜순 · 송영훈 · 최서리. (2018). 한국사회의 이민과 통합 연구. 한국

노동연구원

- 이규용. (2014).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노동리뷰, 7-31.
- 이규용, 노용진, 이정민, 이해경, 정기선, 최서리. (2014).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 김기선, 정기선, 최서리, 최홍엽. (2015). 이민 정책의 국제 비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대창, 설동훈, 강준원. (2011).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추가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이로미, 장서영. (2010). 다문화국가 이민자 정착 정책 및 지원 서비스 분석: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4(1), 179-208.
- 이병하. (2011). 한국 이민관련 정책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의정연구, 32(0), 71-104.
- 이삼식. (2011). 외국의 이민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110, 1-8.
- 이상윤. (2014). 한국 이민·다문화 정책 추진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 25(3), 175-204.
- 이선필. (2008). 유럽연합 공동이민망명정책의 발전과 배타성 연구. EU연구, (23): 3-27.
- 이수영, 이주실, 박희정, 전대성. (2017).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과제 발굴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정향, 손영기. (2014). 일본의 이민법제와 외국인정책의 동향. 인문사회과학연구, 15(1): 31-56
- 이종서. (2010). EU의 공동이민·망명정책. 초국적 대응 프로그램의 배경과 한계. 유럽연구, 28(1), 169-201.
- 이종윤. (2010). 한국의 다문화정책 관련법에 관한 일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4), 163-185.
- 이창원. (2017). 이민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과제. 국제사회보장리뷰, 1:67-81.
- 이채문. (2011).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러시아의 이민정책. 대한정치학회보, 18(3), 79-112.
- 이충훈. (2011). 21세기 미국의 이민정책. 한국이민학, 2(1), 61-74.
- 이향수, 이성훈. (2018).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사례 : 호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6(5), 13-20.
- 이향수. (2017). 이주민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독일사례연구. 한국이민정책학회보, 2(2), 25-47.
- 이혜경. (2008). 한국 이민정책의 수렴현상. 한국사회학, 42(2), 104-137.

- 임동진. (2018). 호주 이민정책의 변동과정 및 정책지향 분석: 단속평형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2(1), 57-87.
- 임동진, 이규홍. (2016). 주요국의 투자이민제도의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미국, 캐나다, 호주, 홍콩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회보, 1(1), 61-87.
- 우기봉. (2011). 이민행정 법제에 관한 국제적 비교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8). 연도별 다문화가족통계, 2018.
- 장나나. (2010). 프랑스 이민정책에 따른 이민자 언어-문화 교육 상황과 정책에 관한 고찰. 지중해지역연구, 12(2), 95-114.
- 장서영, 김이선, 이로미, 장인자, 유지영. (2010).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장선희. (2014). 독일의 이민정책의 변화와 사회통합 관련법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5(4), 31-58.
- 장주영. (2018). 이주민 자영업 종사자의 현황과 특성. IOM 이민정책 연구원.
- 전대성, 김동욱, 이주실. (2018). 이민기록정보원 설립방안 및 타당성 연구.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정기선. (2016).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정명주. (2010). 정책수단 분석을 통해본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특성. 사회과학연구, 26(2), 275-295.
- 정명주. (2012). 한국 외국인정책의 정책체계 분석. 사회과학연구, 23(4), 291-317.
- 조경엽, 강동관. (2014). 이민 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경제연구원
- 조영희, 신지원, 최서리, 오정은, 강동관, 정기선, 김지예. (2013). 이민정책과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개발친화적 이민정책의 모색. 외교부
- 조영희, 박민정. (2018).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이민·다문화정책
- 주성돈. (2016).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화와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이민정책학회보, 1(1), 89-115.
- 차용호. (2015).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이민정책에 관한 외부환경 변화와 정책기업가의 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최경수. (2011).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 한국개발연구원
- 최서리, 이창원, 김웅기, 정혜진. (2014). 국제비교를 통한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

- 관리정책 개선방안 연구. IOM 이민정책 연구원.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2019). 주요국의 이민 정책 동향
통계청. (2018).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통계청
통계청. (2016). 장래인구추계: 2015 ~ 2065.
- 한경구, 설동훈, 이철우, 이충훈, 이해경, 정기선, 한건수. (2012). 해외 각 국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03.22.). [웹사이트]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8).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 한국데이터베이
스진흥센터.
- 한국문화정보원. (2019.03.22.). [웹사이트]
- 한국은행. (2017).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 한국재정정보원. (2019.03.22.). [웹사이트]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데이터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과학적 정책 수립
방안.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오픈 데이터 해외 주요 동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증거기반적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
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한승준. (2008).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
행정학보, 42(3), 463-486.
- 한준성. (2018). 스페인의 이민정치: ‘불법성’의 생산과 2005년 합법화 정책.
다문화와 평화, 12(3), 133-157.
- 행정자치부. (2016). 다문화가족 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보도자료.
- 허준영. (2017). 국가발전과 통합 제고를 위한 이민행정체계 구축방안. 한국행정
연구원.
- 황택환. (2019). 정책네트워크모형을 통한 이민정책 사례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
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Aaker, David A. (2008). *Spanning Silos: The New CMO Imperative*. Cambridge,
MA: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 Abel, G. J., & Sander, N. (2014). Quantifying global international migration
flows. *Science*, 343(6178), 1520-1522.
- Akbari, A. H., & MacDonald, M. (2014). Immigration policy in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and the United States: An overview of recent
trend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8(3), 801-822.

- Alden, E. (2011). National security and US immigration policy. *John's J. Int'l & Comp. L.*, 1, 19.
- Alberto Alesina, Johann Harnoss, Hillel Rapoport. Immigration and 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in Europe. 2018. < halshs-01707760 >
- Ali, S., & Gidley, B. (2014). Advancing Outcomes for All Minorities: Experiences of Mainstreaming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in the UK. Brussels: MPI Report.
- Ambrosini, M. (2013). 'We are against a multi-ethnic society' : policies of exclusion at the urban level in Italy. *Ethnic and Racial Studies*, 36(1), 136-155.
- Ansell, C., & Gash, A. (2008).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 Arango, J. (2016). Spain: new emigration policies needed for an emerging diaspora. Migration Policy Institute.
- Arcaz, D. A., & Freier, L. F. (2015). Turning the immigration policy paradox upside down? Populist liberalism and discursive gaps in South America.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9(3), 659-696.
- Australian Government[웹사이트]. (2019.03.22.)
- Aydin, Y. (2016). The Germany-Turkey migration corridor: Refitting policies for a transnational age. *Transatlantic Council on Migration, A Project of Migration Policy Institute*, 1-22.
- Azzolini, D., Schnell, P., & Palmer, J. R. (2012). Educational achievement gaps between immigrant and native students in two "new" immigration countries: Italy and Spain in comparis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43(1), 46-77.
- Bale, T. (2008). Turning round the telescope. Centre-right parties and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y in Europe.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5(3), 315-330.
- Balin, B. (2008). State immigration legislation and immigrant flows: An analysi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 Banulescu-Bogdan, N. (2011).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EU Migration Policy: Perspectives on the European Union's engagement in its neighborhood. Migration Policy Institute.
- Bedford, R., & Spoonley, P. (2014). Competing for talent: diffusion of an

- innovation in New Zealand's immigration polic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8(3), 891-911.
- Benton, M., Fratzke, S., & Sumption, M. (2014). Moving up or standing still? Access to middle-skilled work for newly arrived migrants in the European Union. A Series on the Labor Market Integration of New Arrivals in Europe: Employment Trajectories, Washington DC/Genf.
- Bhuyan, R. (2012). Negotiating citizenship on the frontlines: How the devolution of Canadian immigration policy shapes service delivery to women fleeing abuse. *Law & Policy*, 34(2), 211-236.
- Bhuyan, R., Osborne, B., Zahraei, S., & Tarshis, S. (2014). Unprotected, Unrecognized: Canadian Immigration Policy and Violence Against Women, 2008-2013.
- Birrell, B., & Perry, B. (2009). Immigration policy change and the international student industry. *People and Place*, 17(2), 64.
- Bolin, N., Lidén, G., & Nyhlén, J. (2014). Do Anti-immigration Parties Matter? The Case of the Sweden Democrats and Local Refugee Policy.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7(3), 323-343.
- Boräng, F., & Cerna, L. (2017). Constrained Politics: Labour Market Actors, Political Parties and Swedish Labour Immigration Policy. *Government and Opposition*, 1-24.
- Borevi, K. (2014). Multiculturalism and welfare state integration: Swedish model path dependency. *Identities*, 21(6), 708-723.
- Breaking New Ground: Ten Ideas to Revamp Integration Policy in Europe(2019): Migration Policy Institute.
- Brochmann, G., & Hagelund, A. (2011). Migrants in the Scandinavian Welfare State. *Nordic Journal of Migration Research*. 13-24.
- Burgoon, B. (2014). Immigration, integration, and support for redistribution in Europe. *World Politics*, 66(3), 365-405.
- Burgoon, B., Koster, F., & Van Egmond, M. (2012). Support for redistribution and the paradox of immigration.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2(3), 288-304.
- Buzdugan, R., & Halli, S. S. (2009). Labor market experiences of Canadian immigrants with focus on foreign education and experienc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3(2), 366-386.

- Campos-Vazquez, R., & Sobarzo, H. (2012). The Development and Fiscal Effects of Emigration on Mexico. Migration Policy Institute.
- Canada Justice Laws Website[웹사이트]. (2019.03.22.)
- Cangiano, A. (2012). Immigration policy and migrant labour market outcomes in the European Union: New evidence from the EU Labour Force Survey. The 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
- Capps, R., & Newland, K. (2015). The integration outcomes of US refugees: Successes and challenges. Migration Policy Institute.
- Capps, R., Fix, M., & Lin, S. Y. Y. (2010). Still an Hourglass?: Immigrant Workers in Middle-skilled Jobs. Migration Policy Institute.
- Capps, R., McCabe, K., & Fix, M. (2011). New streams: Black African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Migration Policy Institute.
- Capps, R., Rosenblum, M. R., & Fix, M. (2009). Immigrants and health care reform: What's really at stake?. Migration Policy Institute.
- Carrera, S., & Hernández i Sagrera, R. (2009). The externalisation of the EU's labour immigration policy: Towards mobility or insecurity partnerships?. CEPS Working Document, (321).
- Carvalho, J. (2014). British and French policies towards high-skilled immigration during the 2000s: policy outplays politics or politics trumps policy?. *Ethnic and Racial Studies*, 37(13), 2361-2378.
- Cavounidis, J. (2015). The changing face of emigration: Harnessing the potential of the new Greek diaspora. Migration Policy Institute.
- Cerna, L. (2009). Changes in Swedish Labour Immigration Policy : A Slight Revolution?(SULCIS reports and working papers). Retrieved from <http://urn.kb.se/resolve?urn=urn:nbn:se:su:diva-118248>
- Cerny, A. (2010). Going where the grass is greener: China Kazaks and the Oralman immigration policy in Kazakhstan. *Pastoralism*, 1(2), 218-247.
- Changing patterns in the international migration of doctors and nurses to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5): OECD Report
- CIC News(Canada Immigration Newsletter)[웹사이트]. (2019.03.22.)
- CMS(Center for Migration Studies)[웹사이트].(2019.03.22.)
- Collett, E. (2011). Immigrant integration in Europe in a time of austerity. Migration Policy Institute.
- Collett, E., & Petrovic, M. (2014). The future of immigrant integration in Europe. Mainstreaming approaches to inclusion. Migration Policy Institute.

- Collins, J. (2013). Rethinking Australian immigration and immigrant settlement policy.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34(2), 160-177.
- Continuous Reporting System on International Migration in the Americas (SICREMI)(2011):OECD Report
- Continuous Reporting System on International Migration in the Americas (SICREMI)(2012):OECD Report
- Continuous Reporting System on International Migration in the Americas (SICREMI)(2015):OECD Report
- Continuous Reporting System on International Migration in the Americas (SICREMI)(2017):OECD Report
- Çorabatir, M. (2016). The evolving response to refugee protection in Turkey: Assessing the practical and political needs. Migration Policy Institute.
- Crul, M., & Schneider, J. (2009). The Second Generation in Europe: Education and the transition to the labour market. TIES Policy Brief.
- Danaj, A., Lazányi, K., & Bilan, Y. (2018). Perceptions and implications of immigration in France—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perspectives. *Economics & Sociology*, 11(3), 226-247.
- Dancygier, R. M., & Laitin, D. D. (2014). Immigration into Europe: Economic discrimination, violence, and public polic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7, 43-64.
- Daniels, N., & Ladin, K. (2014). Immigration and Access to Health Care. In *The Routledge Companion to Bioethics* (pp. 80-92). Routledge.
- Davies, I. (2009). Latino immigration and social change in the United States: Toward an ethical immigration policy. *Journal of Business Ethics*, 88(2), 377-391.
- Department of Home Affairs(Australian)[웹사이트]. (2019.03.22.)
- Desiderio, M. V. (2016). Integrating refugees into host country labor markets: Challenges and policy options. Migration Policy Institute.
- Desiderio, M. V., & Hooper, K. (2016). The Canadian Expression of Interest System: A Model to Manage Skilled Migration to the European Union. Migration Policy Institute.
- DIAC. (2009). Economic Impacts of Immigration,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New Zealand
- Diez, T., & Squire, V. (2008). Traditions of citizenship and the securitisation of migration in Germany and Britain. *Citizenship Studies*, 12(6), 565-581.

- Doran, K., Gelber, A., & Isen, A. (2014). The effects of high-skilled immigration policy on firms: Evidence from H-1B visa lotteries (No. w2066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Dryden-Peterson, S. (2015). The educational experiences of refugee children in countries of first asylum. British Columbia Teachers' Federation.
- Drywood, E. (2011). 'Child-proofing' EU law and policy: interrogating the law-making processes behind European asylum and immigration provis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9(3), 405-428.
- Eger, M. A. (2009). Even in Sweden: the effect of immigration on support for welfare state spending.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6(2), 203-217.
- Eggebo, H. (2010). The problem of dependency: Immigration, gender, and the welfare state. *Social Politics*, 17(3), 295-322.
- Eriksen, T. H. (2013). Immigration and national identity in Norway. Migration Policy Institute.
- Escafré-Dublet, A. (2014). Mainstreaming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in France. Migration Policy Institute.
- Facchini, G., Mayda, A. M., & Mishra, P. (2011). Do interest groups affect US immigration polic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85(1), 114-128.
- Federal Ministry of Finance(Germany)[웹사이트]. (2019.03.22.)
- Federal Ministry of Justice and Consumer Protection(Germany)[웹사이트]. (2019.03.22.)
-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Germany)[웹사이트]. (2019.03.22.)
- Filindra, A., Blanding, D., & Coll, C. G. (2011). The power of context: State-level policies and politics and the educational performance of the children of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81(3), 407-438.
- Fix, M., Papademetriou, D. G., Batalova, J., Terrazas, A., Lin, S. Y. Y., & Mittelstadt, M. (2009). Migration and the global recession. Migration Policy Institute.
- Fouratt, C. E. (2014). "Those who come to do harm" : the framings of immigration problems in Costa Rican immigration law.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8(1), 144-180.
- Frattini, T. (2014). Moving Up the Ladder? Labor Market Outcomes in the United Kingdom amid Rising Immigration. Migration Policy Institute.
- Friedman, S. L. (2010). Marital immigration and graduated citizenship:

- Post-naturalization restrictions on mainland Chinese spouses in Taiwan. *Pacific Affairs*, 83(1), 73-93.
- Froy, Francesca, and Sylvain Giguère Breaking. (2010). *Out of Policy Silos: Doing More with Less*. Paris: OECD.
- Gammeltoft-Hansen, T. (2014). International refugee law and refugee policy: the case of deterrence policies. *Journal of Refugee Studies*, 27(4), 574-595.
- Glitz, A. (2012). The labor market impact of immigration: A quasi-experiment exploiting immigrant location rules in Germany. *Journal of Labor Economics*, 30(1), 175-213.
- Gomberg-Munoz, R., & Nussbaum-Barberena, L. (2011). Is immigration policy labor policy?: Immigration enforcement, undocumented workers, and the state. *Human Organization*, 366-375.
- Government of Canada[웹사이트]. (2019.03.22.)
- Grady, P. (2008). Is Canadian Immigration too high? A Labour Market and Productivity Perspective.
- Granato, N. (2014). *A work in progress: Prospects for upward mobility among new immigrants in Germany*. Migration Policy Institute.
- Gross, J., & Ntagengwa, C. (2016). *Challenges in Access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or Children in Refugee Families in Massachusetts*. Migration Policy Institute.
- Grupper, E. (2013). The youth village: A multicultural approach to residential education and care for immigrant youth in Israel.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Youth and Family Studies*, 4(2), 224-244.
- Hansen, R. (2012). *The centrality of employment in immigrant integration in Europe*. Migration Policy Institute.
- Hanson, G. H. (2009). *The economics and policy of illegal im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Migration Policy Institute.
- Hatton, T. J. (2015). United States immigration policy: The 1965 act and its consequences. *Th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17(2), 347-368.
- Heckmann, F. (2016). *Understanding the Creation of Public Consensus: Migration and integration in Germany, 2005 to 2015*. Migration Policy Institute.
- Hiebert, D. (2016). *What's so special about Canada? Understanding the resilience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Migration Policy Institute.
- Hochschild, J. L., & Cropper, P. (2010). *Immigration regimes and schooling*

- regimes: Which countries promote successful immigrant incorporation?. *Theory and Research in Education*, 8(1), 21-61.
- Holzer, H. J. (2011). Immigration policy and less-skilled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Reflections on future directions for reform (No. 22). IZA Policy Paper.
- Holzer, H. J. (2011). Immigration policy and less-skilled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Reflections on future directions for reform (No. 22). IZA Policy Paper.
- Horwood, C., & Hooper, K. (2016). Protection on the Move: Eritrean Refugee Flows through the Greater Horn of Africa. Migration Policy Institute.
- Hugo, G., Wall, J., & Young, M. (2015). The Southeast Asia-Australia regional migration system: some insights into the “new emigration. Migration Policy Institute.
- Hyman, I., Meinhard, A., & Shields, J. (2011). The role of multiculturalism policy in addressing social inclusion processes in Canada. Centre for Voluntary Sector Studies Working Paper Series.
- ICAM (Information Centre Asylum and Migration) [웹사이트]. (2019.03.22.).
- İçduygu, A. (2015). Syrian refugees in Turkey: The long road ahead. Migration Policy Institute.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IRCC)[웹사이트]. (2019.03.22.)
- International Migration of Health Workers(2010). OECD Policy Brief.
-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2009): OECD Report.
-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2).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Migration Legislation and Practice. Dublin, Ireland:The Stationery Office.
- IOM’s Global Migration Data Analysis Centre[웹사이트]. (2019.03.22.).
- Jeff Leek, Brian Caffo, and Roger Peng. Managing data analysis. Available at <https://ko.coursera.org/learn/managing-data-analysis>
- Jiminez, T. (2011).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How Well are They Integrating into society?. Migration Policy Institute.
- Jones-Correa, M. (2012). Contested Ground: Im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Migration Policy Institute.
- Joppke, C. (2009). Limits of integration policy: Britain and her Muslim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5(3), 453-472.
- Joppke, C. (2012). The role of the State in cultural integration. *Trends*,

- challenges and the ways ahead. Migration Policy Institute.
- Jurje, F., & Lavenex, S. (2014). Trade Agreements as Venues for Market Power Europe? The Case of Immigration Policy. *JCM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52(2), 320-336.
- Justino, D. (2016). Emigration from Portugal: Old wine in new bottles?. Migration Policy Institute, Transatlantic Council on Migration.
- Kahanec, M., & Zimmermann, K. F. (2011). High-skilled immigration policy in Europe. DIW Berlin Discussion Paper No. 1096. “
- Kegels, M. (2016). Getting the balance right: Strengthening Asylum reception capacity at national and EU levels. Migration Policy Institute.
- Kerwin, D. (2012). The faltering US refugee protection system: Legal and policy responses to refugees, asylum-seekers, and others in need of protection. *Refugee Survey Quarterly*, 31(1), 1-33.
- Kerwin, D., Meissner, D., & McHugh, M. (2011). Executive Action on Immigration: Six Ways to Make the System Work Better. Migration Policy Institute.
- Kneebone, S. (2014). The Bali process and global refugee policy in the Asia-Pacific region. *Journal of Refugee Studies*, 27(4), 596-618.
- Kofman, E. (2013). Gendered migrations, livelihoods and entitlements in European welfare regimes. In *new perspectives on gender and migration* (pp. 73-114). Routledge.
- Kofman, E. (2014). Towards a gendered evaluation of (highly) skilled immigration policies in Europ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52(3), 116-128.
- Koslowski, R. (2011). The evolution of border controls as a mechanism to prevent illegal immigration. Migration Policy Institute.
-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19). The Management System of SOEs and QGOs in Korea. Sejong: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Kremer, M. (2013). The Netherlands: From national identity to plural identifications. Migration Policy Institute.
- Kruse, I. (2008). Immigration Reform in Germany. In *Of States, Rights, and Social Closure* (pp. 157-178). Palgrave Macmillan, New York.
- Kumin, J. (2015). Welcoming Engagement: How Private Sponsorship Can Strengthen Refugee Resettlement in the European Union. Migration Policy

- Institute Europe, Brussels
- Kymlicka, W. (2012). Multiculturalism: Success, failure, and the future.
- Labor migration in Asia - Increasing the Development Impact of Migration through Finance and Technology (2018)
- Labor Migration in Asia(2016): OECD Report
- Laparra, M. (2011). Immigration and social policy in Spain: A new model of migration in Europe. *The Spanish Welfare State in European Context*, 209-236.
- Lindsay Lowell, B. (2010). A long view of America's immigration policy and the supply of foreign-born STEM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3(7), 1029-1044.
- Łobodzińska, A. (2011). Immigrants and immigration policy in ageing Finland. *Bulletin of Geography. Socio-economic series*, 15(15), 43-55.
- Management of low-skilled migration(2008):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OECD Report
- Managing Migration to Support Inclusive and Sustainable Growth(2013): OECD Report
- Martin, Philip and Givens, Terri, A German Policy Shift?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y in the 21st Century (2010). APSA 2010 Annual Meeting Paper.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1644547>
- Massey, D. S. (2013). America's immigration policy fiasco: Learning from past mistakes. *Daedalus*, 142(3), 5-15.
- Massey, D. S., & Pren, K. A. (2012). Unintended consequences of US immigration policy: Explaining the post-1965 surge from Latin Americ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8(1), 1-29.
- Mau, S., & Burkhardt, C. (2009). Migration and welfare state solidarity in Western Europ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9(3), 213-229.
- McAuliffe, M. (2016). Resolving policy conundrums: Enhancing humanitarian protection in Southeast Asia. Washington DC: Migration Policy Institute.
- McGhee, D. (2009). The paths to citizenship: a critical examination of immigration policy in Britain since 2001. *Patterns of Prejudice*, 43(1), 41-64.
- McHugh, M., & Challinor, A. E. (2011). Improving Immigrants' Employment Prospects through Work-Focused Language Instruction. Migration Policy Institute.

- Meissner, D., & Kerwin, D. (2009). DHS and immigration: Taking stock and correcting course. Migration Policy Institute.
- Morland, L., Ives, N., McNeely, C., & Allen, C. (2016). Providing a Head Start: Improving Acces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for Refugees. Migration Policy Institute.
- MPI(Migration Policy Institute)[웹사이트].(2019.03.22.).
- Mühleisen, W., Røthing, Å., & Svendsen, S. H. B. (2012). Norwegian sexualities: Assimilation and exclusion in Norwegian immigration policy. *Sexualities*, 15(2), 139-155.
- Münich, D. (2014). A Tumultuous Decade Employment Outcomes of Immigrants in the Czech Republic. Washington, DC and Geneva: Migration Policy Institute and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Myers, K., & Conte, N. (2013). Building new skills: Immigr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in Canada. Migration Policy Institute.
-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웹사이트]. (2019.03.22.)
- Newton, L. (2012). Policy innovation or vertical integration? A view of immigration federalism from the states. *Law & Policy*, 34(2), 113-137.
- Oishi, N. (2012). The limits of immigration policies: The challenges of highly skilled migration in Japa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6(8), 1080-1100.
- Orrenius, P. M., & Zavodny, M. (2009). Tied to the business cycle: How immigrants fare in good and bad economic times. Migration Policy Institute.
- PapA180:G183ademetriou, D. G., Meissner, D., Rosenblum, M. R., & Sumption, M. (2009). Harnessing the Advantages of Immigration for a 21st-Century Economy. Migration Policy Institute.
- Papademetriou, D. G., & Sumption, M. (2011). Eight policies to boost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employment-based immigration. Migration Policy Institute
- Papademetriou, D. G., & Sumption, M. (2011). The Role of immigration in fostering competitiveness in the United States. Migration Policy Institute,
- Papademetriou, D. G., & Terrazas, A. (2009). Immigrants and the current economic crisis. Migration Policy Institute.
- Papademetriou, D. G., Meissner, D., Rosenblum, M. R., & Sumption, M. (2009). Aligning temporary immigration visas with US labor market needs: The case for a new system of provisional visas. Migration Policy Institute.

- Papademetriou, D. G., Sumpston, M., & Somerville, W. (2009). Migration and the economic downturn: what to expect in the European Union. Migration Policy Institute.
- Parliament of Australia[웹사이트]. (2019.03.22.)
- Partos, R., & Bale, T. (2015). Immigration and asylum policy under Cameron's Conservatives. *British Politics*, 10(2), 169-184.
- Passmore, E., & Thompson, A. S. (2015). Multiculturalism, decolonisation and immigration: Integration policy in Britain and France after the Second World War. In *Empire, migration and identity in the British worl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Pedersen, P. J. (2013). Immigration and welfare state cash benefits: the Danish cas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34(2), 113-125.
- Peng, I. (2016). Testing the Limits of Welfare State Changes: The Slow-moving Immigration Policy Reform in Japan.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50(2), 278-295.
- Peri, G. (2010). The impact of immigrants in recession and economic expansion. Migration Policy Institute.
- Pew Charitable Trusts[웹사이트]. (2019.03.22.)
- Pew Research Center[웹사이트]. (2019.03.22.)
- Pierce, S., Bolter, J., & Selee, A. (2018). US immigration policy under Trump: Deep changes and lasting impacts. Retrieved on January, 11, 2019.
- Pieter, B., & Nahikari, I. (2014). Catching up: The labor market outcomes of new immigrants in Sweden. Washington, DC and Geneva, Migration Policy Institute and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Piopiunik, M., & Ruhose, J. (2017). Immigration, regional conditions, and crime: Evidence from an allocation policy in Germany. *European Economic Review*, 92, 258-282.
- Pujolar, J. (2010). Immigration and language education in Catalonia: Between national and social agendas. *Linguistics and Education*, 21(3), 229-243.
- Puschmann, P., Sundin, E., De Coninck, D., & d'Haenens, L. (2019). 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y in Europe: Comparing Belgium and Sweden. d'Haenens, L.; Joris, W.; Heinderyckx, F.(ed.), *Images of Immigrants and Refugees in Western Europe. Media Representations, Public Opinion, and Refugees' Experiences*, 21-36.
- Ready to Help? Improving Resilience of Integration Systems for Refugees and

- other Vulnerable Migrants(2019).OECD Report
- Rodríguez-Planas, N., & Nollenberger, N. (2014). A precarious position: The labor market integration of new immigrants in Spain. Washington DC: MPI discussion paper.
- Rosenblum, M. R. (2011). E-Verify: Strengths, weaknesses, and proposals for reform. Migration Policy Institute.
- Rosenblum, M. R. (2011). US immigration policy since 9/11: Understanding the stalemate over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Migration Policy Institute.
- Rosner, J. D. (2009). The Politics of Immigration, and the (Limited) Case for New Optimism: Perspectives from a Political Pollster. Migration, Public Opinion and Politics: The Transatlantic Council on Migration, 77-87.
- Rubin. A. (2013). Statics for evidence-based practice and evaluation, 3rd. Edition. Belmont, CA: Cengage.
- Safeguarding the Rights of Asian Migrant Workers from Home to the Workplace(2017). OECD Report.
- Saggar, S., & Somerville, W. (2012). Building a British model of integration in an era of immigration: Policy lessons for Government. Migration Policy Institute.
- Sarvimäki, M. (2011). Assimilation to a welfare state: Labor market performance and use of social benefits by immigrants to Finland. Th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13(3), 665-688.
- Schain, M. A. (2009). The state strikes back: Immigration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 93-109.
- Scholten, Peter. (2013). "Agenda Dynamics and the Multi-Level Governance of Migrant Integration: The Case of Dutch Migrant Integration Policies." Policy Sciences Vol. 46, No. 3, 217-236.
- Selznick, Philip. (1949). TVA and the Grass Roots: A Study in the Sociology of Formal Organiz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hihadeh, E. S., & Barranco, R. E. (2010). Latino employment and Black violence: The unintended consequence of US immigration policy. Social Forces, 88(3), 1393-1420.
- Siegel, M., & De Neubourg, C. (2011). A historical perspective on immigration and social protection in the Netherlands. UNU-MERIT Working Paper Series,

- (2011-014).
- Sirin, S. R., & Rogers-Sirin, L. (2015). The educational and mental health needs of Syrian refugee children (p. 13). Migration Policy Institute.
- Smith, J. (2008). Towards consensus? Centre-right parties and immigration policy in the UK and Ireland.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5(3), 415-431.
- Smith, N. (2014). Donkey Flights” : Illegal Immigration from the Punjab to the United Kingdom. Report published by Transatlantic Council on Migration and 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
- Somerville, W. (2009). Future immigration patterns and policies in the United Kingdom. Migration Policy Institute.
- Somerville, W., & Sumption, M. (2009). Immigration in the United Kingdom: The recession and beyond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Migration Policy Institute.
- Steinhardt, M. F. (2011). The wage impact of immigration in germany-new evidence for skill groups and occupations. *The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11(1).
- Stone, Florence. (2004). “Deconstructing Silos and Supporting Collaboration.” *Employment Relations Today* Vol. 31, No. 1, 11-18.
- Sumption, M. (2011). Policies to curb unauthorized employment. Migration Policy Institute, Washington, DC.
- Süssmuth, R. (2009). The future of 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y in Germany. Migration Policy Institute.
- Terrazas, A. (2011). The economic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Long-and short-term perspectives. Migration Policy Institute.
- Terrazas, A., Papademetriou, D. G., & Rosenblum, M. R. (2011). Evolving demographic and human-capital trends in Mexico and Central America and their implications for regional migration. Washington, DC: Migration Policy Institute.
- The Looming Crisis in the Health Workforce (2018). How Can OECD Countries Respond?. OECD Report.
- Triandafyllidou, A. (2009). Greek immigration policy at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Lack of political will or purposeful mismanagement?. *European Journal of Migration and Law*, 11(2), 159-177.

- Triple Disadvantage? A first overview of the integration of refugee women.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πUnited Nations. (2013).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ies: Government Views and Priorities. New York: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2013).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es: Government views and priorities.
- Wadhwa, V., Saxenian, A., Rissing, B. A., & Gereffi, G. (2008). Skilled immigration and economic growth. *Applied Research in Economic Development*, 5(1), 6-14.
- Walsh, J. (2008, December). Navigating Globalization: Immigration Policy in Canada and Australia, 1945-2007 1. In *Sociological forum* (Vol. 23, No. 4, pp. 786-813). Oxford, UK: Blackwell Publishing Ltd.
- Wang, H. Z. (2011). Immigration trends and policy changes in Taiwan.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20(2), 169-194.
- Wasem, R. E., & Ester, K. (2008). Temporary Protected Status: Current immigration policy and issues (RS20844) [Electronic version].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Weber, Max. (1968) [1922].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eds. Berkeley, CA: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egmann, K. M. (2014). Shaping a new society: Immigration, integration, and schooling in Germany. *International Social Work*, 57(2), 131-142.
- Wright, C. F. (2012). Immigration policy and market institutions in liberal market economies.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43(2), 110-136.
- Xiang, B. (2016). Emigration trends and policies in China: Movement of the wealthy and highly skilled. In *Spotlight on China* (pp. 245-267). Brill Sense.
- Yoo, G. J. (2008). Immigrants and welfare: Policy constructions of deservingness. *Journal of Immigrant & Refugee Studies*, 6(4), 490-507.